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626-01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1. 11.

연구수행기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상우(인하대학교)
연구원 서보혁(서울대학교)
김윤나(서울사이버 대학교)
최정호(인하대학교)
연구보조원 최 희(인하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 문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이해 필요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이 다른 북한에서 출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남한에 적응할 때 실질적인 인권과 자유, 평등의 보장을 위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이 요구되었다.
 - 북한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독특한 인권 개념을 갖고 있다. 자주권과 주권의 원칙에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주민과 인권의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요구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 인권의식의 재정립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였다.
 -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학습과 경험이 거의 없고, 국내 입국 후 초기 적응 교육도 국내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 국내 입국 후 인권교육 실태 등을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연구의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의식의 특징을 분석, 이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의 방향성 탐색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인권의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을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적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및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개념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과 북한 당국의 대응 논리 사이의 주된 쟁점 분석
- 현재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조사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인지 여부와 인권교육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교육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
-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인권의식의 인식, 지식 측면에서 국내외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 집단별, 인권목록 인권존중도 인식, 인권침해 양상(인권침해자, 차별 이유) 등에 대한 인식 진단
 - 인권에 대해 관심, 인권교육 경험, 인권 용어, 인권용어에 정확한 이해, 인권교육과 인권개념에 대한 상관관계, 인권에 대한 인지도, 인권제도, 인권 구제 기관, 인권 구제 절차 등을 점검
-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 인권침해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분류하고,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방안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
-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인권과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질문하는 문항을 고안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및 인권지수 연구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한 NAP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최근 현안 및 쟁점으로 비교 연구
-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과 남한에서 인권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 혹은 공동체에서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 및 연구
 -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권 증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 소재, 자신의 인권 증진 노력 등으로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에 시사점 도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제도와 실태를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경험과 실태에 관한 조사

3. 연구방법

- 연구진행 체계
 - 통합방법론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의 형성배경, 인권침해 경험, 대응방식 등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 및 대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다.
 - 연구진행 체계
 - 문헌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연구의 기대효과

- 기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배경과 인권의식의 양상을 탐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
-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관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연구의 활용 방안

- 2011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와 비교 검토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인권의식 조사 이외에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관련 경험 등을 토대로 인권현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조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일반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통일인권교육의 체계화 나아가 입법화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II. 이론적 배경

1. 북한 인권의 특징과 실태

■ 북한의 인권관

- 인권 개념의 변천
 - 북한의 인권관은 사회주의와 북한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측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편적 인권관이 점차 도입되는 변화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 인권관의 특성 및 범위
 -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고 북한의 인권관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었다.
 - 위계적 사회질서 및 관습, 북한의 인권관에 영향을 준 북한 특유의 현상은 북한의 유일사상·유일지도 체계,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 북한정부의 인권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시켜 대부분의 권리를 망라하고 있었다.
- 인권정책의 변화
 - 노동당의 지도가 법률보다 상위에 있기는 하지만, 헌법과 민법 및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가족법,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 인권 관련 법률이 있었다.

■ 북한 내 인권 실태 평가

- 시민정치적 권리
 -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시기 헌법이 개정되었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자유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보고서는 평등권, 생명권, 자유 및 안전의 권리, 여행 및 거주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권의 주요 사항을 담고 있었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제2차 보고서는 사회권규약의 10개 조항의 이행 경과를 담고 있다. 식량권(절대적 식량부족), 건강권(의약품 절대 부족, 의료시설 낙후, 그리고 경제난), 노동권(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 교육권(‘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타난 교육 시스템의 붕괴)을 다루고 있었다.

○ 소수자 권리

-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했고, 자유권, 사회권 분야의 실태에 이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실태도 다루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 탈북 유형

- 탈북 유형은 탈북 동기와 직결된다. 탈북 동기는 배출 요인의 측면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량부족 해결, 삶의 질 향상,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 탈북자 인권 실태와 지위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실태는 국제법적으로 난민과 경제노동자인 이주자의 지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체류 국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아시아 국가들과 둘째 서방국가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2.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경험’ 현황과 쟁점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는 인권경험의 특수성

-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 특수성은 인간안보론의 적용을 함께 고찰해야 하고, ‘대상으로 설정, 측정기준, 국제적 쟁점, 문제 해결의 방향성,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의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와 쟁점

○ 탈북연도와 입국단계에 따른 경험에 따라 구분

-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문제는 1960-199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00년대 이후, 입국단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탈북 과정에서부터 제3국 체류과정, 정부합동조사 및 하나원 생활, 남한 정착지까지로 구분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현황

○ 인권교육의 필요성

-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예상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Ⅲ.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 설문 문항의 구성

- 북한의 인권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주민 인권실태조사”를 반영
- 2011년 국민인권조사와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초안을 반영
- 설문조사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6가지 부문으로 설문문항을 구성
 - 북한에서 인권의식 형성
 -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2.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표집방법

-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공간적 분포, 연구대상자의 참여동기, 연구대상자의 자료제공 능력을 검토
- 설문조사 표본은 남한 거주지, 성,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된 530명을 표본으로 산출

■ 자료수집방법

- 설문문항은 81문항으로 세부문항까지 131문항으로 구성
- 본조사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지 배포
- 설문지는 총 53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이중 503부를 회수
 - 회수된 설문지는 선별과정을 거쳐 23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480부만 연구 분석으로 사용하였다.
 - 모두 응답하였으나 간혹 한 두 개의 문항에서 미 응답한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 결측데이터는 표본을 전부 삭제하는 대신 결측치를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평균 대체법을 사용하여 전체 표본이 크기는 480부로 동일하게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실시
 -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성별, 연령,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남한 내 직업, 재북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연도, 제3국 경유기간, 남한에서 가족구성, 가계 경제소득으로 구분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 측정변수 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 실시
 - 측정변수에 속한 빈도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속한 빈도수를 함께 교차로 분석하였고, 이 기법을 통해 독립성과 관련성과의 존재여부를 확인 하였다.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남한 내 직업, 재북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연도, 제3국 경유기간, 남한에서 가족구성, 가계 경제소득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 응답자들의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이 25.6%,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응답이 74.4%로 나타나,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

○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1%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 북한에서 인권이란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경우 대다수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권이란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 대다수는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으며, 우리식 인권과 인권개념간의 인지수준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 북한에서 개인의 인권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교교육’ 35.9%, ‘강연 및 학습’ 29.0%, ‘외부정보’ 15.6%, ‘북한매체’ 12.1%, ‘주변 사람들’ 10.4% 순으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 북한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공개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죄형법정주의, 신분차별 및 연좌제 등에 주목하여 북한의 자유권 실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 이 중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64.0%가 직접 공개처형을 목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6.0%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노동권, 사회보장제도, 의무교육 시행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북한에 거주 당시 평화권에 대한 인식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있을 당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한 경우가 31.7%였고,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의 군사연습이 평화로운 생활, 운택한 생활에 장애가 된다’ 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8%로 나타났다.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 북한의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와 평화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여성의 차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남녀평등’ 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질문하였는데, 77.1%의 비율이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남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
 - 남한에 입국한 이후 인권의식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남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주 듣는지를 질문하였다. 남한에 입국해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주 듣는다’ 는 응답이 54.6%로 절반이 넘었다.
 - 인권이라는 표현을 알게 된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TV매체의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비율이 63.1%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남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70.2%로 인권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는 응답은 50.4%로 남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지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남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 남한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된다’ 는 긍정적인 평가가 77.7%, ‘존중되지 않는다’ 는 부정적인 평가가 22.3%로 나타났다.
 -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 남한사회에서 각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인권이 ‘존중 된다’ 고 보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장애인 > 노인 > 아동·청소년 > 여성 > 생활보호 대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 결혼이주여성 > 난민 >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 인권목록별로 분석한 결과 인권이 ‘존중된다’ 고 인식하는 분야는 전반적으로 사회권에서는 존중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반면 자유권에서는 ‘존중된다’ 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 북한이탈주민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언론인(18.4%), 일반시민(16.5%), 기업인(15.2%), 요양시설 종사자연론인(10.6%), 군대 상급자(8.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인권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2개 중복응답)으로 직업,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 가 16.0%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력·학벌’ 14.4%, ‘출신지역’ 12.1%의 응답률을 보였다.
-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 인권침해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문제’ 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사회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 '사생활이 공개당한 문제'가 그 다음의 순으로 높은 나타났다.

-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간 교차분석 결과, 인권침해 경험이 있으면 해당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 출신에 대한 차별(45.5%)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출신 다음으로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답하였다.
- 인권차별 경험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분석 결과, 인권차별의 경험 유무는 인권상황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 일반시민 20.6%, 직장 상사 17.9%, 직장 동료 16.5% 순으로 나타났다.

○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

- 인권침해 및 차별 유경험자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소극적인 행동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7.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사정을 요구하였다' (13.6%),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1.3%) 순으로 답하였다.
-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무경험자들은 '당사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겠다' (30.8%),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겠다' (18.9%),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12.0%) 순으로 답하였다.

■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과 정책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 사형제도 유지(81.4%), 국가보안법 유지(81.9%), 양심적 병역 거부 불허(82.1%) 정책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견해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78.5%가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 비정규직 임금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50.6%,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52.5%,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50.2%로 나타났다.
- 평화권과 관련하여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평화권에 위반되므로 긴장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82.3%,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견에 17.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약자 영역

- 사회적 약자는 외국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아동에 대하여 응

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그들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방법으로 1순위로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의 노력’ (33.5%) - ‘인권침해 진정, 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 (21.0%) -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 개선’ (20.4%) -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화’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에 대한 답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는 ‘인권침해 진정, 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인권활동 참여 경험

- 인권개선 활동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44.0%)이 가장 높았으며, ‘어려움에 처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조언·상담’ (30.8%), ‘소수자·약자 단체 지원 또는 기부’ (27.3%)를 통한 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9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인권교육의 경험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43.8%로 나타났다.
- 인권 교육을 유경험자는 하나원(30.8%), 하나센터(17.1%), 지자체 등 공공기관(15.4%), 시민단체(11.6%)에서 교육을 받았고, 무경험자는 국가인권위원회(18.4%), 지자체 등 공공기관(17.2%), 하나센터(16.9%), 하나원(15.7%) 순으로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다.

○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 인권 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93.6%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IV. 면접조사

1. 면접조사 개요

■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

○ 면접조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총 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구 문제의 답을 찾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하였다.
- 이 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초기형성, 탈북 단계, 제3국 단계, 입국 및 정착 단계, 현재의 인권의식에 대해 심도 깊은 답을 줄 수 있는 참여자

를 선정하였다.

■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 북한에서의 인권의식의 형성,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탈북동기, 남한 입국 전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남한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방식,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 중심

■ 자료수집 방법

-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의 방법을 동시에 시행
 -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은 개인별 특성 및 면접내용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 자료분석 방법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시 북한 인권의식 및 경험, 탈북이후 제3국에서의 인권의식 및 경험, 남한 입국 후 남한사회에서의 인권의식 및 경험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5단계의 자료 분석 절차 준수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 북한에서 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형성

○ 인권 용어 인지 정도

- 면접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부족했던 것은 물론 인권 자체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권 용어에 대한 접근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리 식 인권’ 용어를 들었던 경우에도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적었으며, 북한에서 인권을 대하는 관점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받아들이는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 북한의 인권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 전파 수단

-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제한적으로 배웠으며, 학교 또는 매체를 통해 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에서는 인권에 대한 어휘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이 매우 상이하하다. 어휘적 접근은 신문, 서적,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었으나, 개념적 접근은 제한 인권교육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 북한주민은 충격적인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접한 경우 인권이라는 인지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은 북한주민에게 북한의 인권보장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남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리는 인권교육을 하였다.
- 북한의 인권보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자유권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을 더 강조하였고, 이를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기억

- 북한주민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지적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 인권침해 인식의 확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 개인의 안전보다는 국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 역시 인권침해라고 주하였고, 이는 인권침해의 영역을 개인과 신변의 위협으로만 국한하여 평가한 기존의 대상자들과 차이점을 보였다.
- 탈북단계에서의 나타나는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 출신성분 제약과 인권침해
 - 북한 출신성분에 대한 계층화는 지금의 북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북한이탈주민 중 출신성분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탈북한 비율이 높았다.
 - 생존권 위협과 인권의식의 성장
 - 탈북을 기도 또는 실행에 옮긴이들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및 탄압을 벗어나고자 다른 공간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순히 먹을거리를 찾으러 가기 위한 생명권, 생존권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자유권, 사회권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 강제송환, 재탈북과 인권 유린
 - 중국으로 탈북한 인원 중 강제송환되어 강압적인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폭력과 구금에서 벗어난 북한주민은 재탈북을 강행하였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남한을 선택지로 삼았다.
-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의식 변화
 -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 북한의 여성은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 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국경선을 넘는다. 국경선을 넘기 전·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과 연결책(브로커)이었다.
 - 이중 브로커들이 탈북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중국의 남성에게 결혼대상자와 더불어 노동력의 일환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 북한이탈여성은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그들은 보호해줄 수 있는 대상인 중국남성에게 성 또는 노동의 인권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 제3국에서의 생존과 인권침해
 - 탈북한 중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국 현지인에게 생활조건을 지원받는 방식이지만, 합법적 신분을 인정받지 못해 중국 공안의 단속대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
 - 중국 남성과 혼인관계를 맺은 북한이탈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가정이탈에 대한 감시와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단속위협에 놓여 있었다.
 - 입국대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정주하지 않고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일반적으로 3-12개월이 소요되었다.
 - 중국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난민수용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이들의 남한행을 돕는 이들의 안전가옥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 오랜 시간 입국대기를 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 남한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으로 감추며 사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사회에 체감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과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한인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남한인들과 북한이탈주민과도 서로 어울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지역 내 행사에 동원되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이 공개되는 것에 불안과 불만이 높았다.

○ 직장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직장 내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일이 발생하면 동료들도 편견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매우 불편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하여도 피해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기반으로 주로 취업업종이 저숙련노동으로 국한되며 일자리 역시 매우 불안정하였고 임금격차에 대한 차별을 심각하게 받고 있었다.

○ 자녀의 학교생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북한에서 가족형성, 중국에서의 가족형성, 남한에서의 가족형성이다. 각각의 형성시기에 따라 인권에 대한 접근방식도 상이하였다.
- 학부모로서 자녀가 학교에 정규과정으로 편입을 해야 하는 경우 남한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결손에서 파생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적극적이며 민감하게 대처하였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입학할 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도록 부모가 개입하여 신분을 감추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인권의식의 재구성 및 확장

○ 인권의식의 발달과 재구성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이 매우 부족하며, 향후 인권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 인권에 대한 정보와 개념을 숙지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 인권의식이 성장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남한인들의 배타적인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인권 지식을 가르치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V. 결론: 요약 및 시사점

-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입국 직후부터 정착단계별 인권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들의 인권교육 강화 및 역할 분담(특히 하나원의 경우 인권교육 프로그램 재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부합하고 이해도 높은 인권교육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사례 중심, Q&A, 직무별, 온라인 강의 등등)
-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인권증진 중점 과제 선정
- 공직자들과 모든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반편견 교육, 통일 인권교육 실시 체계 구축
- 북한이탈주민 입국단계별 인권의식, 인권 관련 경험 조사·연구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의식 조사의 정례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관련 조항의 신설

< 차례 >

<요약문>	i
제 1 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II. 연구내용 및 범위	4
1.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4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4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5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5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5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6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6
III. 연구방법	7
1. 연구진행 체계	7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7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8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9
5. 전문가 자문	9
IV.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I. 북한 인권의 특징과 실태	11
1. 북한의 인권관	11
(1) 인권 개념의 변천	11
(2) 인권관의 특성 및 범위	13
(3) 인권정책의 변화	15
2. 북한 내 인권 실태 평가	18
(1) 시민정치적 권리	18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3) 소수자 권리	26
3.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32
(1) 탈북 유형	32
(2)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와 지위	33
4.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4
II.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경험’ 현황과 쟁점	37
1.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37

(1)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는 인권경험의 특수성	37
(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39
2.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와 쟁점	44
(1)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 경험	44
(2) 입국단계에 따른 인권 경험	4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현황	50

제 3 장 설문조사 53

I.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53

1. 기본방향	53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53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53
(3)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54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54
(5)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54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55
2. 설문 문항의 구성	55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57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58
(3)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61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62
(5)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64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65

II. 설문조사 개요 66

1. 설문조사 표집방법	66
2. 자료수집방법	66
3. 자료분석방법	67

III. 설문조사 분석 결과 68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8
(1) 성별	68
(2) 연령	68
(3) 거주지	69
(4) 남한 내 거주기간	70
(5)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70
(6) 남한 내 직업	71
(7) 재북 출신지	71
(8) 재북 학력	72
(9) 탈북연도	73
(10) 제3국 경유기간	74
(11) 남한에서 가족 구성	74

(12) 가계 경제소득	75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75
(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75
(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76
(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77
(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77
(5)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78
(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78
(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0
(8)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81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82
(1) 남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	82
(2) 남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87
(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88
(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90
(5)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98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100
(1)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100
(2)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101
(3)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03
(4)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	104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06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106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113
(3) 사회적 약자 영역	119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130
(1)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130
(2) 인권활동 참여 경험	132
7.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134
(1) 인권교육 필요성	134
(2) 인권교육 경험	135
(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137

제 4 장 면접조사 139

I. 면접조사 개요 139

1.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139
2.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142
3. 자료정리와 방법	143

II. 면접조사 분석 결과 145

1. 북한에서 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형성	145
(1) 인권 용어 인지 정도	145

(2) 북한의 인권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 전과 수단	146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기억	149
(4) 인권침해 인식의 확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150
2. 탈북단계에서의 나타나는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152
(1) 출신성분 제약과 인권침해	152
(2) 생존권 위협과 인권의식의 성장	153
(3) 강제송환, 재탈북과 인권 유린	154
3.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의식 변화	156
(1)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156
(2) 제3국에서의 생존과 인권침해	157
(3) 입국대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58
4. 남한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160
(1)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60
(2) 직장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61
(3) 자녀의 학교생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164
5.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인권의식의 재구성 및 확장	167
(1) 인권의식의 발달과 재구성	167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168
(3)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169

제 5 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171

[참고문헌]	175
[부록: 설문지]	177

< 도표 차례 >

<표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
<표 2> 북한 형법상 북한이탈주민 처벌 변화	17
<표 3>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5
<표 4> 북한인권 정책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36
<표 5>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연구의 체계	43
<표 6> 설문 문항의 항목 구성	56
<표 7>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설문문항	57
<표 8>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1)	59
<표 9>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2)	60
<표 10>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설문문항	61
<표 11>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문항	63
<표 12>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64
<표 13>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설문문항	65
<표 14> 통계처리 가능 설문지 비율	67
<표 15> 응답자의 연령	68
<표 16> 응답자의 거주지	69
<표 17>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72
<표 18> 응답자의 탈북연도	73
<표 19> 응답자의 남한 가족 구성	74
<표 20> 응답자의 가계 경제소득	75
<표 2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75
<표 2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76
<표 2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77
<표 2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과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의 상관성	77
<표 25>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79
<표 2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0
<표 2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81
<표 28>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83
<표 29> 남한에서 인권 표현 취득 경로	84
<표 30> 남한에서 인권상황 인지	85
<표 31> 국제 인권상황 인지	86
<표 32> 남한 인권 존중 여부 평가	87
<표 3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88
<표 3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90
<표 35> 주거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1
<표 36> 사회보장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2
<표 37> 노동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3
<표 38> 건강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4
<표 39> 교육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5

<표 40> 환경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6
<표 41> 평화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97
<표 42>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98
<표 43>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99
<표 44>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100
<표 45>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102
<표 46>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03
<표 47>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04
<표 48>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05
<표 49>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06
<표 50>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	107
<표 51>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인식	109
<표 52>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에 대한 인식	110
<표 53>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인식	111
<표 54>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에 대한 인식	111
<표 55>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112
<표 5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13
<표 57> 비정규직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인식	114
<표 58>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	115
<표 59>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7
<표 60> 군사적 대치가 평화권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118
<표 6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119
<표 62>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1
<표 63> 여성 배려 정책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123
<표 64>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5
<표 65> 난민 허용 불필요에 대한 인식	127
<표 66>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에 대한 인식	128
<표 67>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체벌 허용에 대한 인식	129
<표 68>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131
<표 69> 인권활동 참여 경험	132
<표 70> 인권교육 필요성	134
<표 71> 인권교육 경험	135
<표 72>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다중응답)	136
<표 7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138
<표 74> 면접조사 참여자의 유형별 일반적 특성	140
<표 75> 면접조사 유형별 질문지 내용	143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진행체계	7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경로	46
[그림 3]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51
[그림 4] 응답자의 성별 (N=480)	68
[그림 5] 응답자의 연령 (N=480)	69
[그림 6] 응답자의 거주지 (N=480)	69
[그림 7]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기간 (N=480)	70
[그림 8] 응답자의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N=480)	70
[그림 9] 응답자의 남한 내 직업 (N=480)	71
[그림 10]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N=480)	72
[그림 11] 응답자의 재북 학력 (N=480)	72
[그림 12] 응답자의 탈북연도 (N=480)	73
[그림 13] 응답자의 제3국 경유기간 (N=480)	74
[그림 14]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75
[그림 15]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76
[그림 16]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다중응답자 N=613)	76
[그림 17]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N=480)	78
[그림 18]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89
[그림 19]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91
[그림 20]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98
[그림 21]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99
[그림 22]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100
[그림 23]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101
[그림 24]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03
[그림 25]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105
[그림 26]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131
[그림 27] 인권활동 참여 경험	133
[그림 28] 강제송환 경험여부에 따른 인권교육 경험	135
[그림 29] 인권교육 받은/받을 기관	136
[그림 30] 탈북경로/과정에 따른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142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2015년에는 총 1,276명이 입국하였으며, 2016년 3월까지 총 2만 9,13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통일부, 2016: 162).

<표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3	합계
남(명)	662	591	795	404	369	305	251	77	8,580
여(명)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5	265	20,557
합계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6	342	29,137
여성 비율	77%	75%	70%	72%	76%	78%	80%	77%	71%

*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 정책 - 최근현황, 2016. 05. 15. 접속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재민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한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는 한국사회가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출발선을 맞추어 준다는 의미에서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통일부, 2016: 162). 그러나 한국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는다고 하여도, 정책의 수혜자인 당사자들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어렵다. 특히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권의식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마련하고 있는 제도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인권보장이거나 차별대책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사회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현재 남한사회 또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는다. 그것은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습득했던 사회화의 결과를 온전히 바꾸어야만 하는 사회적(외적) 충돌과, 그 순간순간 대면하게 되는 심리적(내적) 갈등 모두 해당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적인 시선과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애착을 갖기 어렵다. 사회적 차별에 대한 자각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요구를 하도록 만든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부터 한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인권 유린이라 불리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및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인권침해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향후 통일에 대비한 인권교육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북한은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바탕으로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독특한 인권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즉, 자주권과 주권의 원칙에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을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소위 ‘북한식 인권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식 인권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형성된 인권관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계급성, 그리고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나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셋째,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이무철, 2011: 4). 북한은 상대주의적 인권관에 입각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남한의 인권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나 민주정치의 제도와 절차는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위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 모두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인권의식을 가진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정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남한의 인권관을 이해하고 인권의식과 인권존중 문화를 체득하는 것은 향후 시민사회의 정착과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 인권의식의 재정립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까지 학계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관한 연구, 특히 인권의식에 기초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이 주를 이룬다. 국가인권

위원회는 ‘북한인권(범주: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북분단에 의한 인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개최, 해외 현지조사 시행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중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연구로는 2005년도에는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를,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과정, 교육과정, 정착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를 다룬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학계연구 및 실태조사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방안 및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론적 자원을 탐색한다. 여기에서는 북한에서 논의되는 인권의 개념, 북한 인권의 특성 및 범위, 북한 인권의 시기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인권 문제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인권규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적 특성과 북한식 인권관을 비교, 분석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애사적 경험을 통한 북한 이탈 및 한국 정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인권 의식의 변화 및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 인권경험과 인권의식의 형성, 남한사회 인권 현실에 대한 인식, 남한 입국 후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 인권 관련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인식,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등으로 세분화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적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인권교육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제시하되 인권정책 방향과 통일교육 대비 인권교육과 민주시민 교육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연구내용 및 범위

1.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으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인권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특징을 검토한다.

북한인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인권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관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널리 고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북한은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권을 “그 누구도 침해, 유린, 훼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노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국권을 잃은 나라 인민은 인권도 유린당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우영 외, 2008: 6).

따라서 북한인권관은 북한만의 독특한 인권관이 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이 공통적으로 견지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유기체론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은 공동체의 목표달성 속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진영은 인권을 계급적 시각을 반영한 집단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인권보호도 “물질적 조건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각국의 인권증진에 있어서 대내적 조건과 특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북한 당국의 대응 논리 사이의 주된 쟁점을 분석하고, 현재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일반적으로 인권의식은 청소년기 교육과 성장 배경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과 체제가 다른 곳에서 성장하고 탈북 경험 등으로 인해 인권의식이 남한주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서도 북한에서의 인권교육이나 인권에 관한 경험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권보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국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교육과 인권 침해 경험 등은 통일 이후 시민교육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영역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조사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가 주요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고 조사 방법 역시 회고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어떠한 계기로 접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초설문을 통해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인지 여부와 인권교육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교육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은 크게 북한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 형성의 배경이 되는 체험, 남한에서 인권의식 형성 및 인권 현실에 대한 인식, 남한에서 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에 대한 기대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의 인권경험과 인권의식의 형성이 남한에서의 인권경험과 인권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인권의식 형성을 분석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한다.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인권의식의 인식, 지식 측면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아는 것, 국제적 차원에서 국내 인권 상황을 아는 것, 집단별 인권존중도, 분야별 인권존중도, 인권침해자 및 침해 근거 등에 대한 이해는 전반적인 인권의식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설문을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인권에 관한 관심, 인권교육 경험, 인권 용어, 인권용어에 정확한 이해, 인권교육과 인권개념에 대한 상관관계, 인권인지도, 인권제도, 인권 구제 기관, 인권 구제 절차 등 설문을 통해 이해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한 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설문 및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검·경 수사기관, 시민단체, 인터넷, 법률 전문가, 언론기관 제보 등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침해 경험은 면접조사를 통해서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방안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한다.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연구내용이 된다. 이를 위하여 인권과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질문하

는 문항을 고안할 때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및 인권지수 연구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NAP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설문에 반영한다. NAP에 제시된 3대 영역의 권리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준거로 삼아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현안이나 쟁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연구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가 향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과 남한에서 인권 쟁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 혹은 공동체에서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 연구한다.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권 증진에 대한 역할과 책임 소재, 자신의 인권 증진 노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함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제도와 실태를 각종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하며, 통일, 경제, 행정,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진행상황에 대한 실태분석을 진행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활발히는 펼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태조사와 함께 인권교육 관련 각종 통계조사, 선행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인권교육 실태 등을 통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진행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진행 체계

본 실태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의 형성배경, 인권침해 경험, 대응방식 등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 및 대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진행체계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문헌분석은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성과와 대안적 모색을 위한 인식에 기초하여 기존에 수행된 자료를 검토하여 재분석하고 연구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문헌조사의 목적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현황과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관한 자료를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되 인권의식에 관한 일반 이론을 포함하여 국내·외 자료수집 및 현황을 파악하였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문헌연구는 각각의 연구자들이 수집한 문헌들을 토대로 최근의 문헌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를 기초로 자체 연구진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문헌을 분석하고 논점을 정리하여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통계백서』 등을 1차 자료로 활용하지만, 최근 정부 및 NGO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자료와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학계의 이론적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2005년-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완료한 인권의식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와 국가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한다. 2005년-2015년 유엔 관련 기구의 연구보고서, 각 국가별 인권보고서 및 심사 결과(국가보고서 및 NGO의 대안보고서 포함) 및 통보 결과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이 연구가 인권

의식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NGO에서 작성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들도 검토하고자 한다. 조사 범위는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검토하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보고서 외에 현장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교차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내용과 자료수집 방향성을 설정하여 시간을 합리적으로 절약하였고, 결과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설문조사는 인간행동을 측정하는 사회과학 방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탐색, 기술, 설명적 연구 모두 가능하며, 다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조사는 북한인권, 국내 인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도,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인식하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500부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 산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정보에 대한 제한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률 표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비확률 표집이 모집단의 속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표본을 통해서 그 집단을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 자료 및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확률 표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설문지 구성과정에서 문헌조사, 연구진과 전문가의 검토, 북한이탈주민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집방법은 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출발은 연구진과 네트워크가 있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들의 소개로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하여 설문대상자를 확장해 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우리 국민 사이의 인권의식의 비교 검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또는 인권의식 관련 연구 이외에 2011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설문지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연구와 같은 시기에 연구 수행 중인 2016년 국민인권의식연구의 설문조사지 초안을 연구 중에 제공 받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 문항 중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설문지 초안을 참고하여 동일하게 반영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면접조사는 직접 대면접촉과 대화를 통해 면접참여자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 기억 등을 이끌어내어, 면접참여자가 ‘구술한 사회’와 ‘실재 사회’와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¹⁾.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기초한 양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권형성, 인권침해, 대응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흐름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의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질문의 일부를 표준화시키는 방식인 반구조화 면접으로 수행하였다. 중요한 사항은 미리 정해진 틀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항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주제와 내용을 표준화시키되, 질문 순서나 방법 등은 연구자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정해 나갔다.

면접조사의 연구참여자는 50명으로 선정하였다. 면접 내용 및 주제는 북한에서 받은 인권에 대한 경험, 국내 인권교육 실태, 인권 침해 경험과 대응 방식,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5.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조사는 연구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였던 점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이라는 복합적인 내용을 접근하는데 다차원적인 연구방법이 동원되었고,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발생된다. 전반적인 연구과정에 대한 검토와 연구방향, 연구결과에 대한 대안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자문조사는 워크숍, 설문지 개발, 중간보고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V.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 배경과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지, 인권현실에 대한 가치와 태도,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토대로 기본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배경과 인권의식의 양상을 탐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이 연구에서 면접조사의 경우 방법과 내용이 조사참여자의 내면에 자리한 이야기를 발굴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면접(FGI)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면접조사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현실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 있었으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이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주로 단일문항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인권의식 조사와 비교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면접조사 등을 통해 인권의식 형성 배경과 인권에 대한 태도까지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관련 경험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향후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11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와 비교 검토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리고 인권의식 조사 이외에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관련 경험 등을 토대로 인권현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조사는 향후 북한이탈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일반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통일인권교육의 체계화 나아가 입법화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I. 북한 인권의 특징과 실태

1. 북한의 인권관

(1) 인권 개념의 변천

북한은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13) 혹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 (사회과학출판사, 1992: 1696)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인권 정의가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과 그 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1957년 출판물을 인용한 앞의 정의가 인권의 보편적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면, 1992년 출판물을 인용한 뒤의 정의는 인권=자주적 권리로 보아 주체사상 제일주의의 원칙인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권 문제’를 “사람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유린하는 행위와 투쟁할 데 대한 문제”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2002: 582)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관은 유일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의 하위 개념으로 위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는 일견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와 등치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관은 주체사상 아래 있는, 곧 유일 지도자가 만들어낸 유일사상에 종속되어 있고, 그로 인해 보편적 인권관이 주민들 사이에 교육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인권=자주적 권리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지난 2014년 9월 13일,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가 국제사회를 향해 내놓은 자체 인권 보고서인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이하 ‘2014 인권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나있다.

다른 한편, 북한의 인권관은 국제질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냉전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김정일의 ‘인덕정치(仁德政治)’ 혹은 ‘광폭정치(廣幅政治)’를 내세워 주민의 체제이탈 단속, 정권과 대중의 결속을 추구하였다. 광폭정치는 1993년 1월 28일 인덕정치와 함께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의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 제하의 논설에서 “인민을 위한 정치는 그릇이 커야한다”, “노동계급의 당의 정치는 어디까지나 정치의 폭이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을 위한 통치를 하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물론 이는 불리해진 국제정세에 적응하기 위한 통치술의 일환이지만, 북한정권의 통치방식 중에서 인권 관련 담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 2000년대 초반부터는 김정일이 “인권이 곧 국권이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과 국가주권을 동일시하는 담론을 펼친다. 2003년 4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 대해 “우리의 국권을 어찌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의 국권론은 부시(G. W. Bush)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배경으로 2003년 등장한 것으로 보이

는데,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인권관과 대외적 긴장상태가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소위 국권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유일지도체제, 나아가 사회주의체제의 유지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소극적임을 시사해준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관 변화는 보편적 인권 개념을 수용하는 대신, 인권문제의 정치적 이용, 소위 이중잣대(double standard)를 문제시 하는 태도다. 2009년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제9차 개정 헌법을 통해 최초로 헌법에 인권존중 조항을 삽입했다. 기존의 1998년 헌법 제8조는 “국가는 …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 개정된 헌법의 제8조는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후 2016년까지 3차례 추가 헌법 개정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 인권 조항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지는 법리적 해석과 실질적 평가, 양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 “근로인민” 이 북한주민 전체를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북한체제의 정치이념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보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양상은 눈에 띈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 외에도 북한은 형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장애인 권리와 아동권 관련 법제도 등을 제·개정한 것도 그런 예이다.

북한은 앞서 언급한 ‘2014 인권보고서’ 에서 “기본인권” 의 범주에 사회정치적 권리, 존엄에 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중 사회정치적 권리는 자주성을 실현의 수단이라고 파악하면서,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육체적 생명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으며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며 인권=자주적 권리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보고서에서 북한은 소유권을 생존권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화 확산 > 시장경제 도입 > 소유권 인정 등 보편적 인권의 형성을 용인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인권관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또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로서 인권관을 둘러싼 시비보다는 보편적 인권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을 더 문제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위 인권보고서에서도 북한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점은 북한의 인권관 변화를 가져올 외부적 요소가 증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권기준’ 은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 사고관점, 가치관, 생활양식이 구현되어 있는 반동적인 인권기준이다. … 인권기준이 민족국가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며 국가들마다 자기의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15)

이상 북한의 인권관은 사회주의와 북한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측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편적 인권관이 점차 도입되는 변화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이런 분석은 탈북 직후 북한에서 생활했을 때 생각했던 ‘인권’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인권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25.6%) 혹은 인민의 자주적 권리, 국가가 보장해주는 권리, 지도자의 시혜(42.7%) 등으로 혼재된 반응을 보이는 현상과 상응한다.²⁾

(2) 인권관의 특성 및 범위

북한의 인권관이 갖는 특징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먼저,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북한은 인권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근대 시민혁명기에 유산계급이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봉건통치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투쟁에 근로인민대중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했고, 그렇지만 당시 인권 논의에서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유산계급이었다.”고 파악한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9). 북한은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 및 공적 소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 문제에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둘째, 북한의 인권관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널리 고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북한은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권을 “그 누구도 침해, 유린, 훼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엮음, 2002: 582)으로 간주하면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한다(김정일, 1997: 55).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의·식·주, 보건, 교육 등 인민생활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제공하는 것에 1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인민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조건 충족을 통한 인민의 행복 추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하는데, 이는 식량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말하는 기본권은 위의 계급적 성격과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북한에서 발견되는 인권관은 북한만의 독특한 인권관이 아니라 사회주의

2) 무응답은 31.7%. 이 면접조사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8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금순·전현준, 2010: 43).

진영이 공통적으로 견지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진영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유기체론에 입각하여 파악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은 공동체의 목표달성 속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진영은 인권을 계급적 시각을 반영한 집단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인권보호도 “물질적 조건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각국의 인권증진에서 대내적 조건과 특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북한의 인권관에서 사회주의진영 일반이 아니라 북한 특유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계적 사회질서 및 관습이 그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격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를 확립해갔고, 그 결과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고 그에 의해 1974년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북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문화되고 획일적 집단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북한 민중은 자신들의 사상은 물론 생활 전 분야에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수령과 당이 주는 시혜로 생존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왕조체제의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가운데 북한 민중은 다 같은 사회주의 인민이 아니라 핵심·기본·복잡군중으로 나누어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수령의 시혜로 받는 인정(認定)과 선물로 북한 민중이 생존과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무는 적극적·1차적 개념이고 권리는 의무에 파생하는 소극적·2차적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가-사회 관계에서 북한 민중이 인권, 권리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의 인권관에 영향을 준 북한 특유의 현상은 북한의 유일사상·유일지도 체계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고방식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북한에 사회주의적 평등관을 정착시키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여성은 가정주부는 물론 아내, 혁명동지, 교양자라는 복수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 불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여성차별의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낳는 것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위계적 사회질서와 결합하여 북한 민중의 권리의식을 억압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반(半)봉건적인 북한 특유의 사고방식은 인권이 북한 민중의 자각과 힘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과 당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왜곡 인식시킬 수 있다.

한편, 북한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인권 범위는 사회주의 인권관이 강했던 냉전 시기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원칙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를 포함시켜 대부분의 권리를 망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2009년 개정된 북한헌법에서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정부는 광범위한 인권들 중에서 ‘기본인권’이란 개념을 제기하며 인권들 사이에 상대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2014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기본인권’에 사회정

치적권리, 존엄에 대한 권리, 생존권, 불가침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밝힌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과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밝힌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은 “부르조아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확인 고착시킨 것으로서 결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인권이 아니다.” 고 주장한다. 또 평화에 대한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도 “기본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여 주장되는 권리들”이라는 이유로 기본인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12-13).

(3) 인권정책의 변화

북한은 비록 노동당의 지도가 법률보다 상위에 있기는 하지만, 헌법과 민법 및 민사소송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가족법, 노동법, 남녀평등법 등 인권 관련 법률이 있다. 이 가운데 기본권을 밝히고 있는 헌법과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형사법제, 기타 인권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사법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헌법상 기본권

북한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의무와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둘은 사회주의적 요구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특히 북한 헌법은 국가에 의한 실질적 권리 보장, 국민들 간 권리의 평등, 사회주의제도 발달에 따른 권리 확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의 법적 확인 등으로 권리를 보장한다고 한다.

2009년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 기본권은 ‘제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2조-제8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권과 청원권, 노동에 대한 권리, 휴식에 대한 권리, 무상치료 등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 거주·여행의 자유,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보호, 결혼과 가정의 보호,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및 서신의 비밀보장. 그러나 이 헌법 제5장은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해 권리와 의무를 병기하는 식으로 인권 조항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하고 있는데, 의무에는 국방, 노동을 비롯하여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 수호,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준수, 국가안전, 국가보위 등이 포함된다. 그런 한계 속에서 헌법상 인권 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제66조),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제67조), 신앙의 자유(제68조), 신소권과 청원권(제69조), 거주·여행의 자유(제75조), 인신의 불가침,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보장, 법적 근거 없는 구속이나 체포 금지, 법에 근거 없는 살림집 수색 금지(제79조) 등이 포함된다.

둘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로서는 노동에 대한 권리(제70조), 휴식에 대한 권리(제71조), 무상치료 등을 받을 권리(제7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73조),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제74조), 셋째,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로서는 혁명투사 등에 대한 특별보호(제76조),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보호(제77조), 결혼과 가정의 보호(제78조), 망명 외국인에 대한 보호(제80조)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98년 개정 헌법에서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한 바 있다. 이는 식량난에 의해 사실상 주민통제력이 이완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 등에서 북한에 촉구해온 권리라는 면에서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민의 ‘거주·여행의 자유’의 허용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에 대한 배급통제의 이완에 따른 주민의 지역 간 이동 확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농민시장 등 경제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와 관련이 있다. 드디어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인권 존중 및 보호 조항(제8조)이 삽입됐다. 물론 이런 변화가 곧 실질적 인권 신장으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 나름의 긍정적 반응이자 향후 인권 신장의 발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2) 형사법제

인권, 특히 자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형사법제는 북한의 경우에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형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수시로 개정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부의 압력, 내부의 필요 등이 겹쳐 자주 개정되었다.

현행 북한 형법은 노동단련형의 양형 범위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가중처벌 사유도 축소된 한편, 벌금형과 암거래 처벌규정 등이 신설되어 북한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 조항에 불명확한 구절이 적지 않아 죄형법정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북한 형법 변화의 특징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찾아보면 유추 조항을 삭제하고 죄형법정주의를 높인 점과 사형제를 제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2004년 개정 형법 제6조28을 통해 북한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했는데, 이는 그동안 국제인권기구 및 인권 단체들이 비판해오던 독소조항 중 하나였다. 또 북한 형법에서 사형 조항은 1974년 형법에서 33개였으나, 1999년 형법에서는 내란, 테러행위, 공화국 전복목적의 탈출, 민족 반역행위, 고의살인죄 등 5개항으로 축소되었고, 2004년 형법에서는 5개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수정하고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였다. 현행 북한 형법상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죄목은 국가전복음모죄(제60조), 테러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5조), 민족반역죄(제68조), 마약 밀수·밀매죄(제208조), 고의적중살인죄(제266조) 등 7개 사항이다.

그러나 이렇게 형법으로 제한한 사형제를 뒤집는 법 제정 현상이 일어났다. 북한은 2007년 12월 19일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법을 제정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한적인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형법부칙을 제정하면서 사형해당 범죄를 확대하여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보위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형법부칙상의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신설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 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

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강도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국가자원 밀수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밀매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비법적인 영업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등에 경우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도경옥·김수암 외, 2016: 50-51).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의식한 형법 규정을 초월한 인권 침해 법제로 비난받을 만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형량 축소와 소위 생계형탈북과 정치적 탈북을 구분하는 등 처벌을 완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북한이 탈북자 처벌을 완화한 것은 생계형 탈북 혹은 그런 북한이탈주민의 귀환(혹은 송환)이 늘어나는 현실을 기존의 형법 조항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1990년대 후반부터 심각해진 식량난으로 탈북자 및 아사자 증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만회하려는 정책 의도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는데 즈음해 헌법 개정과 함께 형법도 개정되는데, 죄형법정주의 확대, 기존 형벌 완화, 마약 밀매 관련 법제 도입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형법과 법 집행 관행, 양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단속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04년 형법은 “적대방송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류포죄” (제195조)를 신설하였다. 또 남한사람과 접촉한 경우나 남한행 탈북으로 간주되는 주민에 대한 처벌은 조국반역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심지어는 사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북한 형법상 북한이탈주민 처벌 변화

구 분	관련 법 조항
1987년 형법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7조)
1999년 형법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7조)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제47조)
2004년 형법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33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제62조)
2009년 형법	벌금형 추가.
2012년 형법	노동단련형 2년 이하에서 1년 이하로 축소함.

* 출처: 서보혁, 2014: 154.

형법 개정은 자연히 그 관련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동반하게 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북한의 형사소송절차를 큰 틀에서 보면 남한의 형사소송절차와 거의 비슷하다. 즉,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검사에 의한 기소, 재판소에 의한 재판, 상소 등을 거쳐 형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북한의 형사소송법이 남한의 형사소송법 수사체계와 크게 다른 부분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절차가 별도로 있다는 점이다. 즉, 수사기관 및 검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예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서 실질적으로는 수사활동에 해당된다. 재판절차는 재판준비절차와 재판심리절차로 나누어지고, 일단 심리가 시작되면 연속하여 진행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은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1심 재판부의 구성에는 판사 1명에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참심제가 특징이다. 확정된 판결은 재판소가 집행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2004년 개정된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4조)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법에 의한 사법권 통제가 가능하다.

2012년 5월 1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종전 형사소송법이 철도재판에 대해서만 2심제를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형사재판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의 연장도 주목되는데, 피의자와 피소자의 입장에서 수사나 재판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개정된 것이라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보다는 북한에서 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부득이하게 예심기간과 제1심 재판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기간과 피의자 구류기간이 연장되고, 노동단련형에 관한 여러 규정이 신설된 것도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동단련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심과 구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북한의 형사법제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계급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나아가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지침이 법 위에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증언과 분석에 따르면 그런 규정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반대로 법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2. 북한 내 인권 실태 평가

(1) 시민정치적 권리

북한은 1981년 9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고, 1983년 10월 24일과 1984년 4월 2일에 각각 최초보고서(CCPR/C/22/ADD3)와 보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이후 규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1999년 12월 25일 제2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아

래에서는 먼저 2차 보고서상의 북한인권 상황을 먼저 소개한다(CCPR/C/PRK/2000/2).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2차 보고서는 198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헌법이 개정되었고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자유권과 관련된 법률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모두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보고서는 평등권, 생명권, 자유 및 안전의 권리, 여행 및 거주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권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제3조에 평등권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먼저 남녀평등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 1946년 남녀평등법 공포, 헌법에 의한 보장,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여성이 최고인민회의에서 20.1%, 지역인민위원회에서 21.9%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경제의 전체 고용에서는 여성이 48.4%를 차지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또 가정생활에서도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가족법 제18조)고 밝히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해 북한의 보고서는 제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생명권에 대한 법적 규정으로 생명권 보호(헌법 제79조 및 형사 관련 법률), 생명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형법 제45조, 제141조-제149조), 사회안전원의 무기 사용 제한(사회안전단속법 제35조), 불법적 생명 박탈에 대한 보상(형사보상규칙 제5조 3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쟁 및 기타 위협으로부터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을 덧붙이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음모, 반역, 테러리즘, 반국가적 배신, 국제적 살인 등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형제 자체가 대표적인 인권침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 제7조는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등 신체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들을 통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93조), 피의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형사소송법 제94조)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또는 형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검사와 법집행 감시기구가 고문행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이 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교화제도가 노동교화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교화소 수용자는 편의와 위생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인간적 조건을 제공받고, 하루 8시간 노동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고, 미성년 범죄자는 교양처분을 통해 교화되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는 교화소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북한의 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1992년 1월과 1995년 4월 형사소송법을 보완하여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의 변호권을 구체화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헌법 제79조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항을 거론하며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법 앞의 평등,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수행한다고 한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그러나 국가기밀 또는 개인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있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헌법 제158조, 형사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10조).

자유권과 관련하여 북한의 보고서는 여행 및 거주,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자체 자유권 평가는 이후에도 질적인 변화가 없다. 2차 자유권 이행보고서 15년여 이후 발간한 ‘2014 인권보고서’에서도 지난 평가와 큰 차이가 없다. 가령 생명권에 있어, 공화국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가기관이나 기타 단체 및 개인들에 의한 자의적인 체포나 처형 그리고 병,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형은 생명에 대한 권리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사형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2014 인권보고서’는 고문이나 구타 등 비인간적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거나, 법집행 일군 양성기관들에게 증거제일주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데서 검찰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고 있고, 수사, 예심, 교화기관들에 대한 정상적인 감시를 통하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며 만일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취급이나 처벌현상이 있을 때에는 강한 법적책임을 추궁하고,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금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 인권보고서’는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법에 의하여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변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고 부당한 연장심리를 받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형법상의 소급처벌을 받지 않으며, 재판의 독자성이 보장되고, 변호사는 피소자의 소송법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2014 인권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은 각종 신문, 잡지, 도서를 비롯한 출판물들과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침략전쟁과 차별, 폭행에 대한 모든 선전,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고취, 조장시키는 행위,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선전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국가적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안정, 사회질서, 사회의 건전함과 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시민의 자유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이 낸 제2차 자유권 이행보고서에 대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2001년 8월 27일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내놓았다 (CCPR/CO/72/PRK). 국제인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는 해당 규약에 비추어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및 심의시 답변 내용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는 5가지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래는 그 중 일부다.

-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항목들이 33개에서 5개로 줄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당사국이 사형제도의 문제를 폐지의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 대표단이 규약상의 여러 분야에 있어, 특히 여성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필요를 인식한 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점.
- 2000년 6·15 선언 이후 제한적이거나 세 차례에 걸쳐 남북 간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실시된 점.
- 당사국(북한) 내 행정적 구금이 중단된 점.

그러나 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내놓은 우려사항 및 권고는 23개에 달하는데,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헌법 및 법률 조항들, 특히 중앙재판소가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제162조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입법체계에 있어 규약의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규약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차기 정기보고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 당사국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 당사국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여타의 국제기구들이 그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북한 영토를 방문하여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위원회는 사형대상이 되는 범죄의 수가 5개로 줄었다는 점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반면, 5개 범죄 중 4개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범죄(형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이고 ... 규약 제6조 제2항이 요구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 또한 공개처형을 금지해야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계속적 노력해야 한다.
- 법집행공무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구금시설 및 유치장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교화소 및 구금시설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환경이 존재하고 의료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정부는 주민들이 자유권을 전반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북한이탈 주민 증언과 국제인권기구들의 분석 평가에 따르면 북한에서 자유권 상황은 최고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유엔인권기구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사회는 결의 22/13호를 통해 북한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를 사실 조사하고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를 결성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1년 후 이사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그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명을 위원으로 하고 20여 명을 조사관으로 하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활동해 이듬해 2월 7일 보고서를 배포했다.(A/HRC/25/63) 이 북한인권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여러 곳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위 COI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영역은 대부분 자유권이다. 보고서는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이동 및 거주 자유 침해,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등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어 COI 보고서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 11개 영역에 걸쳐 반인도적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 10개 영역이 자유권 분야다. 이어 보고서는 이런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이유를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impunity)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도 북한정부에 COI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A/HRC/31/70), 그 대부분이 자유권이다.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북한은 사회권규약에 1981년 9월 가입하였고 1989년 1월 14일에 최초 규약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2차 보고서는 2002년 4월 29일 제출하였는데 사회권규약의 10개 조항의 이행 경과를 담고 있다. 아래 내용은 2차 보고서의 요지이다(E/1990/6/Add.35).

첫째, 북한의 보고서는 노동권을 다루고 있는데 북한은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실제 정부기관, 기업 및 관련 사회협동단체들은 개인의 희망과 능력의 관점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연령은 여성은 16-55세, 남성은 16-60세로서 16세까지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되며 아동노동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여성은 남성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둘째, 보고서는 노동조건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임금은 노동에서 소비된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노동자의 생계수준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다만, 국가는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보다 빨리 인상시키는 조치를 통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였다고 밝히고 있어 임금 격차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였다. 나아가 국가는 노동법, 환경보호법, 노동자보호규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일화된 노동보호제도를 통해 노동권리 이행을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 북한의 보고 내용이다.

셋째,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에 관해서 보고서는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건강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노조의 결성 및 활동은 금지한다고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서는 등록지원서를 30일전에 제출해야 한다. 인상적인 보고내용은 노동자들은 피고용인인 동시에 고용된 기관이나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는 주인이기도 하므로 단체교섭, 노동분쟁, 파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보장권에 관해서 북한은 고령, 질병,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할 수 없는 모든 사람과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 아동은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면서 각종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모든 의료는 무상이고 실업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 및 실업급여는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급여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노동자의 보험료를 통해 보충된다고 한다.

다섯째, 북한은 각종 제도와 재정지원으로 가족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의 민법은 성년의 나이를 17세로 규정하고 있고, 가족법은 공민은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 주거를 공급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 아동의 생활용품과 학용품 가격의 5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특히 모성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는 임신기간과 출산 후 한 달 동안 담당 의사로부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유급 모성휴가가 77일에서 150일로 늘어났다고 한다.

여섯째, 식량난과 직접 관련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부분이다. 북한은 임금인상, 무상에 가까운 식량공급, 국가가 부담하는 주거, 무상교육 및 의료, 생활필수품의 가격 고정 등의 방법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연이은 자연재해로 많은 산업시설 파괴, 전력 및 연료설비 부족 그리고 식량생산의 급감으로 인민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곱째, 보고서는 건강권에 관해 8개 항목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우선 모든 인민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에 몇몇 급성 전염병이 증가했고 사라졌던 말라리아와 결핵 등의 질병이 다시 출현하였다. 또한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줄어든 점을 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민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에 공공보건에 대한 물질적 원조가 증대됨에 따라 인민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덟째, 북한은 교육권에 대해서도 무상의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문맹 퇴치, 교육 평등권, 교사우대 등 우수한 제도를 실현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홍수 등으로 교육시설의

파괴와 식량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인 ‘2014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묘사되고 있다. 가령 노동권에 관해서, 노동할 연령에 이른 모든 공민들은 성별, 민족별, 사회적 소속 여하에 관계없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권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노동조건 하에서 행사되는 권리라고 하면서 8시간 노동제, 휴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권에 관해서 ‘2014 인권보고서’는 국가는 양로원, 양생원을 비롯한 사회보장기관들의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 필요한 노력, 자금, 설비, 물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식량권 등 생존권과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공화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보수와 함께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라는 새로운 보수형태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누구나 쌀값, 주택사용료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위 보고서는 전인민적 무상교육 정책을 내놓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며 교육기관들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강권에 관해서도 보고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도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담당구역제를 시행해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 상태가 국가에 의해 보호 신장 받고 있다고 말한다.

사회권에 관한 위 북한의 두 보고서는 차이가 발견되는데, 2002년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식량, 건강, 보건 등의 분야에서 자연재해와 행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국제협력의 성과를 언급하고 있다. 그에 비해 ‘2014 인권보고서’는 사회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협력에 관심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두 보고서의 용도 차이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³⁾ 두 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감안할 때 북한정부의 전반적인 국가전략과 대외정책 방향의 변화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 결정적인 변수가 북한의 핵능력 확보 여부일 것이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3년 12월 12일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E/C.12/1Add.95). 최종견해는 도입, 긍정적 측면, 규약 이행의 장애요소, 주요 우려사항(9-25항) 그리고 제안 및 권고(26-49항) 등 5개 부분에 걸쳐 모두 49개항을 담고 있다.

최종견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연재해 극복 노력과 무상의료 및 11년제 무상의무교육 제도를 언급하였다. 또 규약위원회는 연이은 자연재해의 결과와 기반시설 재건, 식량

3)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 낸 보고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를 앞둔 것인데 비해, ‘2014 인권보고서’는 국제사회를 향한 일방적인 선전용이다.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규약 이행의 장애요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종권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우려사항을 훨씬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인권보호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헌법 및 기타 법조항.
- 자유권 규약을 적용한 판례가 없고 규약이 국내법원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는 점.
- 신소청원법에 따른 개인청원제도의 정확한 기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 여성의 사회권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통적인 관습과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내입법의 부족과 정치, 행정 기구 및 산업분야의 의사결정 직위에 사실상의 남녀 불평등이 있다는 점.
-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하는 국가차원의 강제적 노동배치 제도 하에서는 노동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없는 점.
-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 점.
- 국내법에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
- 1990년 중반 이후의 광범위한 기아로 인해, 특히 여성, 아동, 노인이 다른 집단 보다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점.
- 5세 미만 아동의 높은 만성영양실조 비율(45%, 정부통계) 및 빈곤관련 질병 발생률, 영아 사망률의 급증.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위 우려들과 함께 다양한 권고를 북한정부에 하였는데, 다음 이행보고서에 북한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지켜볼 일이다. 북한은 2002년 이후 아직도 추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사회권 실태는 광범위한 영역, 자료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자유권에 초점을 둔 국제적 관심 등의 이유로 자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서도 매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팀의 작업은 가장 신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발간된 백서에서 북한의 사회권은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네 영역을 관련 국제규범, 북한의 입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증언을 교차시키며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이 내놓은 보고서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첫째 식량권의 경우, 김정은 등장 이후 분조관리제 내에 포전담당제를 실시하여 생산성 증대를 꾀하고 있어 가용성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절대적인 식량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업소 간 양극화와 함께 국가기관의 배급에 소외된 일반 주민들의 접근성 악화가 지적되었다.

둘째, 건강권은 의약품 절대 부족, 의료시설 낙후, 그리고 경제난 등 구조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가용성이 계층별로 불균등해지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절대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가용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아가 의료전달 체계가 지역, 계층별로 차이가 큰 상태에서 계층별 접근성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이는 북한이 자랑해온 무상의료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그 대신 성분 등에 따른 계층별 차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가령, 북한의 인민보건법에 따르면 진단, 검사, 수술, 입원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병원에서 진단만 해주고 약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촬영 등 검사와 수술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주로 병원을 찾게 된다. 입원과 그에 따른 제반 비용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제반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당과 국가기관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건강권 접근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권의 경우 북한의 주장하는 훌륭한 규정이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임금이나 노동조건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임금수준 등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도 엇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100% 고용과 능력에 따른 보상 등 북한이 주장하는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와 어긋나는 직장배치로 인해 일정 기간 직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 노동단련대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기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근로자들이 기업소에 출근하는 대신 시장과 연계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현상도 어렵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당성과 성분이 학력, 자격, 실무능력 등에 못지않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어 직장과 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타난 교육 시스템의 붕괴는 넘어섰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는 않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가의 교육 및 학교시설 지원이 ‘충분’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총 응답자 268명 중 51명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자의 81.0%인 217명이 국가의 지원이 ‘불충분’하거나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만 한정해서 보면, 국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비율은 79.6%이다. 다만, 김정은 정권 들어 교육제도의 변화와 함께 ‘청년강국’과 같은 정책목표 제시가 교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소수자 권리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했고,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가입한 상태다. 소수자의 권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 하겠는데, 그에 관한 북한의 주장과 객관적 평가를 시도해보자. ‘2014 인권보고서’에서는 자유권, 사회권 분야의 실태에 이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 실태도 다루고 있다.

1) 여성 인권

북한은 여성들이 정치생활 분야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말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 3일 실시된 첫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때부터 오늘까지 여성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여성들이 당, 국가기관은 물론 근로단체들과 사회단체들에서 전임일군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분야에서도 북한 여성들은 완전한 무료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여성기술자, 전문가만 하여도 백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 노동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하는데, 특히 산모들과 갓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주어지고 있다고 한다. 평양산원뿐 아니라 각, 도, 시(구역), 군, 리들에 있는 인민병원들에도 산과가 있어 해당 지역안의 임신부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해산을 돕고 해산 후에는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해주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해 취업, 직장생활 등에서 차별이 없다고 한다. 특히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체질에 맞지 않는 작업에는 여성들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임신 4개월이 넘는 여성을 이동작업이나 출장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해당 보건기관들이 모든 여성 노동자들 특히, 임신한 여성에게 정기적인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을 평가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가 2002년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해당 협약위원회의 최종견해(2005)다. 최종견해는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1946년 남녀평등법 제정, 2001년 9월 동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설립, 11년제 보통무상의무교육으로 문맹퇴치를 이룬 것,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과 같은 지원 서비스와 특정 관리직의 여성고용 증가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 등이 그것이다.

협약위원회가 최종견해에서 크게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인데 아래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그 중 일부이다.

-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당사국의 설명을 주목하면서도 협약과 국내법의 충돌시 협약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국내법과 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협약의 지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 당사국의 국내법에는 협약 제1조에 부합하는 여성차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다. 협약 제1조에 명시된 차별의 정의를 헌법이나 기타 국내법에 완전히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 남녀평등법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여성차별적인 법조항들(최저혼인연령에 있어 남녀의 차이 등)을 가려내기 위한 법률 제검토 및 국내법을 협약에 합치시키기 위한 법률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 인민위원회 내에서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여성의 평등권과 협약상의 의

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가 의사결정권, 재정, 인적자원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을 우려한다. 이에 여성의 권리신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국가조정위원회에 적절한 권력과 자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한다.
- 여성을 가사전담자로 인식하거나 여성의 ‘특성’에 기초하여 고용을 할당하는 것과 같은 여성의 정형화된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태도를 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당사국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한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구제수단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2014 인권보고서’는 북한정부가 12년 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내용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여성차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관행의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취약점으로 남기고 있지만, ‘2014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규정과 법제도를 현실로 둔갑시킨 것 같은 인상이다.

2) 아동의 권리

‘2014 인권보고서’는 아동권도 다루고 있는데 국적, 교육, 보건, 민사, 법집행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국적과 법집행 분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서 아동들은 공화국 공민 사이에 출생한 경우를 비롯해,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경우, 공화국 영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 경우, 공화국 영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공화국 공민이지만 탈북 여성이 공화국 공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해서 낳은 아동의 경우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위 보고서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아동이 무료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지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요양비, 여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민사분야에서 아동은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 학대를 인정되지 않는다. 아동의 수양, 양육권은 법적으로 보호돼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보육교양 능력이 없는 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입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북한은 아동

에게도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2014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은 법기관에서 취급당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형법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며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강제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위와 같은 북한정부의 아동 인권 보호제도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다시 북한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2004년 7월 발표한 최종건해서 나타난 우려사항을 참고해보자.

당시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최종건해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우려사항 및 권고는 일반적 이행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적 보호, 기초보전 및 복지, 교육 및 여가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11개항을 망라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 이행 조치 부분에서는 최초보고서 심의에서 지적되었던 우려사항과 권고들이 입법과 정책을 통해 다루어졌으나 비차별, 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아동의 견해 존중, 체벌, 아동학대와 방임 등에 관하여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과 합치하지 않는 국내법들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최종건해는 국가행동계획 및 조정과 관련해, ① 기존의 국가행동계획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종합계획의 마련을 검토하고, ② 그 과정에 아동과 유엔기구, 국제민간단체, 재정 지원국들을 참여시키고, ③ 국가행동계획의 집행을 조정하는 정부기관을 지정 또는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배정할 것과 조정, 감독, 평가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치와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권고하고 있다.

최종건해는 아동의 정의와 관련해서 성년의 연령을 18세로 높일 것과 여성의 결혼가능 최저연령을 남성과 동일하게 18세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 원칙과 관련해서는 취약집단에 대한 모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도입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 특히 장애아동, 농촌지역 아동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여아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서 최종건해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와 관련하여, 북한의 법이 아동권리 협약 제13조-제17조에 명시된 권리(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자유로운 정보 접근 등)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다음 정기보고서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종건해는 가정환경과 대안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보호 시설에 대한 인적, 재정적 지원을 증대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아동 학대 및 아동보호 소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부모, 교사, 법집행 공무원, 보육노동자, 판사 및 보건직 전문인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하고 있다.

최종건해는 또 장애아동을 위한 종합정책 수립, 보건체계의 질 개선 및 보건분야 재정지출 확대, 적절한 영양식 제공 및 건강한 습관 조기교육 등을 기초 건강 및 복지 분야의 권고로 내놓고 있다. 그리고 교육, 여가, 문화 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 결석을 예방하

고 줄일 수 있는 조치 강구,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등 7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최종견해가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은 특별 보호조치에 관한 것인데 먼저, 군 입대가 정말 자발적일 것, 자발적 입대의 최저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탈북 아동의 귀환과 관련해서는 탈북 동기 분석, 귀환 아동을 희생자로 대우할 것, 안전 귀환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상할 것, 귀환 아동들에게 재통합과 상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아동을 경제적, 성적 착취 그리고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노동교화형에 처하지 않게 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최종견해는 북한정부에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두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이 주장하는 아동권 보호가 사실과 거리가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2014 인권보고서’ 상의 아동 권리 실태와 2004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권고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모두 수용되었는지는 북한의 추가 이행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북한의 위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동 인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 두 선택의정서에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채 아동들에게 집단주의, 군사주의 문화를 주입하고, 유니세프를 비롯해 국제단체단체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3) 장애인(장애인)의 권리

‘2014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장애인 인권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2년 4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잠정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해 8월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 한명의 선수를 참가시켰다. 이어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했고, 그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감안해 최근 들어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음을 시사해준다.

북한정부는 위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고 교통사고, 노동재해 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보호 원칙에 따라 장애인들은 의료상 조력을 받을 권리, 교육의 권리, 노동의 권리, 문화생활의 권리 등을 향유할 수 있다고 한다. 위 보고서를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회복치료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은 필요한 지역에 조직된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인 회복치료기관에서 혹은 의료일군의 조력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 치료를 받

을 수 있다. 또 장애자들은 학령 전 나이에 있을 경우에는 탁아소나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 교양 받을 수 있으며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학령 나이의 장애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조직되는 특수학급에서 혹은 맹인, 농아인,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

노동 분야에서 장애자들은 장애정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자들을 위하여 조직된 전문기업소나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아래로 한다.

문화생활권과 그 밖의 권리와 관련해, 장애자들은 자기 건강에 유리하고 자립적 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진행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장애자들을 위해 꾸려준 문화정서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 정서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장애자들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이용에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적극 장려되고 있다. 북한정부는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정책이 곧바로 현실에서 체감되는 것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훈련 및 재활을 위하여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현상의 하나로, 북한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 내에는 우대를 받는 영예군인과 일반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공장의 경우에도 영예군인 공장과 일반 장애인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부양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대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영예군인에 한해서라고 한다.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6%이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의 존재를 안다고 답변하여, 연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일반 주민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도경옥·김수암 외, 2016: 259, 292-295). 전반적으로 북한에서 소수자 권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1) 탈북 유형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275명으로 남성 251명, 여성 1,024명, 이 중 여성의 비율이 80%를 점한다.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2016월 9월 기준, 약 29,830명(여성 71%)으로 집계되고 있다.

탈북 유형은 탈북 동기와 직결된다. 탈북 동기는 배출 요인의 측면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식량부족 해결, 삶의 질 향상,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식, 범죄행위로 인한 도피 등을 꼽을 수 있다. 탈북을 수용하는 측(주로 중국)의 흡수요인으로는 결혼 배우자 충원과 3D업종 내 부족 노동력 벌충 등이 주로 거론된다. 이런 탈북 동기들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그 초점이 달라진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탈북 동기는 식량 부족 해결과 같이 경제적 생존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에는 식량을 구하거나 일정 기간 돈벌이를 한 후 북한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먼저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켜 함께 살고 싶거나 외부정보의 유입으로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한 탈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서 현재 북한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과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중 어느 쪽에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일시적 탈북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 월경자 혹은 이주자로 간주한다. 반면에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이라도 그 배경에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북한에 되돌아갈 경우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의 경우는 북한 당국이 생계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주장의 경우에는 송환된(혹은 귀환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주장에 따를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국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자국의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처벌하는 데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국행이나 현지 체류를 묵인해주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에 의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에 해당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였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주의 견지에서 북한에 강제송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식량부족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넘어온 이주자로 간주하고 있어 묵인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 주재 외국공관 진입이나 탈북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단속과 강제 복송을 단행하고 있다.

사실 탈북현상이 그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격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논의도 있다. 비록 그 수는 적었지만 ‘귀순자’로 불린 냉전시기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망명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정치적 난

민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궁핍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법 이주자로 규정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생존 차원을 넘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성격이 덧붙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이탈주민은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에 따를 경우 난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 하겠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일차적 발생 원인을 경제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아 탈북 행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강제송환 및 송환시 처벌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난민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타폰(V. Muntarhorn)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런 점을 들어 북한이탈주민을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이라고 규정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와 지위

탈북자 인권 실태는 국제법적으로 난민, 이주자와 직결된 지위와 관련된다. 먼저,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일시적 탈북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 월경자 혹은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로 간주한다. 반면에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이라도 그 배경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북한에 되돌아갈 경우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난민(refugee)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⁴⁾ 가령, 북한이탈주민을 불법 월경자나 이주자로 볼 경우 중국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자국의 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처벌하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행이나 현지 체류를 묵인해주는 것을 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치적 난민으로 볼 경우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압박도 정책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부여를 둘러싼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설령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간주하여도 당사국인 북한이나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현지 보호, 강제송환 방지, 남한 입국 등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지 그들에 대한 지위 규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실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난민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UNHCR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지위 결정과 무관하다”

4)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부상되었는데, 역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위 규정이 그들의 인권 실태 파악과 보호에 얼마나 유용한지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

며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미 남한 국적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이외, 즉 미국을 포함한 제3국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이들을 면담한 뒤 해당국 외교공관에 보내줄 따름”이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난민지위를 주고 자국에 재정착을 허용하는 일은 전적으로 해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⁵⁾ 또 탈북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성이 전적으로 생존 추구형만이 아니라 범법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체류국의 치안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을 단순히 난민으로만 관련지어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들은 크게 나뉘보면 첫째, 중국,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둘째,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서방국가들도 대별해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들이면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시 체류자들로서 식량 구하기와 돈벌이를 위한 중국 체류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행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해당국의 국경 경비대와 난민 당국으로부터 체포 구금 조사를 받고 임시수용소에서 체류하다가, 강제추방 혹은 강제송환을 당한다. 강제추방의 경우 한국정부가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킨다. 이런 두 가지 선택지 중 해당 국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와 북한이탈주민 체류 국가들에 대한 남북한의 로비의 상대적 효과에 달려있다 하겠다.

둘째, 서방국가들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해당 국가 이민당국의 심사 등 중앙정부의 보호 및 심사를 거쳐 정착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 지원을 받는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서방국가에 들어간 북한이탈주민들은 임시체류가 아니라 정착을 추구한다. 이런 나라의 이민당국의 심사는 처음 허술한 사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 교민들의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의 정착이 원만해보였다. 그러나 이런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인들이 북한이탈주민 행세를 하면서 관련국의 이민/난민 심사당국과 한국정부의 협조로 탈북민의 제3국 정착 심사가 강화됐다.

4.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인권과 관련한 결정례가 다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강제송환, 건강권 관련 결정례가 다수 있었다(<표 3> 참조).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결정례들이 있었다(<표 4> 참조).

5) 『자유아시아방송(RFA)』, 2006년 5월 31일.

<표 3>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결정일	사건명 및 주요사실
2007. 01. 23.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권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로 북한에 있는 진정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2008. 07. 17.	북한주민 22명 복송사건에 대한 권고 (북한주민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인권보장 개선대책 및 복송되는 북한주민 신변안전 보호에 대한 권고)
2008. 08. 04.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권고 (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
2011. 10. 24.	신속자 모녀(일명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권고
2011. 11. 18.	재중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강제복송 중단 성명
2011. 11. 24.	북한이탈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
2012. 12. 06.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원의 정규 보건의료 인력 충원 권고)
2013. 07. 25.	중국 출생 북한이탈여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강제복송 중단, 실태파악 및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표 4> 북한인권 정책 및 북한주민 인권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결정일	사건명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
2011. 10. 2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
2008. 09. 30.	인도주의적 대북식량지원 권고
2010. 04. 26.	북한인권법안 제정 권고
2010. 12. 06.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2010. 12. 06.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북한주민이 외부의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
2013. 03. 2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3. 07. 30.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4. 03. 18.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4. 03. 24.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권고
2014. 05. 29.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4. 11. 27.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2014. 12. 01.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수용 촉구 의견표명
2015. 01. 26.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표명
2015. 06. 23.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5. 12. 18.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II.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경험’ 현황과 쟁점

1.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1)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는 인권경험의 특수성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다. 영어의 ‘right’를 번역한 것으로 right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권리의 개념이 자연법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김자영, 2012: 21).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자연이 규정하는 것이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지위가 바로 권리라고 했으며 여기에서 이성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사상이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다(최현, 2009: 12-13).

현재의 인권개념은 근대 자연권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연권은 자연법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자연법사상은 고대에서 시작되었고 중세를 거쳐 근대에서 체계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정의는 법률용어사전의 ‘천부적·자연적·기본적·생래적’ 개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헌법·법률·조약·관습법’의 내용적 개념에서 파악할 수 있다(김영진, 2016: 47).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규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천부성(天賦性)을 전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제1조에서도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이나 미국의 독립 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에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보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김윤태, 2012; 박호성 외; 2005, 11).

인권의 범위는 크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 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권의 주체와 적용 대상에 관한 권리다. 이 말은 인간의 생명 자체에 대한 존엄한 가치의 권리 즉,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행복추구는 인간의 삶에 대한 행복의 권리를 존중하는 권리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이 타인이나 특정한 단체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행복추구의 권리는 개인의 행복추구에 관한 욕구의 표출이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행해지는 간섭과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김영진, 2016: 26).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에 관한 인권 개념은 근대 생명권과 소유권으로부터 발전되었다. 근대 생명권은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을 통해 체계화되었고, 소유권은 로크의 『통치론』(1689)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홉스와 로크에 의해 체계화되어 발전한 인권

개념은 현재 국제사회의 인권개념과 각 국가의 헌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헌법에 나타난 인권 내용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과 사생활과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문화적 자유, 그 이외 권리가 있다(김영진, 2016: 47).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휴전상태로 국가 간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 특수성은 인간안보론의 적용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인간안보는 “인간의 삶에 주목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즉, 인권적 측면의 보장을 안보의 우선되는 가치로 판단” 하는 개념으로, 인간안보는 국가안보에서 개인을 비롯한 가정, 소속 단체, 공동체 사회 등 모두를 포함하는 사람들의 안보로 사고의 변화를 요구한 안보의 새로운 개념이다(김영진, 2016: 37).

인권과 인간안보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하며 이러한 개념의 유사성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첫째, 인권의 기준을 크게 ‘인간의 삶 자체’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 삶의 질’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행복추구의 권리로 나누어 논의할 때, 인간안보의 수준 측정의 기준은 인권의 두 가지 핵심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권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인권의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 보호를 골자로 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인간안보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까지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영진, 2016: 43). 국제기구는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해마다 인권과 인간안보에 관한 지수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에 있어 인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기준이 되고 있고, 인간안보는 실질국민소득, 평균수명, 교육수준만이 조사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세 가지 조사 대상은 ‘인간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삶의 질이라는 기준은 인권에 있어 행복추구에 관한 권리와 연계성이 있다(김영진, 2016: 44).

셋째, 보편성과 상대성 또는 특수성에 관한 쟁점을 의미하는 동일한 쟁점을 발생이다. 동양의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집단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연대적 사회를 형성해 오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또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였고, 서양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여 국가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인권의 보편적 적용은 동아시아에서 보편성과 상대성(특수성)의 논쟁을 발생케 했다. 이러한 논쟁은 인권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간안보의 접근에서도 발생하였다. 이 지점이 인권과 인간안보가 같은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안보의 개념을 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개념에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안보의 보편적 개념은 인권의 보편적 개념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김영진, 2016: 44).

넷째,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자의 유형에는 NGO를 비

못하여 인권 관련 기관, 정부, 국제기구 등이 있으며 NGO들은 지역의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NGO의 노력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은 향후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압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체보다 실효적인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안보의 지역적 다자간 대화체(인간안보 레짐)에는 아세안지역포럼(ARF),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EAN+3,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위원회(CSCAP),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 협력대화(ACD), 동북아 협력대화(NEACD), 아세안지역포럼(ARF) 등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과 인간안보의 국제적 적용은 동일한 맥락에서 다루어진다(김영진, 2016: 45-46).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의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다. 인권과 인간안보는 폭력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현실주의에 의해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인식된 국가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류의 인권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권과 인간안보는 국가주권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과 인간안보 피해자 개입과 참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확립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논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안보 공동체를 마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개념은 인간안보론과 더불어 ‘대상으로 설정, 측정기준, 국제적 쟁점, 문제 해결의 방향성, 상관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등의 부분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김영진, 2016: 46-47).

(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김자영(2012)은 인권의식이란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 라고 하였다. 즉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여 고통을 공유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 의지를 갖는 것” 을 의미한다(김자영, 2012: 12). 이금순·전현준(2010)은 “인권의식(human rights consciousness)은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권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사안별 인권실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고 한다(이금순·전현준, 2010: 9). 또한 홍우택(2009)은 개인의 인권의식 성장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자각” 혹은 “나의 삶이 사회구조적 제한이 없다면 한층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식이 생겨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홍우택, 2014: 445).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인권의식’ 은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세의 의미가 강하다(김자영, 2012: 36).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의식을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인권의식의 인지적 요인을 인권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신념, 판단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인권의식의 정서적 요인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갖는 평가의 감정을 의미하며, 행동적 요인은 인권과 관련된 상황이나 사람

에게 행동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김자영, 2012: 38).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언제 처음 형성하게 되는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상황이나,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인권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김자영, 2012: 46).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은 그 형성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금순·전현준(2010)은 인권의식을 인권개념에 대한 인식,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인식, 직접적인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간접적인 인권침해 경험, 인권구제수단에 대한 인식, 인권구제기관에 대한 인지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보고, 인권의식의 개념을 인권개념 및 인권침해 대응에 대한 인식으로 규정하였다(이금순·전현준, 2010: 10).

박호성 외(2005: 82)의 연구에서도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동기로부터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탈북 동기는 첫째,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 탈북, 둘째, 정치적 탄압 혹은 인권침해를 견딜 수 없어 탈출한 경우, 셋째, 범죄행위로 인한 탈북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국내 입국 이후 북한에서 거주하던 시기와 공간적 관점에서 비교해볼 때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념과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하기 전에 재사회화 또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던 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기본으로 박호성 외(2005)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내용 범주를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최소한의 생계 보장), 자유와 안전의 권리, 자기의사결정권,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가족, 가정의 보호 / 건강권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순으로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범위를 탈북 과정에서 인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에는 제3국(중국 등)에서의 인권,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후의 인권, 정착국(남한)에서의 인권 등을 다루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에는 생존권, 경제활동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으로 나눈 후 생존권에는 식량부족의 현황, 대량 아사자 실태, 아동의 생존권, 의료현황, 경제활동권에는 이동권, 경제활동 보장권, 생산물 소유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에는 신분차별, 직장 및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 아동보호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개인의 신변안전권,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 세 분야로 나눈 후,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변안전권에는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는 수감자 인권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공개처형 사례,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각각 다루고 있다. 또한 심층면접에서는 첫째, 인권에 대한 인식 정도,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문, 셋째, 국내에서 생활수준 넷째, 국내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 다섯째, 적응교육(정부합동조사기관 하나원) 기간 발생한 인권문제, 여섯째, 거주지에서

겪는 인권문제, 일곱째, 학교·직장에서 겪는 인권문제, 여덟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아홉째, 종교와 여행의 자유, 열 번째,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의 체계 또는 인권의식의 형성 기반은 일반적인 체계를 수용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관련 경험과 인권의식 형성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2008)는 2007년과 2008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와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검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소수자 인권, 주요 사안별 인권 실태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겐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영역에서는 식량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소수자 인권 실태에서는 여성권, 아동권 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안별 인권의 실태는 남북역류자, 국군포로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는 문헌자료 분석으로 단행본 총 154권을 비롯한 2006년 신문자료, 2005-2006년 인터넷 기사자료, 2006년 자체 수집한 잡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면접조사는 540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범위는 생명권,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거주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좋은벗들의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2004)와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2007)에서는 면접조사 자료로 1996-200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중국 활동 당시 수집한 증언자료와 2003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 체류기간이 짧은 이들의 증언을 사용하였다. 또한 증언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권보고서 및 북한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들을 비교 검증하였다.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등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크게 식량난과 생존권, 개인의 경제활동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으로 나눈 후 식량난과 생존권에는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어린이 성장 장애 및 교육권 침해, 개인의 경제활동권에는 이동의 자유 제한,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에는 출신성분제와 연좌제, 여성과 아동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겐 개인의 신변안전권, 법적 보호받을 권리,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 세 분야로 나눈 후,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변안전권에는 주민상호간 폭력,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 공개처형,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08 북한인권백서』(2008)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좋은벗들

의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해당 기간 내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과 사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북한당국이 각종 지침과 검열, 단속을 통해 보여주었던 생생한 현실을 자료로 삼았다. 연구범위를 식량권, 생계활동권, 보건권, 신체의 자유권, 여성권, 아동권 등의 6개로 분류하였다. 식량권에는 식량의 절대적 부족, 배급순위에 따른 식량배분, 평양중심의 식량공급, 생계활동권에는 시장통제와 개인고용 금지, 개인농사에 대한 권리, 강제노동과 과도한 세외부담, 보건권에는 무상치료 시스템의 붕괴와 차별 진료, 위생관리의 부재, 재난관리 체계의 미비, 사상의 자유권에는 일상화된 검열과 단속강화, 정보소통의 통제, 신체의 자유권에는 공개재판과 처형,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연좌제 처벌, 탈북방지와 국경 봉쇄, 여성권에는 가족 해체 및 모성 보호권, 자원화, 권력화된 성적 거래, 여성의 이중 노동, 탈북 난민 여성, 아동권에는 아동의 생존권, 파행적 교육현실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2006년 백서 발간시 증언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헌분석은 기존 문헌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백서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률 적용 실태 외에 북한인권 실태를 식량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비자발적 실종,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정치범 수용소, 북한이탈주민, 북송 재일교포,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등으로 범주를 다루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박순성 외(2009)의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북한 내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상황, 탈북 이후 중국 등 제3국 내 체류 탈북 여성의 인권침해 상황, 국내 정착 과정에서의 권리 의식 및 침해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먼저 중국 및 제3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상황을 조·중 국경선과 탈북여성, 국적 없는 삶(신분증을 만들 수 없는 생활, 공안의 추격과 타인에 대한 경계,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불법체류자의 지위를 악용하는 브로커의 인권침해, 국적 없는 생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기), 일상생활에서 정체성 부정과 인권의 박탈(일상에서 ‘자아 정체성’ 부정당하기 - 값없는 몸, 제3국에서의 의식주의 기본 생존권의 박탈, 언어적 폭력 - ‘탈북자 주제에’,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젠더와 트라우마(모성권의 침해와 트라우마, 성폭력, 매매혼과 인신매매)를 연구를 통해 밝혔다.

남한 내 탈북여성의 인권상황에서는 탈북여성과 남한 사회(탈북여성의 입국 현황 및 사회적응 교육,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일상생활 공간으로서의 남한 사회)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의 인권상황(조사 과정에서의 ‘낙인’ 과 상처: 탈북여성은 잠재적 성매매 여성?, ‘트라우마’ 에 대한 치료 및 지원의 부재, 차별을 재생산하는 적응교육: 탈북여성은 남한 여성의 하위 집단?, 길들이기 식의 정부 지원제도: 나가서 일하면 돈 준다), 일상에서의 차별과 배제: 거기와 다를 바가 없는 데구나(‘모르는 게 너무 많은’ 탈북여성과 일상생활의 ‘위험’ , 사회에 짐이 되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북한 사람들: 중국 교포는 되지만 북한 사람은 안 돼, 아픈 데가 많은 여성들: 몸의 상처와 정신적 트라우마, 몸은 ‘여기’ 있

어도 마음은 ‘거기’ 있는 여성들: 가족 데려오기, 가부장적인 성역할과 결혼 관계의 재구성
 성의 연구내용을 발견하였다.

<표 5>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연구의 체계

구분	인권 분류
국제사면위원회 (2004)	식량 접근에 대한 불평등성,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조단체에 대한 제한, 식량난으로 중국에 도주한 북한주민의 상황, 식량난으로 인한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 등
국가인권위 (2004)	탈북과정에서의 인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좋은벗들(2007)	식량권, 생계활동권, 보건권, 사상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여성권, 아동권 등
인권감시협회의 보고서(2007)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차별 강화 현황, 국경에서 한국인 혹은 선교사와 접촉한 북한이탈주민 차별 실태, 북한이탈주민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등
UN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2008)	인권과 개발과정,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접근, 권리와 자유, 탈북과 피난,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폭력과 인권침해 등
미국무부의 연례 세계인권보고서 (2008)	인간존엄성, 시민적 자유의 존중, 정치적 권리의 존중,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노동권 등
대한변호사협회 (2010)	식량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비자발적 실종,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정치범수용소, 북한이탈주민, 북송제일교포,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등
통일연구원 (2011)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소수자 인권, 주요 사안별 인권 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생명권,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거주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등

* 출처: 이우영 외(2008), 12-44 재구성

2.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와 쟁점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와 쟁점은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관련 경험과 입국단계에 따른 인권관련 경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문제는 1960년대-199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입국단계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는 탈북 과정에서부터 제3국 체류과정, 정부합동조사 및 하나원 생활, 남한 정착지까지로 그 쟁점을 정리해볼 수 있다.

(1)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 경험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북한 내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시기마다 그 특성이 다르게 진행되어왔다. 1960년대나 1970년대에는 체제불만이나 이념적 이유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성분불량자', '처우불만', '처벌우려' 등의 개인적 이유에 의한 탈북이 주요 요인이었다(최영관, 2004: 5).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반에는 동유럽 및 구소련에 파견되어 있었던 벌목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북한체제 이탈의 주를 이루었으나(송영훈, 2012: 2), 그 이후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 및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대량 발생하였다(최영관, 2004: 4). 1990년대 러시아에 체류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벌목공이었으며 이들은 북한에서 파견한 노동자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후반까지 조선족이 비율이 높은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 북경, 청도, 상해 등의 대도시와 중국 티벳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6). 윤여상(1998)의 경우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수를 10만 명 규모로 추정했지만 좋은 벗들은 1998년-1999년 재중 북한이탈주민 규모를 약 30만 명까지 추정하였다(윤여상, 1998; 북한인권정보센터, 2013: 6에서 재인용).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 주민의 북한 외부와의 정보접촉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북한 내부에서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리기를 위한 탈북이 일어나게 되었고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망명을 허용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에 존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2003년 2,020명, 2004년 2,800명, 2005년 3,320명, 2006년 5,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7년 지정된 작업장에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 불법체류자는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동아일보, 2006. 11. 3.일자 보도; 김윤영, 2010: 56에서 재인용).

2006년 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되었는데, 노동자들 중 근무지를 이탈해 장기간 복귀하지 않고 남한행을 희망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러시아의 벌목, 농업, 건설 현장은 매우 열악하며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16-17시간 일하는데, 임금착취 및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김윤영, 2010:

54-56). 2009년 이후 서방국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적 탈북에 대해 경계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은 경제적 탈북이 주를 이루고 있다(송영훈, 2012: 2). 동남아시아의 경우, 2004년 베트남에서 남한으로 집단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베트남에서의 통제가 강화되어 베트남을 경유한 남한 입국 규모는 감소하였다. 태국의 경우 밀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 189명, 2006년 728명, 2007년 1,767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미얀마의 경우 2009년 칸차나부리 이민국 수용소에 10여명이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영, 2010: 57-58).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주 대상 국가로 탈출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각하는 경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최영관, 2004: 4-5). 중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러시아 등의 국가로 이동하고 있으며, 남한으로의 입국이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의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현상은 중국 및 베트남, 태국, 라오스, 러시아와 같은 경유국이나 정착국가의 경제상황, 이민정책, 소수자 정책등과 연계해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만을 최종 정착 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국가들로의 이주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송영훈, 2012: 2-3).

북한의 인권 상황에 따라 겪은 인권 관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혹은 인권의식에 있어 인지, 정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김윤태(2012)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못 이겨 탈북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아, 이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중국이나 여타의 도시로 이동한 경우가 잦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거나 단속처벌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 인권의식 형성에 있어 그 이후 탈북연도 출신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태도에서는 2010년대 탈북한 사람이,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에서는 1990년대 탈북한 사람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김연태, 2012: 126)

(2) 입국단계에 따른 인권 경험

1) 탈북 과정에서부터 제3국 체류과정

김윤나(2016)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게 되는 루트를 얘기하게 될 때 직행 혹은 제3국을 거쳤느냐는 표현을 사용하여 탈북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의 직행은 북한에서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지 않고 중국(연길 혹은 심양)→ 라오스/베트남/미얀마→태국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경로이며 이 경우 소요기간은 약 6개월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경로

* 출처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http://www.hub4u.or.kr/hub/edu>) 북한이탈주민 입국경로

중국 내 외국대사관, 영사관 및 중국 외교부 진입을 시도하거나 중국에서 여권을 위조해 비행기로 곧장 오거나 북한에서 배를 타고 오거나 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남한행을 감행하는 것이다(박순성 외, 2009: 15). 이러한 직행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경우이다. 중국은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불법 경제 이민’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단속 및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단행되고 있고 북한은 불법월경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박순성 외, 2009: 6).

북한이탈주민이 1998년, 1999년 탈북하였다가 중국에서 일하며 살다가 적발되어 북송당했다가 다시 탈북하여 중국에 재거주 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된 후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성의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도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고 난 후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그 때 원가족들과 오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인신매매로 중국에 결혼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편은 싫더라도 중국에서 낳은 자녀는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김윤나, 2016: 48). 결국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이주여성들과 다르게 탈북 여성은 중국에서 비국민적 존재로 생존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북한에 있는 브로커는 탈북 여성들을 국경선 건너편으로 넘겨주는 반면 중국에 있는 브로커는 탈북 여성을 한족이나 조선족 남성들에게 또는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다. 이들 브로커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계를 중개하거나 가족들을 데려오는 역할도 수행한다(박순성 외, 2009: 6, 13).

중국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살다보니 이미 남한에 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남한행을 결심하게 된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6명-12명 정도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모이면 차를 통해 이동하여 태국의 방콕 혹은 인근지역의 감옥에서 빠르면 한 달 정도 생활하다 입국하게 되는 것이다. 브로커 비용은 각 사례마다 다르지만 즉시 중국 돈이나 남한 돈으로(약 130만원에서 그 이상) 주게 되면 반값에 올 수 있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남한에 입국 후 받는 정착금을(300만원-500만원) 주게 된다. 정착금에서 브

로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당장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지만 브로커의 상당수가 북한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입국 후 그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없다(김윤나, 2016: 48-49).

북한사람이 중국에 살다 북한사람임이 발각되면 북송당하게 되는데 보위부에서 보안부, 원성단련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굶주림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노동, 제대로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곳에서의 쪽잠 등의 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에 또다시 탈출과 탈북을 시도하게 되고 중국, 북송의 굴레가 반복되게 된다. 또한 태국에 가면 방콕 감옥에 가거나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인근의 또 다른 감옥에서 약 생활하게 된다. 순서가 있어 한 팀으로 15명씩 모아 남한에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이상 있다가 남한에 갈 수 있다. 많으면 200명 정도(여성 감옥), 적으면 50명(남성 감옥) 정도의 한 감옥에서 조로 나뉘서 생활하는데 이때 200명에 화장실은 5-6개 정도이다(김윤나, 2016: 51).

수용소 생활 기간 동안 탈북 여성들은 이유 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배설까지도 간섭받아야 한다. 밤 10시가 되면 머무는 곳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갈 수 없어 휴지통에 배설한 것을 치우려다가 맞는 일도 허다하다.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탈북 여성들이 모두 겪는 비슷한 처지라 할지라도, 먹고 입고 배설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받은 경험은 수치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상실하게 한 역할을 한다(박순성 외, 2009: 16).

2) 정부합동조사 및 하나원 생활 단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박호성 외(2005)의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500명과 심층면접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입국 초기 정부합동조사 기관의 조사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조사 및 독방생활 등의 필요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공포심을 느낀 경우는 38.5%였으며, 조사기관이 힘들었다는 응답이 26.1%에 이르고 있었다. 둘째, 독방생활 기간 동안 TV, 신문 등 매체를 접하는 일이 70-80% 내외가 불가능했고, 독방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68.3%에 이르러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사자의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경우가 25.5%에 이르렀고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사례도 4.1%로 나타났다. 넷째, 성경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남성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도 유효 응답자 중 70.9%로 나타났으며,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은 경우도 8.0%, 그러한 행동을 당한 경우도 2.1%로 나타나 부당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28.8%였는데 이 중 73.6%가 불쾌했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전 설명 없이 진행되어 더욱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호성 외, 2005: 4-5).

시설보호과정에서는 하나원 교육기간 겪었던 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그런대로 견딜만했

다는 47%, 매우 힘들었다는 10%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원 직원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도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겁주기 위해(15.3%), 분을 풀기 위해(10.2%), 습관적으로(10.2%), 이유를 알 수 없다(11.9%)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보호과정에서의 인권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적용교육기간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는 정부합동조사기관의 독방생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데 화장실이 없어 전화연락을 취해야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내용 중 반복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 하나원의 교육내용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박호성 외, 2005: 6).

이러한 연구결과는 2016년에 실시된 김윤나(2016)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과정, 국정원 및 하나원 교육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결과와는 일치되는 내용이다. 간첩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독방에 두고 기록한 것을 가지고 면담하면서 맞는지 확인하고 다시 몇 번 써내라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개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람에 따라 석달 혹은 6개월까지 걸리기도 하며 CCTV로 인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김윤나, 2016, 51-52).

뿐만 아니라 하나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수업내용을 잘 듣고 있는지 CCTV를 통해 감시받고, 잘 교육에 임하지 않으면 정착금을 깎는다고 하여 하나원의 생활이 지친 심신의 위로를 받기 보다는 빨리 나가고 싶은 곳으로 회상한다. 북한에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노동을 나가게 되고 전기가 없는 관계로 밤에 일찍 잔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이 갑자기 북한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원의 일상생활 즉 하루 종일의 교육과정과 밤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추가 자격훈련 시간 그리고 노동과 사람 관리에 익숙해져 있던 생활과 교육수혜 경험의 단절과 부재에서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교육내용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그 무게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윤나, 2016: 53).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인권침해 경험이 더하다. 국정원 심문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들이 이들을 ‘잠재적인 성매매여성으로 간주’ 하거나, 혹은 이러한 처지를 ‘동정’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며 탈북 여성들은 국정원 등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미처 생각할 여지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불법 체류자인 자신들을 받아주는 정부에 대해 ‘감사’ 하는 상황적 태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국가 기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 정서적, 사회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정부 내의 심문 기관들은 탈북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직접 알리거나 혹은 변호사 등을 통해 알리는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순성 외, 2006: 22). 하나원에서도 교육으로 인해 부모와 아이들과 분리시켜,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지게 될까봐 내내 전전공공하면서 아이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들이 교감을 이루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김윤나, 2016: 54).

3) 남한 정착지 단계

박호성 외(2005)의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은 67.6%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차별을 느끼는 경우는 50.5%, 승진차별을 느끼는 경우는 52.7%,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는 경우는 38.6%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직장생활의 차별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약 20%에 이르렀으며 학교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생활하는 경우가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도 밤늦은 연락 등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례는 20%에 이르렀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29.9%에 이르렀다(박호성 외, 2005: 5).

설문조사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조사에 응한 응답자가 31.5%나 되었으며 40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도 2.9%에 이르렀다. 설문조사 내용으로 불쾌했던 경우는 21.2%, 면접조사관의 태도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7.5%에 달하였다. 정치참여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16.2%나 되었으며 정부관계자(정부합동조사기관, 통일부 직원 및 경찰 등)로부터 말조심하라는 주의들을 받은 경우가 19.0%, 강연자격이 취소된 경우 11.7%, 정착지원금 및 생계보조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18.2%로 나타났다. 종교생활을 묻는 질문에서 72.8%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90.1%가 기독교인 것으로 조사되어 종교 선택의 편중,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호성 외, 2005: 6).

심층면접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무엇보다도 남한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생존권 보장과 연관된 과제로서 취업난의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대안학교의 설립이 제기되었으며, 사람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 기회의 확보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 가장 심한 인권침해 사례로는 조사기관과 교육기관에서 겪은 심한 말투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생활 중 남한사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욕을 듣는 경우, 학교에서 따돌림으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원인을 확인하기보다 누가 더 다쳤는가에 따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 진학문제에 있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 면에서 어렵다는 측면 등의 사례가 나타났다(박호성 외, 2005: 8).

거주지 배정 이후의 인권문제로서는 담당형사의 과잉친절과 인력부족 문제, 시차를 두고 탈북한 가족간의 거주지가 다른 부분에 대한 배려, 이웃들 중 가족을 남겨두고 탈북한 사실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은행 계좌추적 문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지만 취업 후에도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생활보조금의 지속적인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two, three job으로 형태의 임시직을 전전하는 사례 등이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언론, 집회, 결사, 여행, 종교의 자유 관련해서는 때로 선교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찾는 교회의 작은 방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거나 집회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이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호성 외, 2005: 9).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 입국하면서 인권교육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예상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 즉 인권침해 및 인권차별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들은 확인해볼 수 있어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황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바가 없었다. 201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신 박사 등에 의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국민법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한의 문화 차이로 생기는 법의식 관련 내용과 북한이탈청소년 및 성인에게 다발하는 범죄 피해 관련 내용 및 법의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범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체험형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보다는 법교육 차원에서 인권의 문제를 다뤄 직접적인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통일부의 하나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성인대상의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0시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현장체험 등의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존중(150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144시간), 정착지원제도 안내 및 정착의지 함양 교육(4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존중의 교육과정안에서 역사·문화·생활법률과 함께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통일부, 2016: 166). 아동·청소년대상의 하나들학교에서는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유치·초등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하는 통합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하나들학교에서 기초학습,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공동체 활동 등의 동화주의 정책에 입각한 교육들을 제공받고 있다(통일부, 2016: 168). 제2하나원에서는 국내 입국한 성인 남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외에 하나원을 이미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차원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인권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2015년에 이루어진 심화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 용접기능사, 중국어 취업준비과정, 미용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우리말캠프, 찾아가는 교육 등이다(통일부, 2016: 172).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첫 발을 내딛고 사회에 적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초기 정착 단계 및 거주지에서의 보호, 지원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교육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남북하나재단의 정착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상담사업을 비롯한 일자리 지원 사업, 교육청소년지원 사업, 의료건강 지원, 가족복지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교육·보호시설에서의 인권교육, 대학생 리더 육성 사업, 통일 미래리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나, 현재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집중교육과 취업·교육·의료·생계 등 개인 맞춤형 사후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9년 서울, 경기(2),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 현재 23개 센터가 운영중이다(통일부, 2016: 181). 각 지역센터마다 진행되는 사업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규전입자지원, 생활안정지원, 심리(정신건강상담) 및 치료, 진로취업지원, 사회적응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역주민교류 및 통합, 교육지원 사업 등이 전개되고 있다(서울북부하나센터 <http://www.gnnkcenter.or.kr/> 2016년 10월 30일 검색). 지역적응센터는 국고보조금 사업 뿐 아니라 지자체 공모사업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북한이탈주민 1대 1 사례관리를 통해 밀착형 사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일문화·통일교육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초기집중교육과 생활교육, 학부모 교육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 출처: 통일부(2016), 182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고용센터를 통한 직업훈련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취업역량 등을 정확히 진단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추천받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에도 인권교육 과정을 추가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통일부, 2016: 183-184). 특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여 공무원으로 재직하게 되는 경우 채용시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겠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를 통해서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발간된 탈북학생학부모 교육자료(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인권교육이 가능하다. 이 자료의 경우 교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학부모 교육도 가능하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교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수가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북한이탈주민, 아동, 청소년 인권교육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기회를 촘촘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기본문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인권교육 강사 양성을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여건 마련,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주목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권교육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은 드물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북한이탈주민 대상은 2016년 8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인권교육 분야가 특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형성 계기를 고려했을 때, 입국 직후부터 초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입국단계에서부터 인권교육의 여건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행정체계에 있어서도 교육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인권교육의 기회와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인권교육도 의미가 높다고 하겠다.

제 3 장 설문조사

I.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1.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첫째, 북한의 인권관은 남한의 인권관과 다르다. 북한의 인권관은 계급, 집단주의, 기본권 및 사회권에 중심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 인권관과 북한 특유의 사회질서와 관습을 동반한 인권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받은 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의식 형성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접근이 남한 주민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성장배경이나 인권 관련 경험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주의 체제 경험, 탈북으로 인한 이주, 남한 사회에서의 소수자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인권개념, 인권제도, 인권구제기관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권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인권문제에 대하여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근거해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사고력으로서 인권의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넷째, 우리사회에 대한 현안과 정책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다양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인권에 대한 이해 및 확장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과 및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인권 관련 경험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차별 경험, 인권교육 경험을 갖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전 인권관련경험은 인권의식에 대한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권의식이 민주적 법치국가인 남한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 경험, 즉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인권 침해 경험, 인권교육 경험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내에서 ‘인권’ 개념을 접한 계기,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과 관련한 문항을 구성하여 그들의 인권개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북한의 인권교육이 북한주민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조사한다.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및 이주를 통해 남한사회에 진입한 소수자로서 일반 국민보다 인

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활용이 필요한 존재이다. 남한에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권을 보장받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추구하는 시민으로서 인권의식 형성이 절실하다. 이때 인권의식의 형성은 인권에 대한 초기 이해와 인권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 인권 용어에 대한 접촉, 인권 수준에 대한 이해, 남한에서 사회적 소수자 또는 개별 인권 분야에서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3)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인권의식 형성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인권 침해 경험 또는 차별경험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경험한 인권 침해와 인권 차별이 얼마나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이들의 대응 방식은 어떠한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및 구제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인권의식 형성의 한 부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대응 방식을 공공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검·경 수사기관, 시민단체, 인터넷, 법률 전문가, 언론기관 제보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가운데 현재 남한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권 현안 또는 인권정책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태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권의식의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항을 고안할 때에는 2011년 인권의식 조사 설문을 활용하되 최근에 등장하는 인권 현안을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한다. 특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 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이라고 보이는 점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민인권의식조사와의 비교 검토를 위하여 문항을 일정부분 통일하였다.

(5)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인권의식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대응,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 이외에 인권증진 노력을 위한 태도가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인권교육의 자료로 삼기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의 한 요소로서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다.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인권교육은 인권의식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인권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다소 미흡하였다.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기대 등을 조사한다.

2. 설문 문항의 구성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성과는 어느 정도 축적된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정과 관련된 연구 성과도 서서히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북한 인권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관련 선행연구에서 몇 가지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조사·분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인권의식의 핵심적인 지표로 간주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및 경험,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및 평가, 인권보호가 시급한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 또는 기관,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과 정책에 대한 평가, 인권 침해 또는 차별 요인,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 인권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항목별 인권 목록이나 조사대상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의 분류체계와 인권목록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 자유권, 사회권, 차별 사유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와 더불어 남한사회에서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기평가를 토대로 인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정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북한에서의 정보(4항목)에 해당하는 북한 출생지, 북한 최종학력, 북한 직업경력, 북한조직 참여활동 여부, ② 탈북 및 남한 입국 정보(5항목)에 해당하는 탈북시기, 탈북횟수, 탈북 후 강제송환 여부, 탈북 후 체류기간, 남한 입국시기, ③ 남한 정착정보(6항목)에 해당하는 남한 주요 거주지, 남한 최종학력, 남한 혼인상태, 남한 가족구성, 남한 직업경력, 남한 소득 등을 포함하였다. 이 내용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통제변수로 고려된 적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이다.

북한에서의 정보는 인권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북한의 인권은 남한과 다른 형태로 형성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각 요인마다 인권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탈북 및 남한 입국정보는 남한 입국 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 배경,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방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남한에서의 정착 정보에 관한 요인은 남한의 인권의식과 단절된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 감정, 행동의 형성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제요인이 될 수 있다.

설문문항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지표를 고려하여 문항구성을 <표 6>과 같이 총 7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표 6> 설문 문항의 항목 구성

항목		내용
①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 (6항목) - 북한에서 인권침해 경험 (21항목)
②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인권에 대한 인지 (3항목) -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2항목)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13항목) -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12항목) -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2항목)
③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 인권 침해경험 여부 (9항목) - 인권 차별경험 여부 (12항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항목) -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 (2항목)
④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과 정책 (16항목) ·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6항목)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4항목) · 사회적 약자 영역 (6항목)
⑤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1항목) - 인권활동 참여 (9항목)
⑥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 인권교육 필요성 (1항목) - 인권교육 경험 (2항목) -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1항목)
⑦	인구사회학적 정보	- 개인 기초 정보 (3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 북한에서의 정보 (4항목): 출생지, 북한 최종학력, 북한 직업경력, 북한조직 참여활동 여부 - 탈북 및 남한 입국 정보 (5항목): 탈북시기, 탈북횟수, 탈북 후 강제송환 여부, 탈북 후 체류기간, 남한 입국시기 - 남한 정착정보 (6항목): 남한 주요 거주지, 남한 최종학력, 남한 혼인상태, 남한 가족구성, 남한 직업경력, 남한 소득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위를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침해 경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표 7> 참조).

<표 7>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설문문항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①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 (6항목)	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통일연구원 (2010)
		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2-1.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3.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4.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5. 남한 인권상황 접근 여부	자체개발
	북한에서 인권침해 경험 (21항목)	6.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8)
		7. 생명권	
		8.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9.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10.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11.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1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14. 생명권	
		15. 신체의 자유와 안전	
		16. 근로의 권리	
		17.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18. 사회적 차별	
		19. 사회적 차별	
		20. 사회적 차별	
		21. 여성의 권리	
		22. 아동의 권리	
		23. 교육권	
		24. 장애인의 권리	
		25. 평화권	
26. 평화권			

첫째,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 개념 인지 여부 및 인권교육 참여 여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접하고 이해했는지,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인권의식이 형성되는 배경과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권교육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주로 통일연구원(2010)의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북한에서 인권침해 경험에 있어서는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침해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침해 경험 조사에 있어서는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③ 사회적 차별, ④ 소수자 인권 등 네 범주로 설정하여 각 범주에서의 인권실태를 측정하였다.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 부분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범주 설정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고유영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인권실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주로 국가인권위원회(2008)의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주요 인권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항목은 다시 남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내용과 인권목록별 구체적인 인권보장 수준을 묻는 내용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우선 남한의 인권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묻는 내용에 있어서는, 인권의 인지 즉 인권 용어 및 인권 표현에 관한 접근 여부를 묻는 문항을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용하였으며, 인권상황 인지에 관한 질문을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인용하였다. 남한 인권 평가 항목은 인권 존중 여부와 국제 인권상황을 평가하기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5문항 중 2문항을 인용하여 수정·보완하여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표 8>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1)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②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1)	인권에 대한 인지 (4항목)	1.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2. 남한에서 인권 표현 취득 경로	
		3. 남한에서 인권상황 인지	국가인권위원회 (2011)
		4. 국제 인권상황 인지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1항목)	5. 남한 인권 존중 여부 평가	

남한사회 인권 현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권목록별 구체적인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측정하였다. 문항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인식,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인식,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인식으로 범위를 나누어 각각 13항목, 12항목, 2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 국내외 조사를 참고하여 주요 인권침해 대상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인식에 대한 문항은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대상을 고려하여 일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다문화사회 도래 이후 사회적 약자로 표현되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난민’을 추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난민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주라는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문항이라고 생각된다. 두 항목의 경우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포함되어 양 설문을 일치시킬 필요도 있었다. 그 결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난민, 여성, 미혼모, 아동·청소년, 노인, 북한이탈주민, 생활보호 대상자,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등 총 13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자유권 및 사회적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인식에 대한 문항은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사회권에 대한 요구도 높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과 남북관계에서 비롯한 평화권이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였고,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3문항을 추가하여 총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의견 진술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유, 주거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환경권, 평화권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존중도 인식과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인식 항목에 있어서는 국가인권위원회(2011) 연구에서는 4점 척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

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 수행 중인 국민인권 의식 조사와 척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하였다.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인식에 대한 문항은 침해 주체와 차별 요인 인식 각각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9>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2)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②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인식 (13항목)	1-1.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2011)
		1-2. 비정규직 노동자	
		1-3. 외국인 노동자	
		1-4. 결혼이주여성	
		1-5.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1-6. 난민	
		1-7. 여성	국가인권위원회 (2011)
		1-8. 미혼모	
		1-9. 아동·청소년	
		1-10. 노인	
		1-11. 북한이탈주민	
		1-12. 생활보호대상자, 극빈자	
		1-13. 경찰 수사 중의 피의자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인식 (12항목)	2-1. 신체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2011)
		2-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2-3. 의견 진술과 표현의 자유	
		2-4. 집회 결사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 (2011)
		2-5. 개인정보의 보호	
		2-6. 주거권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2-7. 사회보장권	
		2-8. 노동권	국가인권위원회 (2011)
		2-9. 건강권	
		2-10. 교육권	
		2-11. 환경권	자체 개발
		2-12. 평화권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2문항)	3.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2011)
4.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3)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 인권침해와 차별경험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본인, 가족의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개발하였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의 측정도구를 활용하되, 북한이탈주민과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은 삭제 및 수정·보완하였다. 인권 침해에 대한 경험 여부는 기존 12문항에서 9문항으로 재구성하였고, 인권 차별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은 기존 17문항에서 12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기존 문항은 본인경험, 배우자경험, 가족경험, 무경험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이 소수의 가구 형태인 점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묻는 본인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을 묻는 배우자 및 가족경험, 무경험으로 구성된 3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인권침해 및 차별한 집단에 대한 측정도구를 추가하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한 집단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인권의 옳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시 인권 구제기관 및 절차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응 방식이 어떠한지를 질문을 하였다. 대응 방식은 국가 및 관련단체로부터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제절차 및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현상을 파악하고자 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인권적 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인권행동의사를 확인하고자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와 집단적 차원의 행동의사에 따른 대처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10>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설문문항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③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인권침해 경험 여부 (13항목)	1-1. 불법 연행, 구금, 심문	국가인권위원회 (2011)
		1-2. 의견 표현의 자유 제한	
		1-3. 사생활 보호 제한	
		1-4. 신념, 양심, 종교 자유 제한	
		1-5. 집회, 시위 자유 제한	
		1-6. 집회, 결사 자유 제한	
		1-7. 사회보장 침해	
		1-8. 노동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6)
		1-9. 건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차별 경험 여부 (12항목)	2-1.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인한 차별	자체개발
		2-2. 성별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11)
		2-3. 임신, 출산으로 인한 차별	
		2-4. 성희롱, 성추행에 의한 차별	
		2-5. 종교, 사상, 정치적 입장으로 인한 차별	
		2-6. 장애로 인한 차별	
		2-7. 나이로 인한 차별	
		2-8. 경제적 지위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2-9.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11)
		2-10. 학벌, 학력으로 인한 차별	
		2-11. 신체조건으로 인한 차별	
		2-12. 혼인상황으로 인한 차별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1항목)	3.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시 대응방안 (2항목)	4.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자들의 대처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1)	
	5.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과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질문하는 문항을 고안할 때 기본적으로 NAP 및 인권지수 연구와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NAP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현안이나 쟁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설문 문항으로 개발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및 정책은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와 교차검증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를 조사하여, 인권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28문항 중 8문항을,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20문항 중 7문항을 적용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에 대한 인권 현안 및 정책을 묻는 문항을 신설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유지된 문항은 사형제도, 피의자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 시위와 집회의 자유 보장, 저소득층 사회복지 확대, 이주민 문화권 보장, 성소수자 인정 등이다. 2016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문항(초안)에서 자문을 통해 반영한 문항은 통신기록 수집, 비정규직, 최저임금, 여성 배려 정책, 외국인 노동자, 난민, 아동 체벌에 관한 것이다.

질문지의 형식은 도식평정 4점 척도로 각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11>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문항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과 정책 (16항목)	1. 사형제도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2011)
			2.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공개	
			3.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4. 국가보안법 유지	국가인권위원회 (2011)
			5.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	
			6.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	
			7. 비정규 임금 자동지급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8.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높음	
			9.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 신중	국가인권위원회 (2011)
			10.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11. 여성배려정책 불필요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12.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불필요	
			13. 난민 허용 불필요	
			14.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	국가인권위원회 (2011)
			15. 아동 및 청소년 체벌 허용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16. 군사적 대치 평화권 위반	자체 개발

(5)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 행동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 방안과 인권증진 활동 등과 관련된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 통해 인권문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와 적극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옹호하는 행동의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은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용하였으며, 인권참여활동은 2011 국민의식 실태조사에서 인용하였다. 각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및 심리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12>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설문문항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⑤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1항목)	1.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효과적 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인권활동 참여 경험 (9항목)	1-1. 조언, 상담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1-2. 자원봉사활동	국가인권위원회 (2011)
		1-3. 단체지원,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1-4. 종교단체 지원	
		1-5. 인권단체 활동 참여	
		1-6. 인터넷 인권문제 글쓰기	
		1-7. 청원/서명운동 참여	
		1-8. 인권 캠페인/거리 시위 참여	
		1-9. 기타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내용과 질문하는 방식을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따라서 인권교육 필요성의 정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도 포함 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하였다. 특히 밀집거주지역 중심에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인권교육 필요성과 인권교육의 경험에 관한 문항은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묻는 문항은 2016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용하였으며, 조사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4점 척도로 조정하였다.

<표 13>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설문문항

항목	내용	설문문항	출처
⑥	인권교육 필요성 (1항목)	1. 인권교육의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교육 경험 (2항목)	2. 인권교육 경험 여부	
		2-1. 인권교육 받은 기관	
		2-2. 인권교육 받을 기관	
	인권조례 제정 (1항목)	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국가인권위원회 (2016) 반영

II.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 표집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인권교육경험과 인권침해를 통한 인권의식 형성 여부와 남한사회에서의 인권의식에 대한 제한된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집을 결정하기 위해 현지상황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모집단의 크기, 모집단의 공간적 분포, 연구대상자의 참여동기, 연구대상자의 자료제공 능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검토한 후, 설문조사 표본은 남한 거주지, 성, 연령을 고려하여 선택된 530명을 표본으로 산출하였다.

거주지를 고려한 표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였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충청, 경상, 전라 지역 등)의 표본은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 대표하도록 수도권 75%, 비수도권 25%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성별을 고려한 표집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표본은 북한이탈주민의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남성 25%, 여성 75%의 비율로 선정하였다. 북한 거주지 역시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분석 단계에서만 고려되었다.

2. 자료수집방법

설문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연령대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경험과 남한 인권의식 형성 및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어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는 인권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문제 관련 전문가 3명의 자문회의를 통해 재수정 하였다. 최종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한 바와 같이 설문문항은 81문항으로 세부문항까지 1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지 배포와 수거가 이루어졌다. 본조사의 조사법은 직장 또는 가정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한 다음 나중에 설문지를 회수하는 배포조사법으로 수행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요구로 인해 수많은 설문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률을 높여 효과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설문 방식보다는 방문 및 직접 배포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설문지는 총 530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이중 50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선별 과정을 거쳐 23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480부만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제거된 23부의 설문지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설문지로서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 전부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 모든 문항을 한 번호로 동일하게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단, 모두 응답하였으나 간혹 한 두 개의 문항에서 미 응답한 경우는 제거하지 않고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결측데이터는 표본을 전부 삭제하는 대신 결측치를 평

균값으로 대체하는 평균대체법(mean imputation)을 사용하여 전체 표본의 크기는 480부로 동일하게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 통계처리 가능 설문지 비율

구분	회수 설문지	결측 설문지	통계처리 설문지
설문지(부)	503	23	480
비율(%)	100	4.5	95.4

3. 자료분석방법

설문지의 통계적 자료처리는 표본에 대한 자료수집 후 유효자료를 사전 선별하여 자료를 코딩하였고 자료를 검증하였다. 통계기법은 SPSS PASW 20.0을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응답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의 특성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추출된 표본이 대표성을 갖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때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성, 연령, 남한 거주지, 남한 거주기간, 남한 학력, 남한 직업, 남한 가족구성, 남한 소득, 북한 거주지, 북한 학력, 북한 직업, 탈북시기, 제3국 체류기간으로 구분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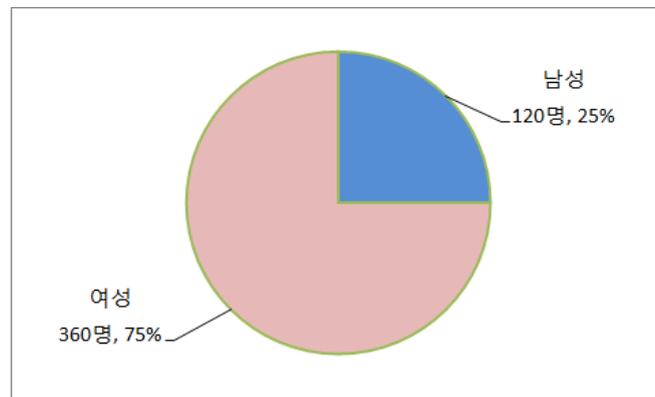
둘째, 측정변수 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 test)을 통해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교차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갖고 있는 가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측정변수에 속한 빈도수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속한 빈도수를 함께 교차로 분석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독립성과 관련성과의 존재여부를 확인 하였다.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120명(25.0%), 여성 360명(75.0%)으로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이 연구의 모집단인 북한이탈주민의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2016년 8월 현재 1:3인 점을 고려하여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설문 대상을 표집 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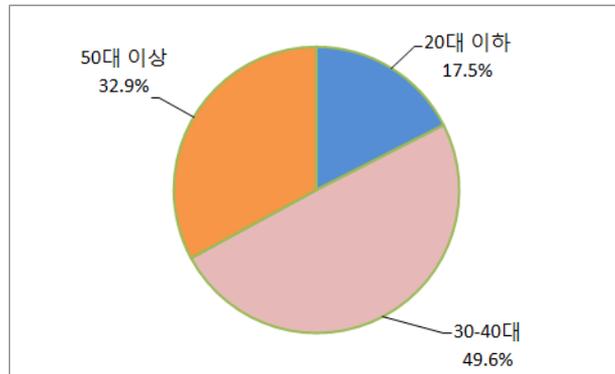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의 성별 (N=480)

(2) 연령

연구의 응답자의 연령 구성은 20대 이하가 17.5%, 30-40대가 49.6%, 50대 이상이 32.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34.2%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5> 참조).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22.7%, 20대 15.6%, 30대 15.4%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15> 응답자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20대 이하	20대 미만	9	1.9	17.5
	20대	75	15.6	
30-40대	30대	74	15.4	49.6
	40대	164	34.2	
50대 이상	50대	109	22.7	32.9
	60대 이상	49	10.2	
전체		4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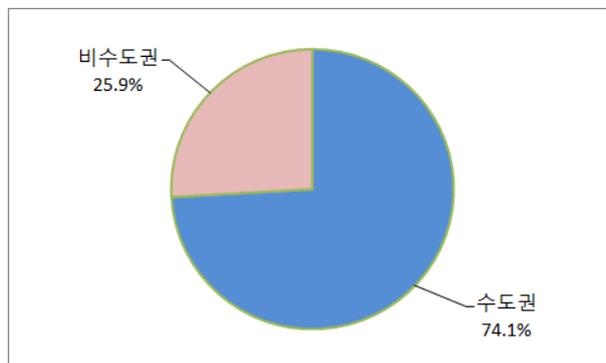
[그림 5] 응답자의 연령 (N=480)

(3) 거주지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그 다음으로 경기 20.6%, 인천 16.0%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거주비율이 전체 74.1%를 차지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체 25.9%로 경상권 12.1%, 충청권 9.4%, 전라권 4.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선정할 때 2015년 8월 현재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별 분포 현황을 고려하였다.

<표 16> 응답자의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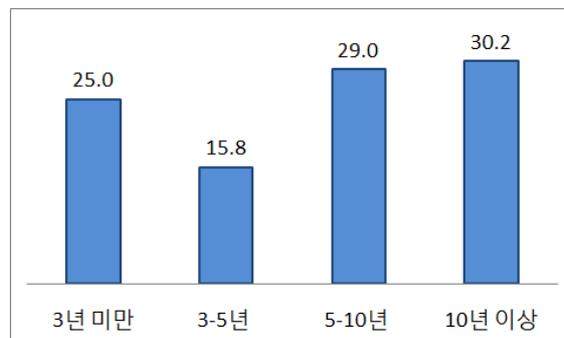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수도권	서울	180	37.5
	인천	77	16.0
	경기	99	20.6
비수도권	충청권	45	9.4
	경상권	58	12.1
	전라권	21	4.4
전체	480	100	



[그림 6] 응답자의 거주지 (N=480)

(4) 남한 내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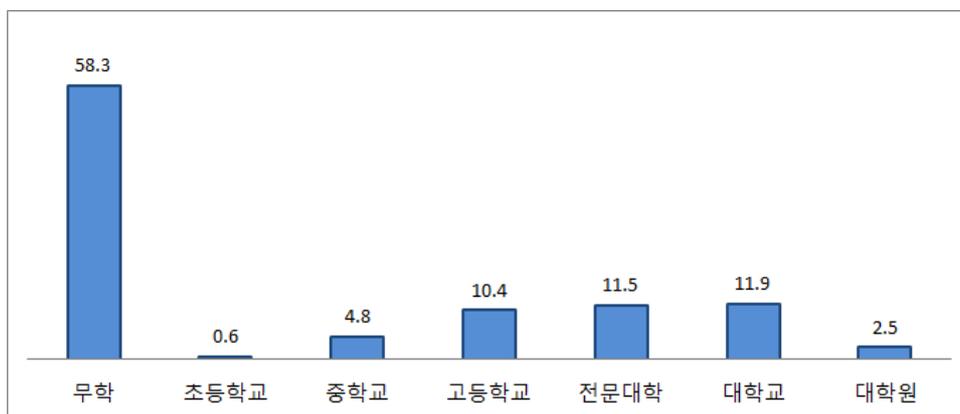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기간은 남한으로의 입국년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응답자 중 남한 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145명(3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참조). 다음으로는 입국 5년-10년인 경우가 139명(29.0%), 입국 3년 미만인 경우가 120명(25.0%), 입국 3년-5년인 경우가 76명(15.8%)로 각각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응답자 중 5년 이상 남한 생활을 경험한 응답자가 약 60% (총284명, 59.2%)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응답자의 남한 내 거주기간 (N=480)

(5)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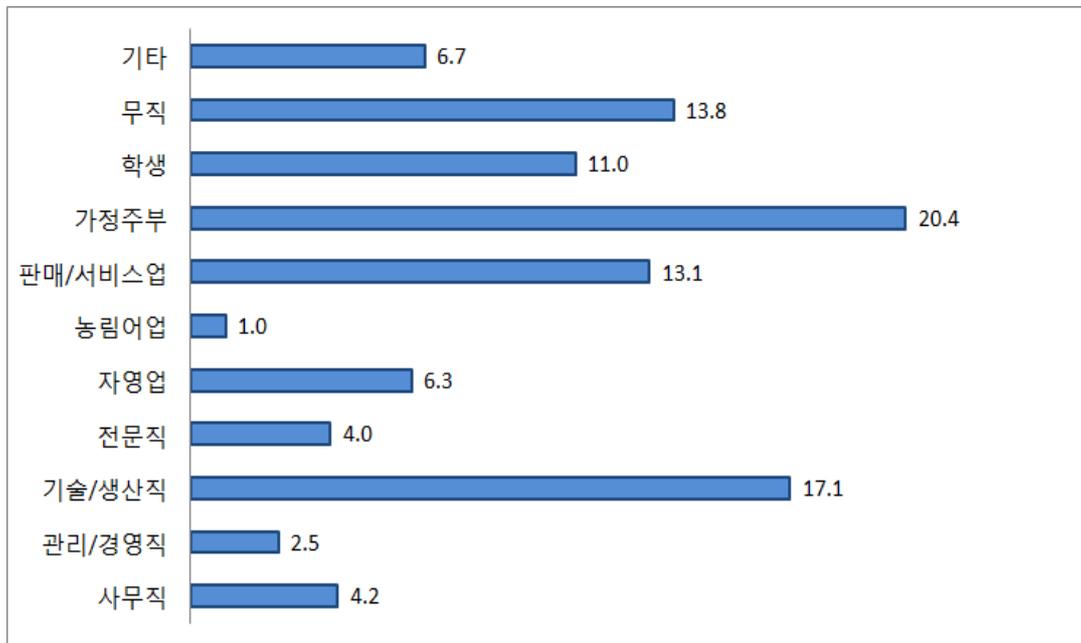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을 조사한 결과 ‘남한 내 무학’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이어서 대학교 졸업(11.9%), 전문대학 졸업(11.5%), 고등학교 졸업(10.4%), 중학교 졸업(4.8%), 대학원 졸업(2.5%), 초등학교 졸업(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참조). 즉,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입국한 이후 41.7%만 학력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응답자의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N=480)

(6) 남한 내 직업

남한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한 입국 후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주로 종사한 직업으로는 가정주부가 2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그 다음으로는 기술/생산직(17.1%), 판매/서비스업(13.1%), 학생(11.0%), 자영업(6.3%) 순이었다. 반면 하위 직업군으로 농림어업(1.0%), 관리/경영직(2.5%), 전문직(4.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응답자의 남한 내 직업 (N=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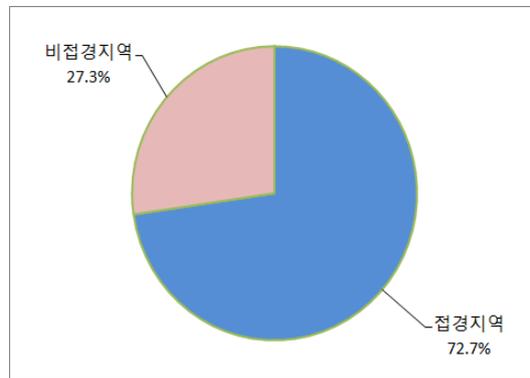
(7) 재북 출신지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함경북도가 247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강도 75명(15.6%), 함경남도 70명(14.6%), 평안남도 31명(6.5%)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표 17> 참조), 재북 출신지가 접경지역인 경우는 72.7%, 비접경지역인 경우는 27.3%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북 출신지의 분포는 2016년 8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출신지 분포 현황과 매우 유사하다⁶⁾.

6)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출신지별 분포 결과 1순위 함경북도, 2순위 양강도, 3순위, 함경남도, 4순위 평안남도 순이다(2016년 8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표 17>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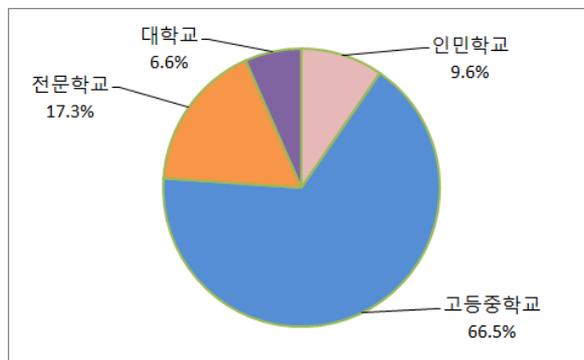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접경지역	함경북도	247	51.5
	자강도	17	3.5
	양강도	75	15.6
	평안북도	10	2.1
비접경지역	함경남도	70	14.6
	평안남도	31	6.5
	황해북도	7	1.5
	황해남도	7	1.5
	강원도	9	1.9
	평양	7	1.5
전체		480	100.0



[그림 10] 응답자의 재북 출신지 (N=480)

(8) 재북 학력

응답자의 재북 학력을 분석해 본 결과, 고등중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6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학교 졸업 17.3%, 대학교 졸업과 인민학교 졸업이 각각 6.7%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응답자 중 90.4%가 고등중학교 졸업(중퇴 포함) 이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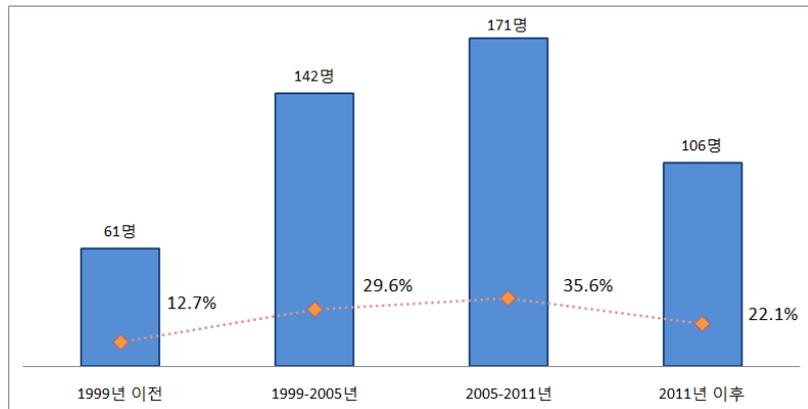
[그림 11] 응답자의 재북 학력 (N=480)

(9) 탈북연도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탈북(도강)한 연도를 시기별로 분류하여 확인하였다. 응답자 중 2005년-2010년 사이에 탈북한 경우가 171명(35.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1999년-2004년 사이에 탈북한 경우가 142명(29.6%), 2011년 이후 탈북한 경우가 106명(22.1%)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18> 참조). 분석 결과 2005년 이후 북한을 마지막으로 탈북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57.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8> 응답자의 탈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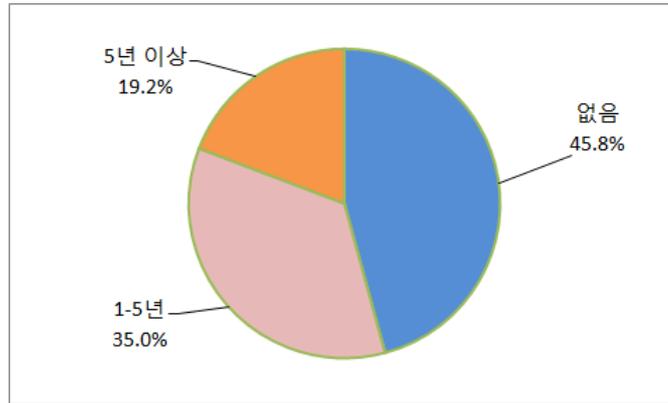
탈북연도	빈도(명)	비율(%)
1999년 이전	61	12.7
1999-2004년	142	29.6
2005-2010년	171	35.6
2011년 이후	106	22.1
전체	480	100



[그림 12] 응답자의 탈북연도 (N=480)

(10) 제3국 경유기간

응답자 중 제3국 거주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은 1-2년 미만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5년 미만 17.3%, 5-10년 미만 14.0% , 10년 이상 5.2%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제3국에서 거주한 경험 없이 ‘직행’ 으로 남한에 입국하였다는 응답자는 45.8%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응답자의 제3국 경유기간 (N=480)

(11) 남한에서 가족 구성

남한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분석한 결과, 2-3인 가구가 51.1%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비율은 38.3%이며, 4인 이상 가구는 10.6%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19> 참조).

<표 19> 응답자의 남한 가족 구성

남한 가족 구성	빈도(명)	비율(%)
1인	184	38.3
2-3인	245	51.1
4인 이상	51	10.6
전체	480	100

(12) 가계 경제소득

한 가구가 벌어들이는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만원 미만 소득자가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36.9%, 200만원 이상 소득자는 13.3%순으로 각각 나타났다(<표 20> 참조).

<표 20> 응답자의 가계 경제소득

가계 경제소득	빈도(명)	비율(%)
100만원 미만	239	49.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7	36.9
200만원 이상	64	13.3
전체	4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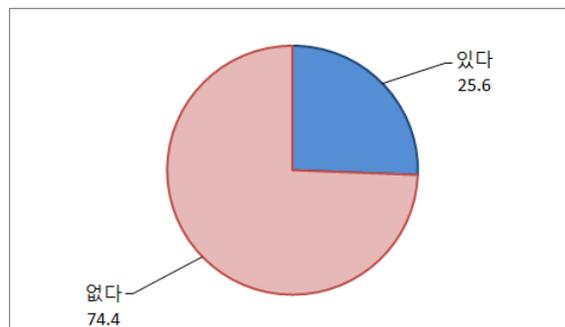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응답자들의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을 알아보고자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 라는 응답이 25.6%, ‘들어본 적이 없다’ 라는 응답이 74.4%로 나타나, ‘인권’ 이라는 용어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표 21> 참조).

<표 2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북한에서 ‘인권’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빈도(명)	있다(%)	없다(%)
480	25.6	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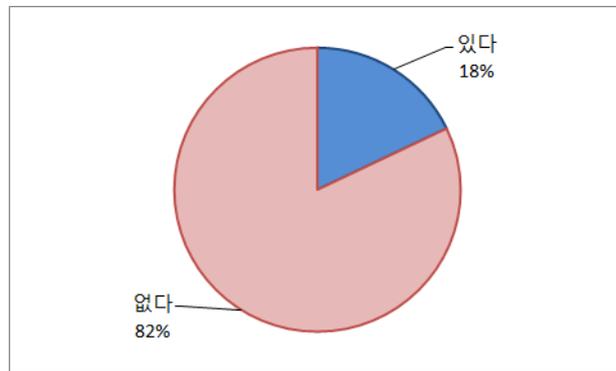
[그림 14]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응답자들이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1%가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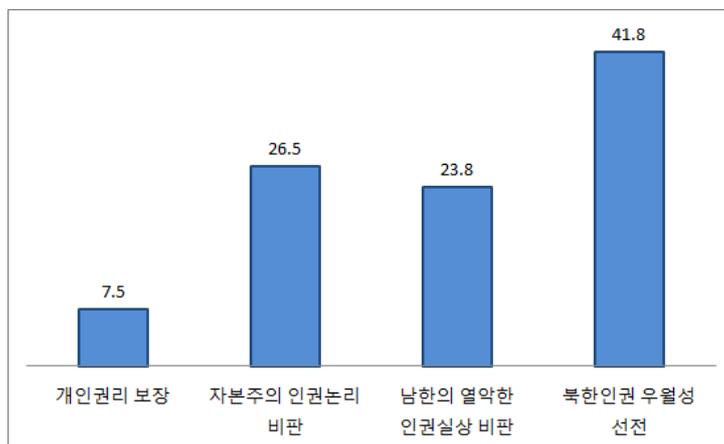
<표 2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빈도(명)	있다(%)	없다(%)
480	17.9	82.1



[그림 15]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인권의 우월성 선전에 대한 내용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본주의 인권논리 비판이 26.9%, 남한의 열악한 인권실상에 대한 비판이 23.8%, 개인 권리 보장이 7.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그림14] 참조).



[그림 16]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다중응답자 N=613)

(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인지수준과 북한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 간의 상관성은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 이란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60% 이상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권’ 이란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대다수(96.6%)가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표 2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인권교육 경험 여부 인권 개념 인지수준(인권 용어를 들어본 경험)	있음	없음	X2	유의도
있음(N=123)	60.2%	39.8%	200.695	.000***
없음(N=357)	3.4%	96.6%		

* $p < .05$, ** $p < .01$, *** $p < .001$

(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응답자 중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136명),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7%(344명)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과 ‘우리식 인권’ 이 혼용되어 사용되는지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와 인권 개념 인지수준 간의 상관성은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이란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중 64.2%가 ‘우리식 인권’ 이란 용어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은 경우에도 ‘우리식 인권’ 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표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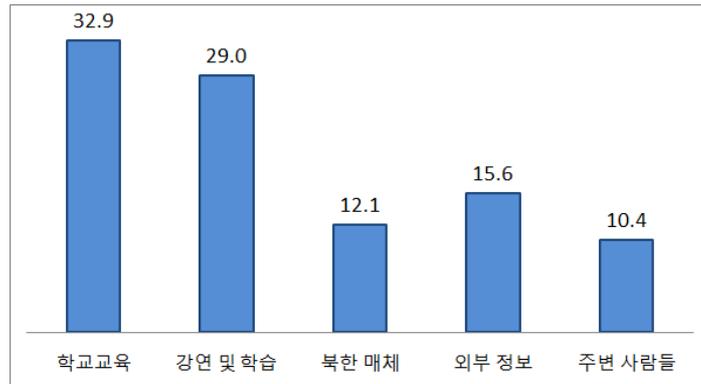
<표 2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과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의 상관성

인권 개념 인지수준(인권 용어를 들어본 경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있음	없음	X2	유의도
있음(N=136)	64.2%	35.8%	104.934	.000***
없음(N=344)	16.0%	84.0%		

* $p < .05$, ** $p < .01$, *** $p < .001$

(5)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북한에서 개인의 인권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학교교육’ 35.9%, ‘강연 및 학습’ 29.0%, ‘외부정보’ 15.6%, ‘북한매체’ 12.1%, ‘주변 사람들’ 10.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N=480)

(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에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공개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죄형법정주의, 신분차별 및 연좌제 등에 주목하여 북한의 자유권 실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표 25> 참조).

‘공개처형을 직접 목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64.0%가 직접 공개처형을 목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6.0%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고문 혹은 구타를 경험여부’를 확인한 결과 고문 혹은 구타를 당한 비율이 26.0%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74.0%로 나타났다.

법치에 대한 인식은 관련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범법자에 대한 재판절차에 대한 인식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7.9%로 나타났다.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인민반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비율이 85.4%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비율이 14.6%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85.6%나 되었다.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였으며, 적대계층(과거 지주, 친일분자 가족, 월남가족자, 해외교포 가족 등)에 따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7.3%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이 저지른 죄로 연좌제를 적용받아 사회적 차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8.7%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 탄압에 대한 직간접 경험을 조사한 결과 탄압 경험이 22.3%로 나타났다.

체제에 대한 불만 표출한 경험에 대해 19.8% 비율만이 ‘있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험에 대해서 84.4%의 비율이 ‘없다’ 라고, 비공식적, 불법적 출판물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78.7%의 비율이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25>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정치적 권리

(N=480, 단위: %)

인권침해 경험 내용		있다	없다
생명권	공개처형 목격 경험 여부	64.0	36.0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및 가혹행위 경험 여부	26.0	74.0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범법자에 대한 재판절차 인지 여부	37.9	62.1
사생활 비밀과 보호	인민반 제도의 운영 여부	85.4	14.6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	14.4	85.6
사회적 차별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경험 여부	35.0	65.0
	월남자 및 해외교포 가족이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57.3	42.7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피해 경험 여부	28.7	71.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 경험 여부	22.3	77.7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정세 비판 경험	19.8	80.2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 취득	15.6	84.4
	비공식, 불법적 출판물 목격 경험	21.3	78.7

(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노동권, 사회보장제도, 의무교육 시행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직장근무 상황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3%에 이르렀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사라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가 높아졌으며,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여도 노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78.7%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 헌법과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제도적으로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과는 반대의 양상으로, 현재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인다.

의무교육의 실질적 이행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이 47.7%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하였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무상의무교육체제가 무너져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있을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목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66.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북한에서 먹는 문제가 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1995년 식량위기로 촉발된 식량난과 에너지, 원자재, 외화 등 경제난이 결합하여 만성적인 식량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거주 당시 평화권에 대한 인식 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있을 당시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답한 경우가 31.7%, 없다고 답한 경우가 68.3%였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의 군사연습이 평화로운 생활, 윤택한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30.8%, 없다고 69.2%로 나타났다.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평화권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표 2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480, 단위: %)

인권침해 경험 내용		있다	없다
근로의 권리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	16.7	83.3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제도 이행 여부	21.3	78.7
교육권	의무교육 이행 여부	52.3	47.7
생존권	기아와 아사 목격 경험	66.3	33.7
평화에 대한 권리	전체주의 구호에 대한 자유 침해	31.7	68.3
	군사연습에 대한 자유로운 삶 장애 여부	30.8	69.2

(8)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는 사회공동체를 지배하는 법적 지위에 비해 불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는 지위에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여성, 아동, 장애인 권리와 평화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여성의 차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질문하였는데, 77.1%의 비율이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 있을 당시 아동의 영양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응답자 중 93.3%의 비율이 아동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대다수의 아동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자 중 89% 비율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답 하였다. 북한은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를 구분한 장애인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2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N=480, 단위: %)

인권침해 경험 내용		있다	없다
여성의 권리	남녀평등 보장 여부	22.9	77.1
아동의 권리	아동 영양 상태 여부	6.7	93.3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배려 여부	11.0	89.0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1) 남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

남한에 입국한 이후 인권의식의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남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주 듣는지를 질문하였다. 남한에 입국해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자주 듣는다’ (거의 매우+비교적)는 응답이 54.6%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한 내 거주기간, 재북학력,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소득 수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한 내 거주기간별로는 3년 미만 44.2%, 3-5년 51.3%, 5-10년 56.8%, 10년 이상 62.8%가 ‘자주 듣는다’ (거의+비교적)고 응답하여 거주기간이 길수록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북학력별로는 인민학교 졸업자 47.8%, 고등중학교 졸업자 50.7%, 전문학교 졸업자 63.8%, 대학교 졸업자 78.1%가 ‘자주 듣는다’ (거의+비교적)고 응답하여 재북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 51.9%, 100-200만원 미만 52.5%, 200만원 이상 70.3%가 ‘자주 듣는다’ (거의+비교적)고 응답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별로는 ‘자주 듣는다’ (거의 매우+비교적)는 응답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64.2%)가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51.2%)에 비해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68.6%)에 경험이 없는 경우(43.7%)보다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남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구분		빈도 (명)	거의 매일 듣는다 (%)	비교적 자주 듣는다 (%)	가끔씩 듣는다 (%)	거의 듣지 못한다 (%)
전체		480	10.0	44.6	39.8	5.6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6.7	37.5	42.5	13.3
	3-5년	76	9.2	42.1	44.7	3.9
	5-10년	139	8.6	48.2	40.3	2.9
	10년 이상	145	14.5	48.3	34.5	2.8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8.7	39.1	39.1	13.0
	고등중학교	319	10.3	40.4	43.9	5.3
	전문학교	83	8.4	55.4	33.7	2.4
	대학교	32	12.5	65.6	15.6	6.2
탈북 횟수	1회	347	7.8	47.0	37.5	7.8
	2회 이상	133	15.8	38.3	45.9	0.0
강제 송환	있다	120	13.3	44.2	42.5	0.0
	없다	360	8.9	44.7	38.9	7.5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14.5	43.2	34.5	7.7
	1-5년	168	6.5	49.4	41.1	3.0
	5년 이상	92	5.4	39.1	50.0	5.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8.4	43.5	40.2	7.9
	100-200	177	9.6	42.9	43.5	4.0
	200만원 이상	64	17.2	53.1	28.1	1.6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12.2	52.0	35.8	0.0
	없다	357	9.2	42.0	41.2	7.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13.8	54.8	30.0	1.4
	없다	270	7.0	36.7	47.4	8.9

인권이라는 표현을 알게 된 방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TV매체의 뉴스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비율이 63.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문 및 서적을 통해 접한 비율이 16.0%로 그 뒤를 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거주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권이라는 표현을 알게 된 경로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TV 매체의 경우 연령별로 50대 이상 70.9%, 30-40대 61.8%, 20대 이하 52.4%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TV 매체를 통해 인권 표현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및 서적을 통해 인권이라는 표현을 알게 된 경우는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11.8%)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28.2%)의 경우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9> 남한에서 인권 표현 취득 경로

구분	빈도 (명)	TV (%)	신문 및 서적 (%)	인터넷 (%)	정규 수업 (%)	강연 수 (%)	대화, 일상 생활 (%)	기타 (%)	
전체	480	63.1	16.0	5.6	1.5	6.3	6.5	1.0	
연령	20대 이하	84	52.4	16.7	10.7	6.0	6.0	7.1	1.2
	30-40대	238	61.8	17.6	4.6	0.8	5.9	8	1.3
	50대 이상	158	70.9	13.3	4.4	0.0	7.0	3.8	0.6
거주지	수도권	356	66.0	11.8	6.2	1.4	6.7	6.5	1.4
	비수도권	124	54.8	28.2	4.0	1.6	4.8	6.5	0.0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67.5	12.2	6.5	0.8	8.9	4.1	0.0
	없다	357	61.6	17.4	5.3	1.7	5.3	7.3	1.4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67.1	11.9	4.3	1.9	8.1	6.2	0.5
	없다	270	60.0	19.3	6.7	1.1	4.8	6.7	1.5

남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 (매우+조금)는 응답 비율이 70.2%로 인권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한 내 거주기간, 재북 출신지, 강제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남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한 내 거주기간별로는 ‘알고 있다’ (매우+조금)고 응답한 비율이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54.2%, 3-5년 미만 73.7%, 5-10년 미만 72.7%, 10년 이상 79.3%로 나타나, 남한 내 거주 기간이 길수록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 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52.4%, 부정적 답변을 한 비율이 47.6%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알고 있다’ 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70.2%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높은 편임을 볼 수 있다.

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알고 있다’ (매우+조금)는 응답이 접경지역 출신의 경우 71%, 비접경지역 출신의 경우 67.9%로 나타나 접경지역 출신이 비접경지역 출신에 비해 남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송환 경험 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매우+조금)는 응답이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 79.1%, 없는 경우 67.2%로 나타나, 강제 송환경험이 있는 경우에 강제 송환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별로는 가계 경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 개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알고 있다’ 는 응답이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82.4%,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60.7%로 나타나,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남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남한에서 인권상황 인지

구분		빈도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	조금 알고 있다 (%)	잘 모르고 있다 (%)	전혀 모르고 있다 (%)
전체		480	9.6	60.6	26.0	3.8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6.7	47.5	35.0	10.8
	3-5년	76	5.3	68.4	23.7	2.6
	5-10년	139	13.7	59.0	26.6	0.7
	10년 이상	145	10.3	69.0	19.3	1.4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11.7	59.3	25.8	3.2
	비접경지역	131	3.8	64.1	26.7	5.3
강제 송환	있다	120	15.8	63.3	20.8	0.0
	없다	360	7.5	59.7	27.8	5.0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0.0	59.0	24.7	6.3
	100-200	177	6.8	61.6	29.9	1.7
	200만원 이상	64	15.6	64.1	20.3	0.0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13.0	62.6	24.4	0.0
	없다	357	8.4	59.9	26.6	5.0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11.4	71.0	17.6	0.0
	없다	270	8.1	52.6	32.6	6.7

국내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0%가 넘었지만,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매우+조금)’는 응답은 50.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 재북 학력,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 인권 개념 인지수준, 남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알고 있다’ (매우+조금)는 응답이 수도권 거주자(45.2%)에 비해 비수도권 거주자(65.3%)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재북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2회 이상인 경우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62.8%)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40.7%)에 비해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1> 국제 인권상황 인지

구분		빈도 (명)	매우 잘 알고 있다 (%)	조금 알고 있다 (%)	잘 모르고 있다 (%)	전혀 모르고 있다 (%)
전체		480	2.9	47.5	44.6	5.0
거주지	수도권	356	3.1	42.1	48.9	5.9
	비수도권	124	2.4	62.9	32.3	2.4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0.0	30.4	63.0	6.5
	고등중학교	319	3.1	45.8	47.0	4.1
	전문학교	83	2.4	56.6	33.7	7.2
	대학교	32	6.2	65.6	21.9	6.2
탈북 횟수	1회	347	2.3	46.4	44.7	6.6
	2회 이상	133	4.5	50.4	44.4	0.8
강제 송환	있다	120	3.3	55.0	40.8	0.8
	없다	360	2.8	45.0	45.8	6.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2.5	44.8	45.6	7.1
	100-200	177	0.6	49.7	48.6	1.1
	200만원 이상	64	10.9	51.6	29.7	7.8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4.1	50.4	44.7	0.8
	없다	357	2.5	46.5	44.5	6.4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5.2	57.6	33.3	3.8
	없다	270	1.1	39.6	53.3	5.9

(2) 남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남한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된다’ (매우+다소)는 긍정적인 평가가 77.7%, ‘존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22.3%로서 남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적 편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거주지, 재북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 횟수, 강제 송환경험 여부, 제3국 경유기간, 남한에서 가족구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80.6%)가 비수도권 거주자(69.4%)에 비해 남한에서 인권이 ‘존중된다’ (매우+다소)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접경지역 출신자(80.8%)가 비접경지역 출신자(69.5%)에 비해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재북 학력별로는 인민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2회 이상(69.2%)인 경우보다 1회(81%)인 경우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강제 송환경험이 없는 경우(79.5%)가 있는 경우(72.5%)에 비해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3국 경유기간별로는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없는 경우 82.7%, 1-5년 미만 75%, 5년 이상 70.6%로 나타나 제3국 경유기간이 짧을수록 남한에서 인권이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는 가족구성원 수가 2-3인인 경우에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2> 남한 인권 존중 여부 평가

구분		빈도 (명)	매우 존중 (%)	다소 존중 (%)	별로 존중 안됨 (%)	매우 존중 안됨 (%)
전체		480	13.3	64.4	21.3	1.0
거주지	수도권	356	15.7	64.9	18.3	1.1
	비수도권	124	6.5	62.9	29.8	0.8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15.8	65.0	18.6	0.6
	비접경지역	131	6.9	62.6	28.2	2.3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80.4	17.4	0.0
	고등중학교	319	14.1	61.4	23.8	0.6
	전문학교	83	15.7	67.5	13.3	3.6
	대학교	32	15.6	62.5	21.9	0.0
탈북 횟수	1회	347	12.4	68.6	17.6	1.4
	2회 이상	133	15.8	53.4	30.8	0.0
강제 송환	있다	120	18.3	54.2	27.5	0.0
	없다	360	11.7	67.8	19.2	1.4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18.2	64.5	15.9	1.4
	1-5년	168	6.5	68.5	24.4	0.6
	5년 이상	92	14.1	56.5	28.3	1.1
남한 가족구성	1인	184	18.5	56.5	23.4	1.6
	2-3인	245	9.4	71.4	18.8	0.4
	4인 이상	51	13.7	58.8	25.5	2.0

8)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인권이 ‘존중된다’는 평가는 39.6%, ‘보통이다’는 38.6%로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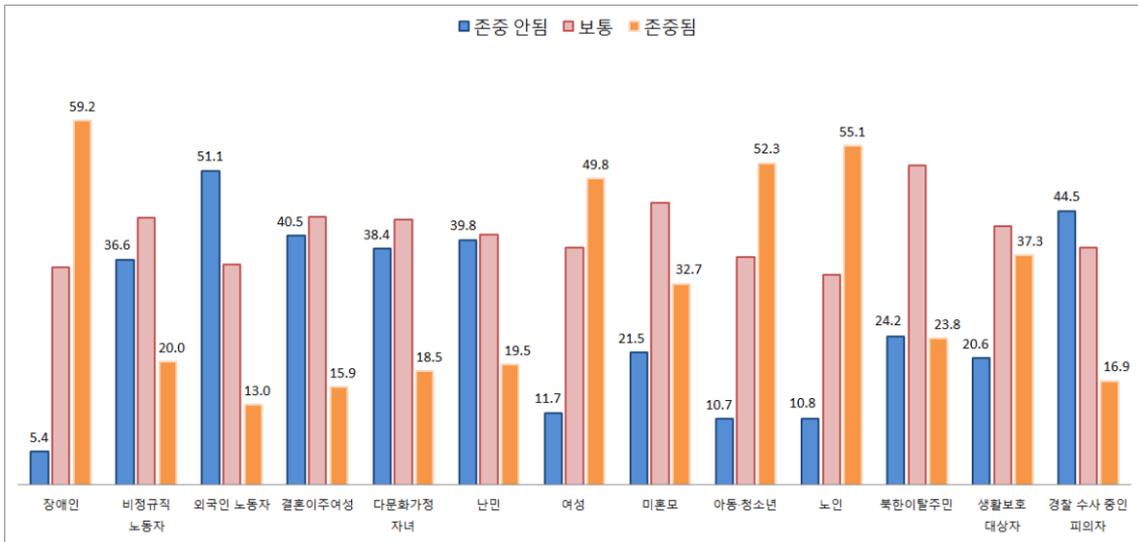
(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남한사회에서 각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인권이 ‘존중 된다’ (매우+다소)고 보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장애인 > 노인 > 아동·청소년 > 여성 > 생활보호 대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은 ‘존중 된다’ 는 응답이 ‘보통이다’ 또는 ‘존중 안 된다’ 응답보다 많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들과 인권존중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 결혼이주여성 > 난민 > 다문화가정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수자이기도 하지만 이주민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와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존중 안 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1%와 44.5%로 ‘존중된다’ 와 ‘보통이다’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응답자가 자신들이 속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 의 비율이 52%로 가장 높아 다소 중립적인 응답을 보였다.

<표 3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존중도			보통 (%)	존중도			평균
	존중됨 (%)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존중됨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장애인	5.4	0.6	4.8	35.4	59.2	39.0	20.2	3.73
비정규직 노동자	36.6	3.1	33.5	43.3	20.0	18.3	1.7	2.82
외국인 노동자	51.1	6.5	44.6	36.0	13.0	11.5	1.5	2.57
결혼이주여성	40.5	4.0	36.5	43.8	15.9	14.6	1.3	2.73
다문화가정 자녀	38.4	4.0	34.4	43.1	18.5	15.8	2.7	2.79
난민	39.8	4.0	35.8	40.6	19.5	15.0	4.5	2.80
여성	11.7	1.7	10.0	38.5	49.8	33.1	16.7	3.53
미혼모	21.5	2.5	19.0	45.8	32.7	23.3	9.4	3.18
아동·청소년	10.7	1.7	9.0	37.1	52.3	33.1	19.2	3.59
노인	10.8	1.0	9.8	34.0	55.1	33.2	21.9	3.65
북한이탈주민	24.2	5.4	18.8	52.1	23.8	17.1	6.7	3.01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	20.6	4.6	16.0	42.1	37.3	27.3	10.0	3.22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44.5	13.5	31.0	38.5	16.9	12.1	4.8	2.64



[그림 18]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⁹⁾

인권목록별로 분석한 결과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교육권 > 건강권 > 평화권 > 환경권 > 주거권 > 사회보장권 순으로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사회권에서는 존중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반면 자유권에서는 ‘존중된다’는 평가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야는 의견 진술과 표현의 자유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신체의 자유 >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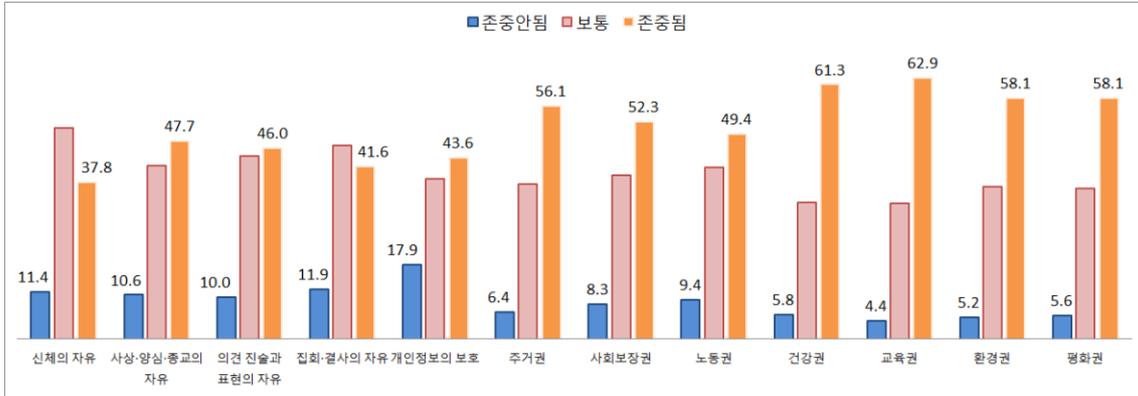
특히 신체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분야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존중된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단위: %)

구분	존중 안됨 (%)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존중됨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평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0.6	0.4	10.2	41.7	47.7	28.3	19.4	3.56
의견 진술과 표현의 자유	10.0	0.6	9.4	44.0	46.0	31.6	14.4	3.50
집회·결사의 자유	11.9	0.4	11.5	46.5	41.6	27.0	14.6	3.44
개인정보의 보호	17.9	0.4	17.5	38.5	43.6	27.5	16.1	3.41
주거권	6.4	0.4	6.0	37.4	56.1	39.0	17.1	3.66
사회보장권	8.3	0.0	8.3	39.4	52.3	36.9	15.4	3.59
노동권	9.4	0.2	9.2	41.3	49.4	34.0	15.4	3.55
건강권	5.8	0.4	5.4	32.9	61.3	40.8	20.5	3.75
교육권	4.4	0.4	4.0	32.7	62.9	39.8	23.1	3.81
환경권	5.2	0.2	5.0	36.7	58.1	40.2	17.9	3.71
평화권	5.6	0.4	5.2	36.3	58.1	35.8	22.3	3.74

9)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분야별로 인권이 ‘존중된다’고 보는 분야는 건강권 > 교육권 > 주거권 > 환경권 등의 순으로(존중된다는 답변 5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서는 존중된다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존중된다는 평가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분야는 개인정보의 보호 > 집회·결사의 자유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재북 학력,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5> 참조).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52.3%, 100-200만원 미만 57.7%, 200만원 이상 65.6%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68%)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46.7%)에 비해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평가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주거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17.4	41.3	26.1	13.0
	고등중학교	319	0.3	5.6	38.6	37.6	17.9
	전문학교	83	0.0	1.2	27.7	54.2	16.9
	대학교	32	0.0	6.2	46.9	31.2	15.6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7.5	39.7	35.1	17.2
	100-200	177	0.6	2.3	39.5	45.8	11.9
	200만원 이상	64	0.0	10.9	23.4	34.4	31.2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5	4.3	27.1	49.0	19.0
	없다	270	0.4	7.4	45.6	31.1	15.6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학력,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6> 참조).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응답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 49%, 100-200만원 미만 52%, 200만원 이상 65.7%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장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61.9%)에 경험이 없는 경우(44.8%)보다 사회보장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사회보장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거주지	수도권	356	0	7.3	41.6	33.4	17.7
	비수도권	124	0	11.3	33.1	46.8	8.9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0	17.4	39.1	30.4	13.0
	고등중학교	319	0	7.5	41.4	35.7	15.4
	전문학교	83	0	3.6	30.1	49.4	16.9
	대학교	32	0	15.6	43.8	25.0	15.6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	10.5	40.6	33.5	15.5
	100-200	177	0	6.8	41.2	40.7	11.3
	200만원 이상	64	0	4.7	29.7	39.1	26.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	3.8	34.3	47.6	14.3
	없다	270	0	11.9	43.3	28.5	16.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동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재북 학력,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7> 참조). 연령별로는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이 20대 이하 32.1%, 30-40대 51.7%, 50대 이상 55.1%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45.2%, 100-200만원 미만 49.7%, 200만원 이상 64.1%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권에 대한 인권존중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61.9%)가 경험이 없는 경우(39.6%)에 비해 노동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노동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연령	20대 이하	84	1.2	8.3	58.3	21.4	10.7
	30-40대	238	0.0	6.7	41.6	32.8	18.9
	50대 이상	158	0.0	13.3	31.6	42.4	12.7
거주지	수도권	356	0.3	10.1	39.3	32.3	18.0
	비수도권	124	0.0	6.5	46.8	38.7	8.1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15.2	45.7	28.3	8.7
	고등중학교	319	0.0	8.8	42.6	33.2	15.4
	전문학교	83	0.0	6.0	32.5	45.8	15.7
	대학교	32	0.0	12.5	43.8	18.8	25.0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0.0	8.6	41.4	29.1	20.9
	1-5년	168	0.0	10.7	36.3	44.6	8.3
	5년 이상	92	1.1	7.6	50	26.1	15.2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12.1	42.3	32.6	12.6
	100-200	177	0.0	5.6	44.6	37.3	12.4
	200만원 이상	64	0.0	7.8	28.1	29.7	34.4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0	5.7	32.4	45.2	16.7
	없다	270	0.4	11.9	48.1	25.2	14.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재북 학력,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8> 참조). 가계 경제 소득별로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57.8%, 100-200만원 미만 63.3%, 200만원 이상 68.7%로 나타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권에 대한 인권존중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71.4%)에 경험이 없는 경우(53.3%)보다 건강권이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8> 건강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8.7	43.5	37.0	8.7
	고등중학교	319	0.3	6.0	34.2	40.1	19.4
	전문학교	83	0.0	1.2	20.5	51.8	26.5
	대학교	32	0.0	6.2	37.5	25.0	31.2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0.0	3.6	32.7	37.7	25.9
	1-5년	168	0.0	6.5	32.7	48.2	12.5
	5년 이상	92	2.2	7.6	33.7	34.8	21.7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7.1	34.7	36.0	21.8
	100-200	177	0.6	4.5	31.6	49.2	14.1
	200만원 이상	64	0.0	1.6	29.7	35.9	32.8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0	2.4	26.2	49.0	22.4
	없다	270	0.7	7.8	38.1	34.4	18.9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재북 학력,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39> 참조). 재북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권이 매우 존중된다고 보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59.4%, 100-200만원 미만 62.7%, 200만원 이상 76.6%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73.8%)에 없는 경우(54.4%)보다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보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9> 교육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13.0	32.6	37.0	15.2
	고등중학교	319	0.3	3.8	36.4	38.2	21.3
	전문학교	83	0.0	0.0	16.9	55.4	27.7
	대학교	32	0.0	3.1	37.5	18.8	40.6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6.7	33.5	38.1	21.3
	100-200	177	0.6	1.7	35.0	42.9	19.8
	200만원 이상	64	0.0	0.0	23.4	37.5	39.1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0.0	0.8	35.0	34.1	30.1
	없다	357	0.6	5.0	31.9	41.7	20.7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0.0	1.2	36.0	27.9	34.9
	없다	394	0.5	4.6	32.0	42.4	20.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5	1.0	24.8	48.1	25.7
	없다	270	0.4	6.3	38.9	33.3	2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재북 학력,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0> 참조). 연령별로는 ‘존중된다’ (다소+매우)는 의견 비율이 20대 이하 42.8%, 30-40대 57.6%, 50대 이상 67.1%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경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66.7%)에 없는 경우(51.4%)보다 환경권이 존중된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0> 환경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연령	20대 이하	84	1.2	6.0	50.0	32.1	10.7
	30-40대	238	0.0	4.2	38.2	37.4	20.2
	50대 이상	158	0.0	5.7	27.2	48.7	18.4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15.2	30.4	41.3	10.9
	고등중학교	319	0.0	4.4	40.1	38.2	17.2
	전문학교	83	0.0	2.4	25.3	50.6	21.7
	대학교	32	0.0	3.1	40.6	31.2	25.0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7.1	34.7	41.4	16.3
	100-200	177	0.0	2.3	43.5	40.7	13.6
	200만원 이상	64	0.0	4.7	25.0	34.4	35.9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0	3.3	30.0	44.3	22.4
	없다	270	0.4	6.3	41.9	37.0	14.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평화권에 대한 인권존중도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재북 학력,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1> 참조). 연령별로는 평화권이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보는 의견 비율이 20대 이하 46.4%, 30-40대 57.6%, 50대 이상 65.2%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평화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존중된다’ (다소+매우)고 보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54.8%, 100-200만원 미만 58.1%, 200만원 이상 70.3%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화권이 존중된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66.2%)에 없는 경우(51.8%)보다 평화권이 존중된다고 평가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 평화권에 대한 인권존중도

구분		빈도 (명)	전혀 존중 안됨 (%)	별로 존중 안됨 (%)	보통 (%)	다소 존중 (%)	매우 존중 (%)
연령	20대 이하	84	0.0	2.4	51.2	33.3	13.1
	30-40대	238	0.4	5.5	36.6	35.3	22.3
	50대 이상	158	0.6	6.3	27.8	38.0	27.2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2.2	17.4	32.6	34.8	13.0
	고등중학교	319	0.3	4.1	39.5	34.2	21.9
	전문학교	83	0.0	2.4	26.5	47.0	24.1
	대학교	32	0.0	6.2	34.4	25.0	34.4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0.5	4.5	35.5	30.5	29.1
	1-5년	168	0.0	6.0	35.7	45.8	12.5
	5년 이상	92	1.1	5.4	39.1	30.4	23.9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0.4	7.5	37.2	33.9	20.9
	100-200	177	0.6	2.8	38.4	41.2	16.9
	200만원 이상	64	0.0	3.1	26.6	28.1	42.2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0.5	2.4	31.0	41.9	24.3
	없다	270	0.4	7.4	40.4	31.1	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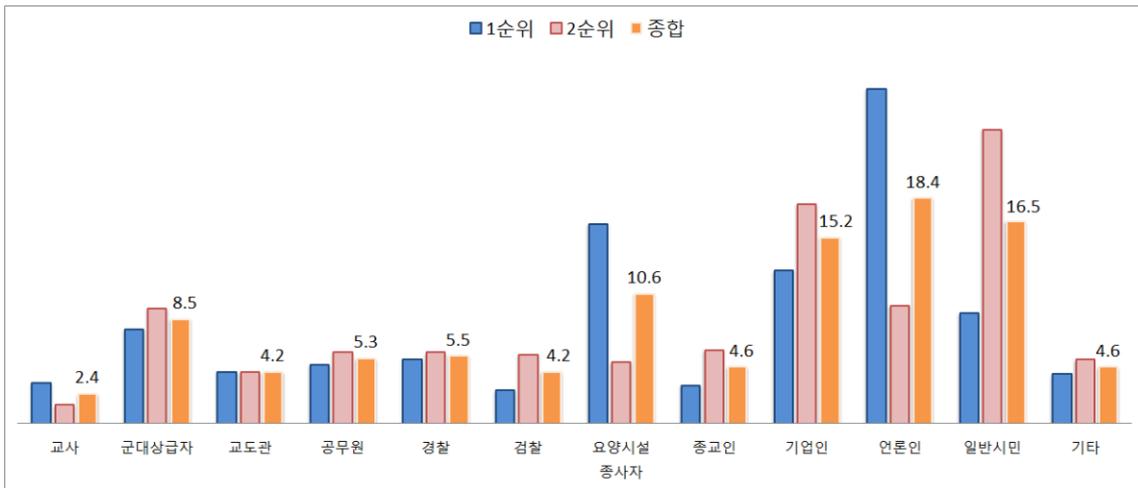
(5)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남한에서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에 대해서는(2개 중복응답 가능) 언론인(18.4%), 일반시민(16.5%), 기업인(15.2%), 요양시설 종사자언론인(10.6%), 군대상급자(8.5%) 등의 순서로 나타나 언론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2.4%), 교도관(4.2%), 검찰(4.2%)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42> 참조).¹⁰⁾

<표 42>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교사	3.3	1.5	2.4	요양시설 종사자	16.3	5.0	10.6
군대상급자	7.7	9.4	8.5	종교인	3.1	6.0	4.6
교도관	4.2	4.2	4.2	기업인	12.5	17.9	15.2
공무원	4.8	5.8	5.3	언론인	27.3	9.6	18.4
경찰	5.2	5.8	5.5	일반시민	9.0	24.0	16.5
검찰	2.7	5.6	4.2	기타	4.0	5.2	4.6



[그림 20]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10)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2개 중복응답)으로 경찰(16.9%), 군대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 공무원(9.9%), 교도관(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종교인(3.3%)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인권침해의 주체로 교도관(4.2%)과 검찰(4.2%)과 같은 법 관련 기관에 대해 낮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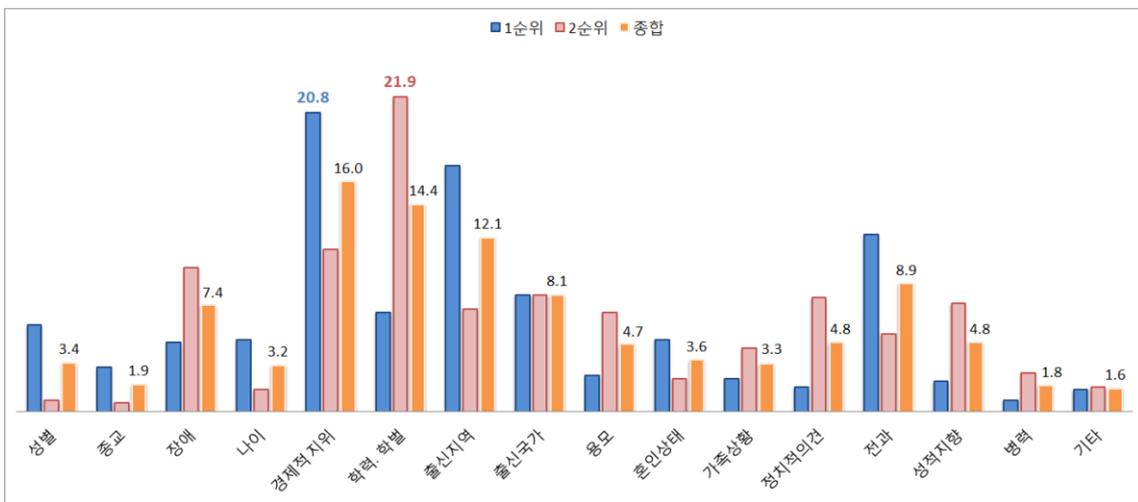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인권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2개 중복응답)으로 직업,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가 16.0%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력·학벌’ 14.4%, ‘출신지역’ 12.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¹¹⁾ 1순위 요인에서 경제적 지위는 20.8%에 이르는 응답자가 지목하였고, 2순위에서 학력·학벌을 21.9%에 이르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와 ‘학력·학벌’ 요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며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표 43>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성별	6.0	0.8	3.4	용모	2.5	6.9	4.7
종교	3.1	0.6	1.9	혼인상태	5.0	2.3	3.6
장애	4.8	10.0	7.4	가족상황	2.3	4.4	3.3
나이	5.0	1.5	3.2	정치적의견	1.7	7.9	4.8
경제적 지위	20.8	11.3	16.0	전과	12.3	5.4	8.9
학력·학벌	6.9	21.9	14.4	성적지향	2.1	7.5	4.8
출신지역	17.1	7.1	12.1	병력	0.8	2.7	1.8
출신국가	8.1	8.1	8.1	기타	1.5	1.7	1.6

(단위: %)



[그림 21] 남한 내 인권 차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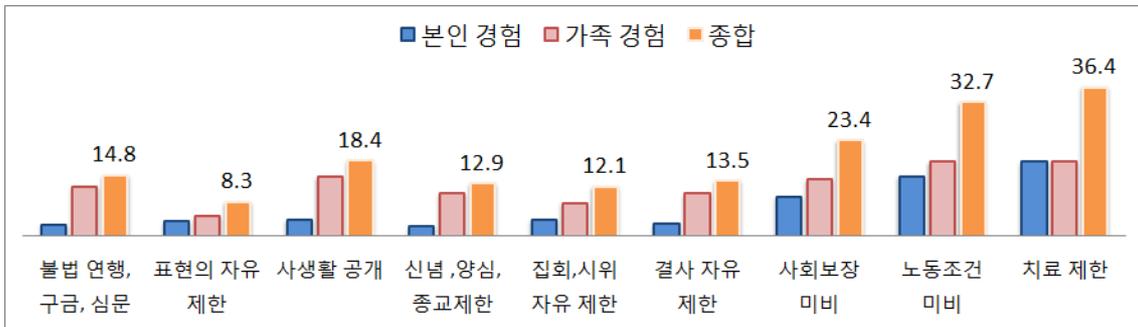
11)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2개 중복응답)으로는 직업,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가 34.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지위(16.0%)뿐만 아니라 학력 및 학벌(14.4%)과 출신지역(12.1%) 또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응답자의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1)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남한에 입국한 이후 본인 포함하여 배우자 및 가족이 경험한 인권침해의 경험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요한 인권침해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는 문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사회보장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 ‘사생활이 공개당한 문제’가 그 다음의 순으로 높은 나타났다([그림 20] 참조).¹²⁾

(단위: %)



[그림 22]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한편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4>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구분	유경험자		무경험자		X2	유의도
	존중	비존중	존중	비존중		
불법 연행, 구금, 심문	67.3	22.7	81.4	18.6	33.070	.000***
의견 표현의 자유 제한	60.6	39.4	79.3	20.7	12.578	.050*
사생활 보호 제한	64.6	35.4	79.3	20.7	14.896	.021**
신념·양심·종교 자유 제한	77.4	22.6	79.4	20.6	10.297	.113
집회·시위 자유 제한	61.1	38.9	80.3	19.7	19.913	.003**
집회, 결사 자유 제한	68.0	32.0	80.2	19.8	16.930	.010**
사회보장 침해	64.3	35.7	82.4	17.6	33.607	.000***
노동권 침해	66.6	33.4	83.6	16.4	38.122	.000***
건강권 침해	60.7	39.3	79.3	20.7	35.358	.050*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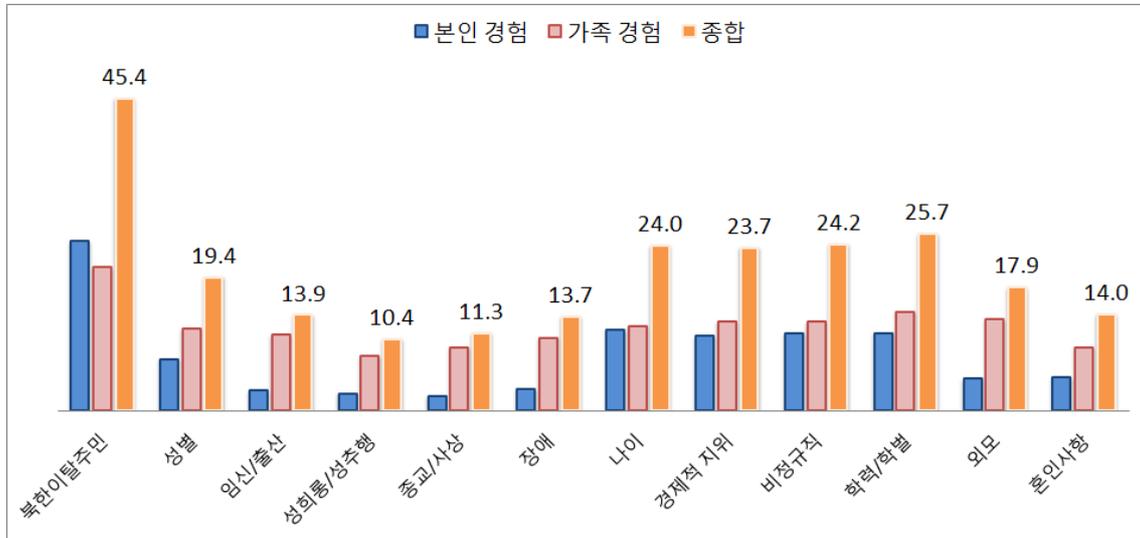
12)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3년간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가족이 경험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상·양심의 자유 제한(7.5%)’ 및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음(7.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신앙·종교의 자유 제한(6.7%)’과 ‘사회보장을 제대로 못 받음(6.0%)’이 그 다음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신념·양심·종교에 대한 자유를 침해당한 경험의 유무가 인권상황에서 얼마나 존중되는지의 평가한 결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 다른 분야의 인권은 침해경험이 있으면 침해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해당 분야의 인권이 ‘존중 된다’는 응답이 더 낮고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다. 즉 인권침해 경험이 있으면 해당되는 인권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45.5%)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진단하였고, 학력·학벌 > 비정규직 > 나이 >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¹³⁾

(단위: %)



[그림 23]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13)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이 10% 이상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권차별 경험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대체로 인권차별의 경험 유무는 인권상황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성희롱과 성추행을 받은 경험 및 나이는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에 대한 차별과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차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45>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에 따른 인권상황 평가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구분	유경험자		무경험자		X2	유의도
	존중	비존중	존중	비존중		
북한이탈주민	70.5	29.5	83.3	16.7	32.974	.000***
성별	63.0	37.0	81.4	18.6	19.151	.004
임신/출산	50.7	49.3	81.4	18.6	30.179	.000***
성희롱/성추행	66.5	33.5	79.6	20.4	10.915	.091
종교/사상	63.4	36.6	80.1	19.9	13.059	.042*
장애	67.5	32.5	80.4	19.6	22.209	.001**
나이	68.9	31.1	80.5	19.5	12.385	.054
경제적 지위	71.1	38.9	85.1	16.9	37.867	.000***
비정규직	65.9	34.1	81.9	18.1	41.206	.000***
학력/학벌	61.2	38.8	84.1	15.9	52.497	.000***
외모	66.8	33.2	80.7	19.3	18.976	.004**
혼인사항	55.4	44.6	81.6	18.4	31.077	.000***

* $p < .05$, ** $p < .01$, *** $p < .001$

(3)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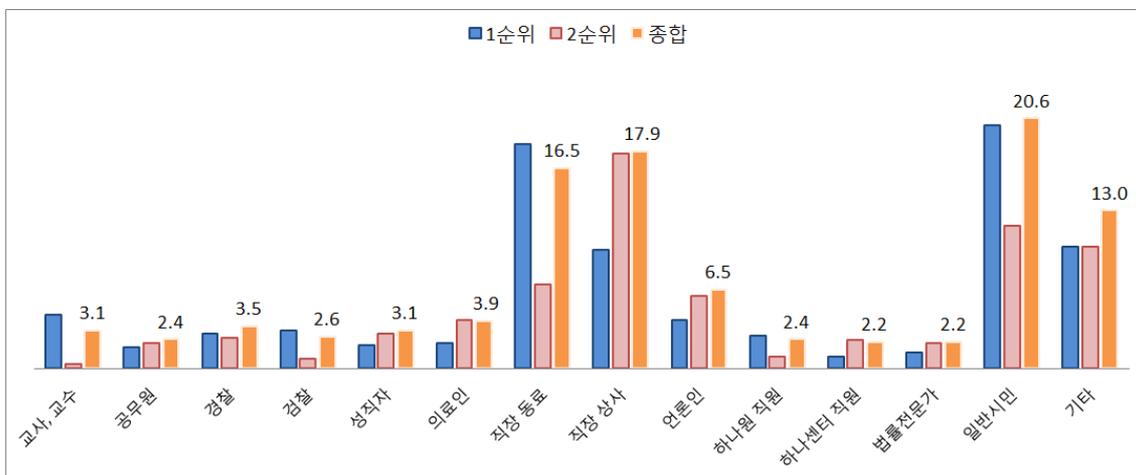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불이익 또는 차별했던 집단은 일반시민 20.6%, 직장 상사 17.9%, 직장 동료 1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및 경제적 활동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집단 으로부터 발생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한 전문직종인 언론인, 법률전문가, 의료인 등도 북한이탈주민에게 침해 및 차별을 하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46>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교사, 교수	4.4	0.4	3.1
공무원	1.7	2.1	2.4
경찰	2.9	2.5	3.5
검찰	3.1	0.8	2.6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1.9	2.9	3.1
의료인(의사 등)	2.1	4.0	3.9
직장 동료	18.5	6.9	16.5
직장 상사	9.8	17.7	17.9
언론인(신문기자, 방송인 등)	4.0	6.0	6.5
하나원 직원	2.7	1.0	2.4
하나센터 직원	1.0	2.3	2.2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1.3	2.1	2.2
일반시민	20.0	11.7	20.6
기타	10.0	10.0	13.0

(단위: %)



[그림 24]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4)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¹⁴⁾

인권침해 및 차별 유경험자들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소극적인 행동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7.7%)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사정을 요구하였다’ (13.6%),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11.3%) 순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47>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자들의 대처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사정을 요구하였다	63	13.6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였다	9	1.9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였다	40	8.7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52	11.3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5	16.2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26	5.6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	15	3.2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14	3.0
기타	40	8.7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128	27.7

14)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응답경향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2011년 응답 결과에서도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무경험자들은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 (28.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14.7%), ‘인터넷에 공지’ (11.9%), ‘시민단체에 도움 요청’ (11.0%), ‘수사기관에 신고’ (10.6%)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반면 ‘아무런 행동을 못할 것 같다’ 는 소극적인 응답은 6.8%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침해 및 차별의 유경험자들이 밝힌 대처 방법(있는 대로 응답)은 50% 정도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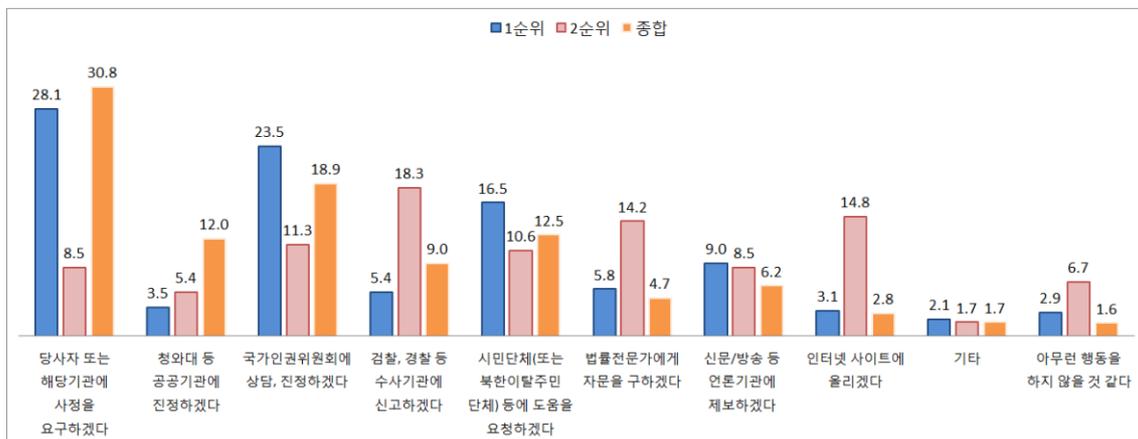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무경험자들은 ‘당사자 및 해당 기관에 시정 요구를 하겠다’ (30.8%),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겠다’ (18.9%),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12.0%)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반면 ‘아무런 행동을 못할 것 같다’ 는 소극적인 응답은 1.6%를 차지하는데 불과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할 경우 인권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48>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사정을 요구하겠다	28.1	8.5	30.8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겠다	3.5	5.4	12.0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겠다	23.5	11.3	18.9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5.4	18.3	9.0
시민단체(또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16.5	10.6	12.5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다	5.8	14.2	4.7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하겠다	9.0	8.5	6.2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	3.1	14.8	2.8
기타	2.1	1.7	1.7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2.9	6.7	1.6

(단위: %)



[그림 25]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무경험자들의 대처방안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¹⁵⁾

1) 개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는 주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므로 전통적인 인권 목록에 해당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형제도 유지(81.4%), 국가보안법 유지(81.9%), 양심적 병역 거부 불허(82.1%) 정책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견해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서도 78.5%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인권침해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책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67.9%)과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62.6%)에 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70% 미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49>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찬성 (긍정)			반대 (부정)		
	찬성 (긍정)	매우 찬성 (긍정)	다소 찬성 (긍정)	반대 (부정)	다소 반대 (부정)	매우 반대 (부정)
사형제도 유지	81.4	41.0	40.4	18.5	10.2	8.3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공개	78.5	45.4	33.1	21.5	14.4	7.1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	62.6	26.3	36.3	37.5	17.1	20.4
국가보안법 유지	81.9	47.9	34.0	18.1	13.1	5.0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	82.1	39.8	42.3	18.0	11.7	6.3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	67.9	31.0	36.9	32.1	17.9	14.2

15)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에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 중 ‘사형제도 유지’ (찬성 76.5%),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76.4%), ‘국가보안법 유지’ (찬성 72.6%),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 (찬성 64.1%) 등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시위 및 집회의 자유 제한’ (반대 52.7%)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출신지, 탈북 연도,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0> 참조).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 거주자(86.3%)가 수도권 거주자(79.7%)에 비해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응답 비율이 1999년 이전 86.9%, 1999-2004년 83.1%, 2005-2010년 83.6%, 2011년 이후 72.6%로 나타나 탈북 시기가 최근 일수록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회인 경우 79.9% 2회 이상인 경우 85.7%로 나타나 탈북 횟수가 많은 경우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0>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48.0	31.7	11.2	9.0
	비수도권	124	21.0	65.3	7.3	6.5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44.4	37.2	11.7	6.6
	비접경지역	131	32.1	48.9	6.1	13.0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59.0	27.9	8.2	4.9
	1999-2004	142	37.3	45.8	9.9	7.0
	2005-2010	171	42.7	40.9	8.2	8.2
	2011-	106	33.0	39.6	15.1	12.3
탈북 횟수	1회	347	42.4	37.5	10.1	10.1
	2회 이상	133	37.6	48.1	10.5	3.8
강제 송환	있다	120	35.0	55.0	6.7	3.3
	없다	360	43.1	35.6	11.4	10.0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54.7	30.2	9.3	5.8
	없다	394	38.1	42.6	10.4	8.9

3)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성별, 연령,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재북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 연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1> 참조). 성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남성 72.5%, 여성 80.6%로 나타나 남성보다 여성이 찬성하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20대 이하 65.6%, 30-40대 81.6%, 50대 이상 81%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 내 거주기간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3년 미만 68.3%, 3-5년 미만 81.6%, 5-10년 78.4%, 10년 이상 85.5%로 나타나, 5-10년 사이가 다소 낮아졌지만, 대체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북학력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인민학교 졸업 78.2%, 고등중학교 졸업 75.6%, 전문학교 졸업 90.4%, 대학교 졸업 78.1%로 나타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999년 이전 90.2%, 1999-2004년 83.1%, 2005-2010년 78.9%, 2011년 이후 65.1%로 나타나,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77%, 100-200만원 미만 78%, 200만원 이상 85.9%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 호송중인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성별	남	120	46.7	25.8	21.7	5.8
	여	360	45.0	35.6	11.9	7.5
연령	20대 이하	84	39.3	26.2	25.0	9.5
	30-40대	238	49.2	32.4	12.2	6.3
	50대 이상	158	43.0	38.0	12.0	7.0
거주지	수도권	356	52.2	27.2	13.2	7.3
	비수도권	124	25.8	50.0	17.7	6.5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35.8	32.5	23.3	8.3
	3-5년	76	42.1	39.5	10.5	7.9
	5-10년	139	48.2	30.2	15.8	5.8
	10년 이상	145	52.4	33.1	7.6	6.9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46.4	30.1	16.6	6.9
	비접경지역	131	42.7	41.2	8.4	7.6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56.5	21.7	10.9	10.9
	고등중학교	319	43.9	31.7	16.3	8.2
	전문학교	83	42.2	48.2	7.2	2.4
	대학교	32	53.1	25.0	18.8	3.1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60.7	29.5	8.2	1.6
	1999-2004	142	47.9	35.2	11.3	5.6
	2005-2010	171	45.6	33.3	13.5	7.6
	2011-	106	33.0	32.1	23.6	11.3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46.9	30.1	15.9	7.1
	100-200	177	37.3	40.7	14.1	7.9
	200만원 이상	64	62.5	23.4	9.4	4.7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53.7	25.2	10.6	10.6
	없다	357	42.6	35.9	15.7	5.9

4)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2> 참조). 연령별로는 ‘반대한다’ (다소+매우)는 의견 비율이 20대 이하 53.5%, 30-40대 31.9%, 50대 이상 37.4%로 나타나, 20대 이하에서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8.1%)보다 비수도권 거주자(75%)의 경우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1회인 경우(58.8%) 보다 2회 이상(72.2%)인 경우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57.5%)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77.5%)에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57.4%)에 비해 경험이 있는 경우(69.1%)에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 정부기관 개인 통신기록 조사 허용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연령	20대 이하	84	20.2	26.2	32.1	21.4
	30-40대	238	31.5	36.6	13.0	18.9
	50대 이상	158	21.5	41.1	15.2	22.2
거주지	수도권	356	29.2	28.9	18.8	23.0
	비수도권	124	17.7	57.3	12.1	12.9
탈북 횟수	1회	347	26.2	32.6	18.2	23.1
	2회 이상	133	26.3	45.9	14.3	13.5
강제 송환	있다	120	25.8	51.7	10.0	12.5
	없다	360	26.4	31.1	19.4	23.1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22.6	32.2	20.9	24.3
	100-200	177	26.6	42.9	14.7	15.8
	200만원 이상	64	39.1	32.8	9.4	18.8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32.4	36.7	18.1	12.9
	없다	270	21.5	35.9	16.3	26.3

5)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강제 송환 경험여부, 북한에서 인권개념 인지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3> 참조). 연령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20대 이하 67.8%, 30-40대 89.5%, 50대 이상 77.8%로 나타나, 30-40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약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3>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연령	20대 이하	84	32.1	35.7	26.2	6.0
	30-40대	238	54.6	34.9	8.0	2.5
	50대 이상	158	46.2	31.6	13.9	8.2
거주지	수도권	356	55.1	27.2	11.8	5.9
	비수도권	124	27.4	53.2	16.9	2.4
강제 송환	있다	120	42.5	38.3	18.3	0.8
	없다	360	49.7	32.5	11.4	6.4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58.5	23.6	13.0	4.9
	없다	357	44.3	37.5	13.2	5.0

6)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4> 참조).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100만원 이하 78.6%, 100-200만원 미만 85.9%, 200만원 이상 84.4%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양심적 병역거부 불허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연령	20대 이하	84	38.1	40.5	19.0	2.4
	30-40대	238	43.3	42.4	10.1	4.2
	50대 이상	158	35.4	43.0	10.1	11.4
거주지	수도권	356	45.8	34.3	12.1	7.9
	비수도권	124	22.6	65.3	10.5	1.6
강제 송환	있다	120	33.3	54.2	7.5	5.0
	없다	360	41.9	38.3	13.1	6.7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38.9	39.7	12.6	8.8
	100-200	177	34.5	51.4	10.2	4.0
	200만원 이상	64	57.8	26.6	12.5	3.1

7)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성별, 연령,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탈북 연도, 가계 경제 소득 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5> 참조). 성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남성 57.5%, 여성 71.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위 및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수도권 거주자 66.3%, 비수도권 거주자 72.5%로 나타나,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62.3%, 100-200만원 미만 71.7%, 200만원 이상 78.1%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경험이 있는 경우 74.8%, 경험이 없는 경우 62.6%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5> 시위 및 집회 자유 제한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성별	남	120	26.7	30.8	21.7	20.8
	여	360	32.5	38.9	16.7	11.9
연령	20대 이하	84	25.0	31.0	34.5	9.5
	30-40대	238	36.1	38.2	10.9	14.7
	50대 이상	158	26.6	38.0	19.6	15.8
거주지	수도권	356	35.7	30.6	17.7	16.0
	비수도권	124	17.7	54.8	18.5	8.9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26.7	30.8	25.0	17.5
	3-5년	76	26.3	51.3	13.2	9.2
	5-10년	139	31.7	38.1	18.0	12.2
	10년 이상	145	36.6	33.1	14.5	15.9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42.6	32.8	6.6	18.0
	1999-2004	142	30.3	43.7	16.2	9.9
	2005-2010	171	32.2	32.7	18.1	17.0
	2011-	106	23.6	36.8	26.4	13.2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30.5	31.8	21.8	15.9
	100-200	177	25.4	46.3	16.9	11.3
	200만원 이상	64	48.4	29.7	6.2	15.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34.3	40.5	15.7	9.5
	없다	270	28.5	34.1	19.6	17.8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¹⁶⁾

1) 개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은 사회권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 대상의 인권의식 조사에서도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대한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임금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비정규직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50.6%,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너무 적다는 의견이 52.5%,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50.2%로 모두 50% 이상을 나타냈다.

전통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군사적 대치와 관련하여 평화권에 관해 질문하였다. 평화권과 관련하여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평화권에 위반되므로 긴장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에 82.3%,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의견에 17.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찬성 (긍정)			반대 (부정)		
	찬성 (긍정)	매우 찬성 (긍정)	다소 찬성 (긍정)	반대 (부정)	다소 반대 (부정)	매우 반대 (부정)
비정규직 임금 차등지급	49.4	12.3	37.1	50.6	22.1	28.5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47.5	6.9	40.6	52.5	21.7	30.8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 신중	49.8	18.1	31.7	50.2	21.7	28.5
군사적 대치 평화권 위반	82.3	40.8	41.5	17.8	14.0	3.8

16)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의 인권정책 중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 (찬성 58.3%),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찬성 66.5%)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비정규직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인식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을 보면 성별, 거주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식 수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7> 참조). 성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남성 45%, 여성 50.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수도권 43.6%, 비수도권 66.2%로 나타나 비수도권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41.5%)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59.5%)에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7> 비정규직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성별	남	120	17.5	27.5	24.2	30.8
	여	360	10.6	40.3	21.4	27.8
거주지	수도권	356	13.5	30.1	23.6	32.9
	비수도권	124	8.9	57.3	17.7	16.1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7.9	32.6	25.1	34.3
	100-200	177	14.1	45.2	19.2	21.5
	200만원 이상	64	23.4	31.2	18.8	26.6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18.7	30.1	17.9	33.3
	없다	357	10.1	39.5	23.5	26.9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20.9	29.1	15.1	34.9
	없다	394	10.4	38.8	23.6	27.2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13.8	45.7	18.1	22.4
	없다	270	11.1	30.4	25.2	33.3

3)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 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8> 참조).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수도권 41.5%, 비수도권 64.5%로 비수도권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회인 경우 46.1%, 2회 이상인 경우 51.1%로 나타나 2회 이상인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없는 경우(44.5%)보다 경험이 있는 경우(56.7%)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이 월 100만원 이하 38.5%, 100-200만원 미만 54.8%, 200만원 이상 61%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59.5%)에 경험이 없는 경우(38.2%)보다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8>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8.4	33.1	21.9	36.5
	비수도권	124	2.4	62.1	21.0	14.5
탈북 횟수	1회	347	7.2	38.9	19.6	34.3
	2회 이상	133	6.0	45.1	27.1	21.8
강제 송환	있다	120	7.5	49.2	23.3	20.0
	없다	360	6.7	37.8	21.1	34.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4.2	34.3	26.8	34.7
	100-200	177	6.2	48.6	18.1	27.1
	200만원 이상	64	18.8	42.2	12.5	26.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7.6	51.9	17.1	23.3
	없다	270	6.3	31.9	25.2	36.7

4)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신중한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재북 출신지, 강제 송환 경험여부, 남한 가족구성,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9> 참조).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45.8%)보다 비수도권 거주자(65.3%)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비접경지역 출신 응답자(53.4%)가 접경지역 출신 응답자(48.4%)보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60.9%)에 경험이 없는 경우(46.1%)보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인 39.1%, 2-3인 53.9%, 4인 이상 68.6%로 나타나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38.1%, 100-200만원 미만 58.8%, 200만원 이상 68.7%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54.7%)에 경험이 없는 경우(48.7%) 보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61.9%)에 경험이 없는 경우(40.4%)보다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9> 저소득층 사회복지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21.1	24.7	19.9	34.3
	비수도권	124	9.7	51.6	26.6	12.1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6.7	35.0	25.0	33.3
	3-5년	76	18.4	32.9	28.9	19.7
	5-10년	139	22.3	30.9	13.7	33.1
	10년 이상	145	23.4	29.0	22.8	24.8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20.3	28.1	22.9	28.7
	비접경지역	131	12.2	41.2	18.3	28.2
강제 송환	있다	120	21.7	39.2	20.0	19.2
	없다	360	16.9	29.2	22.2	31.7
남한 가족구성	1인	184	15.2	23.9	22.8	38.0
	2-3인	245	19.2	34.7	21.6	24.5
	4인 이상	51	23.5	45.1	17.6	13.7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3.0	25.1	22.6	39.3
	100-200	177	19.8	39.0	21.5	19.8
	200만원 이상	64	32.8	35.9	18.8	12.5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29.1	25.6	17.4	27.9
	없다	394	15.7	33.0	22.6	28.7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22.4	39.5	16.7	21.4
	없다	270	14.8	25.6	25.6	34.1

5) 군사적 대치가 평화권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군사적 대치가 평화권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강제 송환 경험여부, 남한 가족구성,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0> 참조).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83.2%)가 비수도권 거주자(79.8%)에 비해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84.2%)에 경험이 없는 경우(81.7%) 보다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0> 군사적 대치가 평화권 위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50.6	32.6	12.1	4.8
	비수도권	124	12.9	66.9	19.4	0.8
강제 송환	있다	120	31.7	52.5	13.3	2.5
	없다	360	43.9	37.8	14.2	4.2
남한 가족구성	1인	184	42.9	34.2	19.0	3.8
	2-3인	245	42.4	42.9	11.0	3.7
	4인 이상	51	25.5	60.8	9.8	3.9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46.4	34.3	15.1	4.2
	100-200	177	34.5	51.4	13.0	1.1
	200만원 이상	64	37.5	40.6	12.5	9.4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55.8	26.7	11.6	5.8
	없다	394	37.6	44.7	14.5	3.3

(3) 사회적 약자 영역¹⁷⁾

1) 개설

사회적 약자는 인권감수성 또는 연대의식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는 외국인, 여성, 외국인노동자, 난민, 성소수자, 아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우리사회에 이주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견해가 66.2%로 나타났고,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견해는 33.7%였다.

여성에 대해 전용 주차장,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 지정 등에 대하여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인식하고 반대하는 견해가 50.5%이었고, 이를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는 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견해는 49.6%였다.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불필요에 찬성)가 54.8%, 반대로 불법체류를 중일 수 있으므로 찬성하는 견해가 45.2%로 나타났다.

난민에 대하여는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테러위험을 높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 69.2%가 찬성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한 비율은 30.8%였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않고 사회적으로 위협하다는 견해에 78.7%가 동의하였고, 반대로 개인의 성적 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16.7%가 동의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교육을 위한 목적이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경우가 76.2%였고, 반면에 비인격적이며 교육적 효과가 없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경우가 23.8%였다.

<표 6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영역 인권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찬성 (긍정)	찬성 (긍정)		반대 (부정)	반대 (부정)	
		매우 찬성 (긍정)	다소 찬성 (긍정)		다소 반대 (부정)	매우 반대 (부정)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66.2	27.7	38.5	33.7	18.5	15.2
여성배려정책 불필요	50.5	16.7	33.8	49.6	18.3	31.3
외국인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불필요	54.8	18.8	36.0	45.2	23.1	22.1
난민 허용 불필요	69.2	31.5	37.7	30.8	20.4	10.4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	78.7	43.1	35.6	21.3	16.7	4.6
아동 및 청소년 차별 허용	76.2	33.1	43.1	23.8	14.2	9.6

17)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유사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특별혜택 제공’에 대한 반대가 52.3%, ‘여성 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대한 반대가 51.1%,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국내 입국 허용’에 대해 반대가 49.6%, ‘난민 신청의 간소화 및 적극 지원’에 대해 반대가 62.1%, 성소수자의 존중에 대해 반대가 58.1%로 나타났다.

2)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재북 출신지, 재북 학력,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2> 참조). 연령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20대 이하 52.4%, 30-40대 이하 71%, 50대 이상 66.5%로 나타나 30-40대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수도권 거주자가 62.9%, 비수도권 거주자가 75.8%로 비수도권 거주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접경지역 출신 응답자 67.3%, 비접경지역 출신 응답자 63.4%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접경지역 출신 응답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재북학력별로는 인민학교 졸업자 71.8%, 고등중학교 졸업자 68.7%, 전문학교 졸업자 61.5%, 대학교 졸업자 46.9%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1회인 경우 64%, 2회 이상인 경우 72.2%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탈북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74.2%, 경험이 없는 경우 63.6%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61.5%, 100-200만원 미만 69.5%, 200만원 이상 75%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71.9%, 경험이 없는 경우 61.9%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 외국인의 한국문화 수용 및 동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연령	20대 이하	84	21.4	31.0	28.6	19.0
	30-40대	238	26.9	44.1	14.3	14.7
	50대 이상	158	32.3	34.2	19.6	13.9
거주지	수도권	356	33.1	29.8	18.5	18.5
	비수도권	124	12.1	63.7	18.5	5.6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30.9	36.4	19.2	13.5
	비접경지역	131	19.1	44.3	16.8	19.8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34.8	37.0	13.0	15.2
	고등중학교	319	27.6	41.1	15.4	16.0
	전문학교	83	21.7	39.8	28.9	9.6
	대학교	32	34.4	12.5	31.2	21.9
탈북 횟수	1회	347	30.3	33.7	17.9	18.2
	2회 이상	133	21.1	51.1	20.3	7.5
강제 송환	있다	120	21.7	52.5	17.5	8.3
	없다	360	29.7	33.9	18.9	17.5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33.6	30.9	17.3	18.2
	1-5년	168	28.0	40.5	21.4	10.1
	5년 이상	92	13.0	53.3	16.3	17.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28.9	32.6	20.9	17.6
	100-200	177	21.5	48.0	17.5	13.0
	200만원 이상	64	40.6	34.4	12.5	12.5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32.4	39.5	19.0	9.0
	없다	270	24.1	37.8	18.1	20.0

3) 여성 배려 정책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성 배려 정책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연령, 거주지, 남한 내 거주기간, 탈북 연도,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3> 참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9.3%, 30-40대 55.5%, 50대 이상 48.7%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30-40대에서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 43%, 비수도권 거주자 71.8%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수도권 거주자 70% 이상이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비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탈북 연도별로는 1999년 이전 52.4%, 1999-2004년 54.9%, 2005-2010년 51.5%, 2011년 이후 41.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탈북 시기가 최근인 경우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1회인 경우 45.2%, 2회 이상인 경우 64%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 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66.7%, 경험이 없는 경우 4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경유기간별로는 없는 경우 42.7%, 1-5년 미만인 경우 56.5%, 5년 이상인 경우 57.6%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경유기간이 길수록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42.3%, 100-200만원 미만 61%, 200만원 이상 51.5%로 나타나 월 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57.6%, 경험이 없는 경우 44.8%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여성 배려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3> 여성 배려 정책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연령	20대 이하	84	15.5	23.8	25.0	35.7
	30-40대	238	16.8	38.7	12.2	32.4
	50대 이상	158	17.1	31.6	24.1	27.2
거주지	수도권	356	18.3	24.7	21.6	35.4
	비수도권	124	12.1	59.7	8.9	19.4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5.8	42.5	11.7	40.0
	3-5년	76	18.4	32.9	15.8	32.9
	5-10년	139	20.9	30.9	17.3	30.9
	10년 이상	145	20.7	29.7	26.2	23.4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21.3	31.1	13.1	34.4
	1999-2004	142	21.8	33.1	25.4	19.7
	2005-2010	171	16.4	35.1	14.6	33.9
	2011-	106	7.5	34.0	17.9	40.6
탈북 횟수	1회	347	14.4	30.8	19.3	35.4
	2회 이상	133	22.6	41.4	15.8	20.3
강제 송환	있다	120	22.5	44.2	19.2	14.2
	없다	360	14.7	30.3	18.1	36.9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15.0	27.7	24.5	32.7
	1-5년	168	19.0	37.5	14.9	28.6
	5년 이상	92	16.3	41.3	9.8	32.6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3.4	28.9	19.7	38.1
	100-200	177	16.9	44.1	15.3	23.7
	200만원 이상	64	28.1	23.4	21.9	26.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22.4	35.2	18.1	24.3
	없다	270	12.2	32.6	18.5	36.7

4)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출신지, 탈북 연도,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북한 인권교육 경험여부, 남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4> 참조).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수도권 거주자 53.1%, 비수도권 거주자 59.7%로 나타나 비수도권 거주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접경지역 출신 응답자 52.7%, 비접경지역 출신 응답자 60.3%가 ‘찬성한다’ (매우+다소)고 응답하여 비접경지역 출신 응답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1999년 이전 62.3%, 1999-2004년 64.1%, 2005년-2011년 52.1%, 2011년 이후 42.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탈북 시기가 최근인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66.7%, 경험이 없는 경우 50.8%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51.1%, 100-200만원 미만 59.9%, 200만원 이상 54.7%로 나타나 월 소득 100-200만원인 경우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인권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61.8%)에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52.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62.4%, 경험이 없는 경우 48.9%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4>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23.0	30.1	21.9	25.0
	비수도권	124	6.5	53.2	26.6	13.7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20.6	32.1	25.5	21.8
	비접경지역	131	13.7	46.6	16.8	22.9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29.5	32.8	21.3	16.4
	1999-2004	142	21.1	43.0	16.9	19.0
	2005-2010	171	17.0	35.1	25.7	22.2
	2011-	106	12.3	30.2	28.3	29.2
강제 송환	있다	120	16.7	50.0	20.8	12.5
	없다	360	19.4	31.4	23.9	25.3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19.7	31.4	25.5	23.4
	100-200	177	14.7	45.2	23.2	16.9
	200만원 이상	64	26.6	28.1	14.1	31.2
북한 인권개념	있다	123	29.3	32.5	16.3	22.0
	없다	357	15.1	37.3	25.5	22.1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29.1	23.3	23.3	24.4
	없다	394	16.5	38.8	23.1	21.6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22.9	39.5	20.0	17.6
	없다	270	15.6	33.3	25.6	25.6

5) 난민 허용 불필요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난민 허용 불필요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학력, 탈북 연도,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제3국 경유기간,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5> 참조).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 66.8%, 비수도권 거주자 75.8%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비수도권 거주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재북학력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인민학교 졸업자 63.1%, 고등중학교 졸업자 67.1%, 전문학교 졸업자 83.2%, 대학교 졸업자 62.5%로 나타나 전문학교 졸업자의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999년 이하 70.5%, 1999-2004년 76.1%, 2005-2010년 70.2%, 2011년 이후 57.5%로 나타나 탈북 시기가 최근인 경우 난민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70.9%, 경험이 없는 경우 68.7%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강제 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난민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3국 경유기간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경유한 적이 없는 경우 62.3%, 1-5년 미만 75%, 5년 이상 75%로 나타나 경유기간이 길수록 난민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월 100만원 이하 66.5%, 100-200만원 미만 74.6%, 200만원 이상 64.1%로 월 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73.3%)에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65.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5> 난민 허용 불필요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39.6	27.2	22.2	11.0
	비수도권	124	8.1	67.7	15.3	8.9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37.0	26.1	23.9	13.0
	고등중학교	319	28.2	38.9	21.3	11.6
	전문학교	83	38.6	44.6	9.6	7.2
	대학교	32	37.5	25.0	34.4	3.1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42.6	27.9	23.0	6.6
	1999-2004	142	33.8	42.3	16.9	7.0
	2005-2010	171	33.9	36.3	20.5	9.4
	2011-	106	17.9	39.6	23.6	18.9
탈북 횟수	1회	347	36.0	33.4	19.3	11.2
	2회 이상	133	19.5	48.9	23.3	8.3
강제 송환	있다	120	19.2	51.7	22.5	6.7
	없다	360	35.6	33.1	19.7	11.7
제3국 경유기간	없음	220	31.4	30.9	23.6	14.1
	1-5년	168	32.7	42.3	16.7	8.3
	5년 이상	92	29.3	45.7	19.6	5.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37.2	29.3	23.0	10.5
	100-200	177	25.4	49.2	16.9	8.5
	200만원 이상	64	26.6	37.5	20.3	15.6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41.9	27.9	15.1	15.1
	없다	394	29.2	39.8	21.6	9.4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27.6	45.7	16.7	10.0
	없다	270	34.4	31.5	23.3	10.7

6)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학력,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북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표 66> 참조).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 82%, 비수도권 거주자 69.3%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수도권 거주자에서 성소수자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북 학력별로는 인민학교 졸업자 82.6%, 고등중학교 졸업자 76.8%, 전문학교 졸업자 87.9%, 대학교 졸업자 68.7%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전문학교 졸업자에서 성소수자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 횟수별로는 1회인 경우 81.6%, 2회 이상인 경우 71.4%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1회인 경우에 성소수자 인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 79.1%, 100-200만원 미만 79.6%, 200만원 이상 7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월 소득 200만원 상인 경우 성소수자 인정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다소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6> 성소수자 인정 불필요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52.2	29.8	14.0	3.9
	비수도권	124	16.9	52.4	24.2	6.5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56.5	26.1	15.2	2.2
	고등중학교	319	38.2	38.6	18.2	5.0
	전문학교	83	50.6	37.3	8.4	3.6
	대학교	32	53.1	15.6	25.0	6.2
탈북 횟수	1회	347	46.4	35.2	13.5	4.9
	2회 이상	133	34.6	36.8	24.8	3.8
강제 송환	있다	120	30.0	46.7	19.2	4.2
	없다	360	47.5	31.9	15.8	4.7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47.7	31.4	17.2	3.8
	100-200	177	35.0	44.6	16.9	3.4
	200만원 이상	64	48.4	26.6	14.1	10.9
북한 인권교육	있다	86	53.5	25.6	10.5	10.5
	없다	394	40.9	37.8	18.0	3.3

7)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차별 허용에 대한 인식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차별 허용에 대한 인식을 보면 거주지, 재북 출신지, 탈북 연도, 탈북 횟수, 강제 송환 경험여부, 남한에서 가족구성, 가계 경제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67> 참조). 거주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수도권 거주자(75%)보다 비수도권 거주자(79.9%)에서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재북 출신지별로는 접경지역 출신자 74.5%, 비접경지역 출신자 80.9%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비접경지역 출신 응답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1999년 이전 81.9%, 1999-2004년 81.7%, 2005-2010년 73.1%, 2011년 이후 70.7%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탈북 시기가 최근일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경험이 있는 경우(80.9%)에 경험이 없는 경우(74.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남한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인 67.9%, 2-3인 80.8%, 4인 이상 84.3%로 나타나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차별 허용에 찬성하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 74.9%, 100-200만원 미만 76.3%, 200만원 이상 81.3%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67>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차별 허용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찬성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거주지	수도권	356	37.6	37.4	13.8	11.2
	비수도권	124	20.2	59.7	15.3	4.8
재북 출신지	접경지역	349	35.2	39.3	15.5	10.0
	비접경지역	131	27.5	53.4	10.7	8.4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47.5	34.4	14.8	3.3
	1999-2004	142	31.7	50.0	14.1	4.2
	2005-2010	171	31.6	41.5	12.3	14.6
	2011-	106	29.2	41.5	17.0	12.3
탈북 횟수	1회	347	34.0	41.2	13.0	11.8
	2회 이상	133	30.8	48.1	17.3	3.8
강제 송환	있다	120	29.2	51.7	16.7	2.5
	없다	360	34.4	40.3	13.3	11.9
남한 가족구성	1인	184	29.3	38.6	21.2	10.9
	2-3인	245	34.7	46.1	10.6	8.6
	4인 이상	51	39.2	45.1	5.9	9.8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33.5	41.4	15.5	9.6
	100-200	177	24.9	51.4	14.1	9.6
	200만원 이상	64	54.7	26.6	9.4	9.4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1)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공공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를 향상시켜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공공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과 밀접한 개인 또는 사회기관 및 국가 인권 보호 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그들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순위만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의 노력’ (33.5%) - ‘인권침해 진정, 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 (21.0%) -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 개선’ (20.4%) -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화’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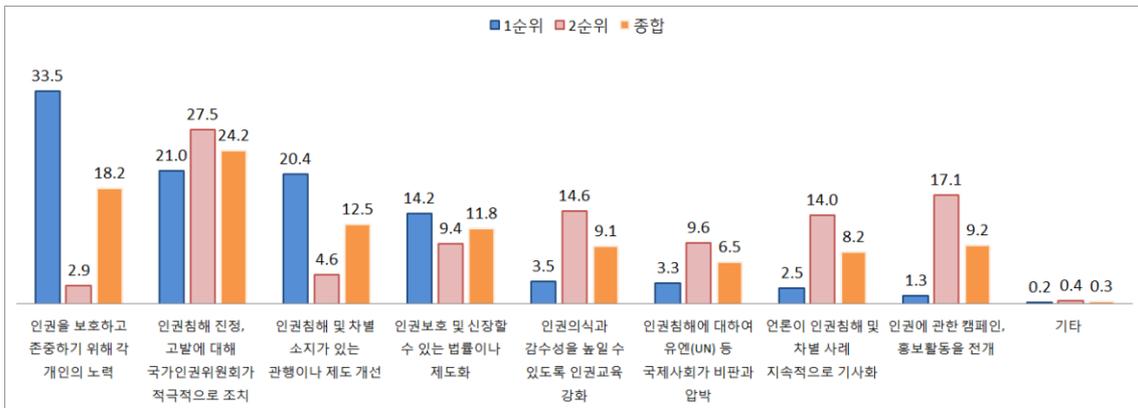
이 문항에 대해 2개를 선택한 결과를 가중치를 두지 않고 다중응답으로 가장 많은 선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 (24.2%)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의 노력’ (18.2%) -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 개선’ (12.5%) -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화’ (11.8%) -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 (9.2%) -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9.1%) - ‘언론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지속적으로 기사화’ (8.2%) -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비판과 압박’ (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8)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보호’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개인이 타인의 인권 존중’ (22.8%), ‘학교 및 사회의 인권교육 강화’ (13.6%), ‘개인이 자신의 인권 존중’ (12.3%),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은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으로 해당 정부기관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24.2%)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8>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1+2순위)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의 노력	33.5	2.9	18.2
인권침해 진정, 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	21.0	27.5	24.2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 개선	20.4	4.6	12.5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화	14.2	9.4	11.8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 강화	3.5	14.6	9.1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비판과 압박	3.3	9.6	6.5
언론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지속적으로 기사화	2.5	14.0	8.2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	1.3	17.1	9.2
기타	0.2	0.4	0.3



[그림 26]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2) 인권활동 참여 경험¹⁹⁾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개선 활동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44.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조언·상담’ (30.8%), ‘소수자·약자 단체 지원 또는 기부’ (27.3%)를 통한 활동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개인에게 활동의 적극성 및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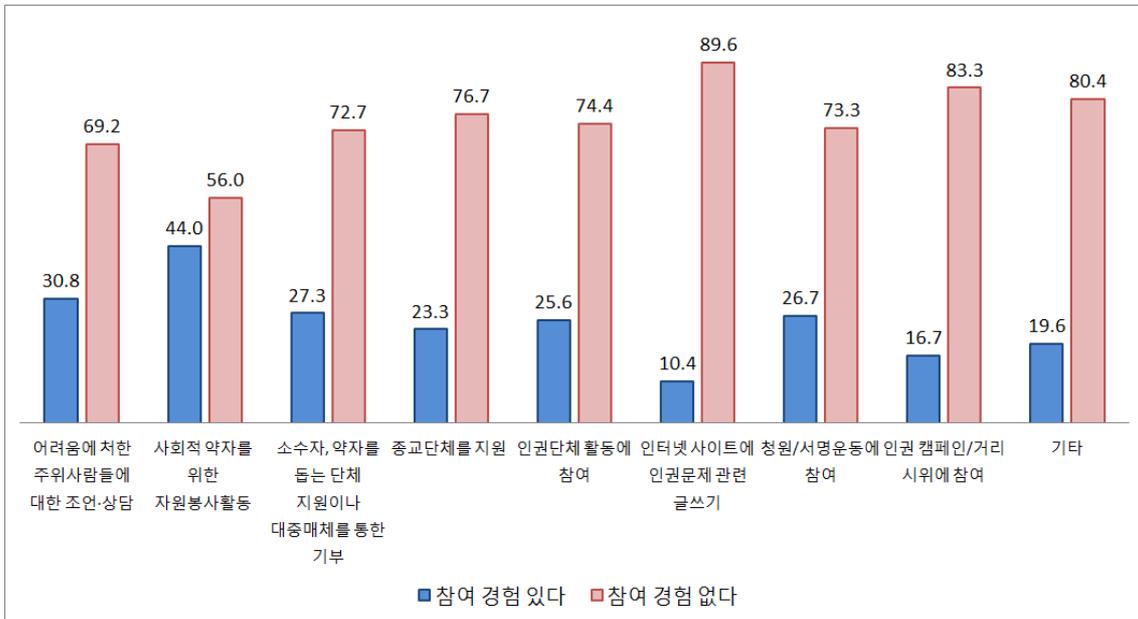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청원/서명운동에 참여’ (26.7%),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 (25.6%) 등에도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는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참여 활동의 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9> 인권활동 참여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어려움에 처한 주위사람들에 대한 조언·상담	30.8	69.2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44.0	56.0
소수자, 약자를 돕는 단체 지원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기부	27.3	72.7
종교단체를 지원	23.3	76.7
인권단체 활동에 참여	25.6	74.4
인터넷 사이트에 인권문제 관련 글쓰기	10.4	89.6
청원/서명운동에 참여	26.7	73.3
인권 캠페인/거리 시위에 참여	16.7	83.3
기타	19.6	80.4

19)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개선 활동의 유형으로는 ‘청원 및 서명운동’ (29.7%), ‘소수자 및 약자 단체 지원 또는 기부’ (21.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20.0%)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율이 낮은 활동으로는 ‘인권단체활동 참여’ (3.9%), ‘인권 캠페인 및 거리 시위 참여’ (3.9%), ‘인터넷 사이트에 인권 관련 글쓰기’ (5.9%) 등으로 나타나 적극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인권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인권활동 참여 경험

7.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1)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인권 침해적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여 고통을 공유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 의지를 갖도록 한다. 분석 결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9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70> 참조).²⁰⁾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북한 이탈주민은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필요성은 성별, 남한 내 거주기간, 탈북 연도, 강제 송환 경험여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70> 인권교육 필요성

구분		빈도 (명)	매우 필요 하다 (%)	다소 필요 하다 (%)	별로 필요 없다 (%)	전혀 필요 없다 (%)
전체		480	66.7	31.8	1.5	0.0
성별	남	120	56.7	41.7	1.7	0.0
	여	360	70.0	28.6	1.4	0.0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51.7	46.7	1.7	0.0
	3-5년	76	69.7	28.9	1.3	0.0
	5-10년	139	70.5	28.8	0.7	0.0
	10년 이상	145	73.8	24.1	2.1	0.0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67.2	29.5	3.3	0.0
	1999-2004	142	71.1	26.8	2.1	0.0
	2005-2010	171	70.2	29.8	0.0	0.0
	2011-	106	54.7	43.4	1.9	0.0
강제 송환	있다	120	75.8	22.5	1.7	0.0
	없다	360	63.6	35.0	1.4	0.0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74.8	23.8	1.4	0.0
	없다	270	60.4	38.1	1.5	0.0

20)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9.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5%)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이기에 인권교육에 대한 더 높은 수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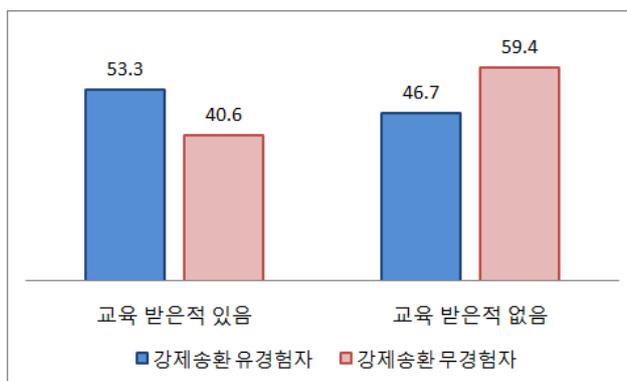
(2)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43.8%에 그쳤다(<표 71> 참조).²¹⁾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경험여부를 보면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경우(53.3%)에 강제 송환 경험이 없는 경우(40.6%)보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월 소득 100만원 이하 34.7%, 100-200만원 미만 45.8%, 200만원 이상 71.9%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 인권교육 경험

구분		빈도 (명)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전체		480	43.8	56.2
강제 송환	있다	120	53.3	46.7
	없다	360	40.6	59.4
가계 경제 소득	100만원 미만	239	34.7	65.3
	100-200	177	45.8	54.2
	200만원 이상	64	71.9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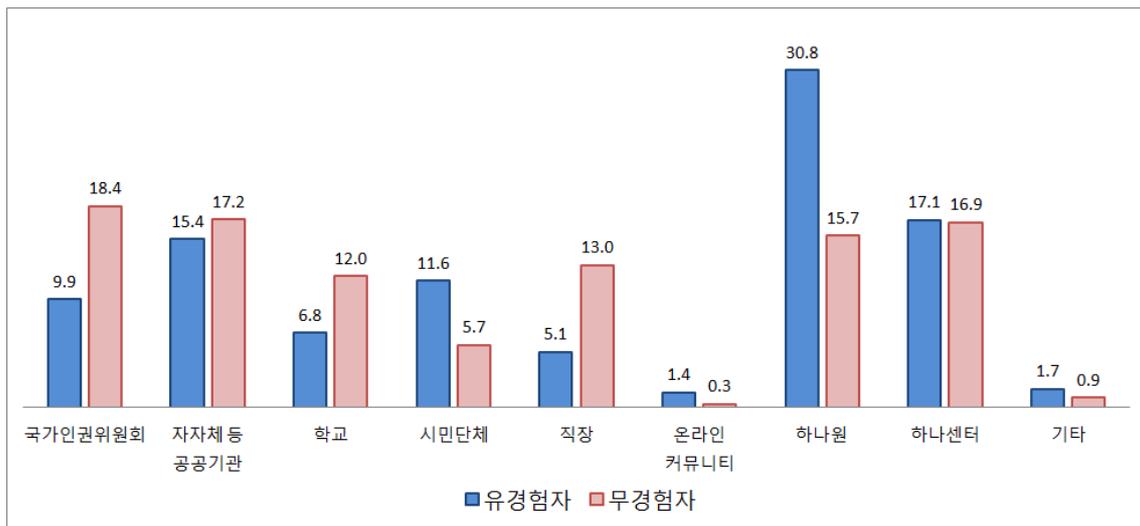
[그림 28] 강제송환 경험여부에 따른 인권교육 경험

21)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난 반면(필요하다 89.4%), 실제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10.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10%에 그친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을 받은 유경험자에게는 인권교육을 어디서 받았는지를 질문하고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무경험자에게는 인권 교육을 받을 경우 어디가 적합한지를 질문하여 이들의 응답유형을 비교해 보았다. 유경험자는 하나원(30.8%), 하나센터(17.1%), 지자체 등 공공기관(15.4%), 시민단체(11.6%) 순이었다. 반면 무경험자는 국가인권위원회(18.4%), 지자체 등 공공기관(17.2%), 하나센터(16.9%), 하나원(15.7%) 순으로 교육 받기를 희망하였다.²²⁾

<표 72> 인권교육 경험 장소 (다중응답)

구분	유경험자(%)	무경험자(%)
인권교육 경험	43.8	56.2
국가인권위원회	9.9	18.4
자자체 등 공공기관	15.4	17.2
학교	6.8	12.0
시민단체	11.6	5.7
직장	5.1	13.0
온라인 커뮤니티	1.4	0.3
하나원	30.8	15.7
하나센터	17.1	16.9
기타	1.7	0.9



[그림 29] 인권교육 받은/받을 기관

22) 2011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학교’에서 교육받은 경우가 약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을 장소로서 적절한 곳으로 ‘공공기관’ (28.9%), ‘학교’ (28.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13.3%)와 ‘시민단체’ (13.3%), ‘직장’ (1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교육을 받기에 적절한 장소로 학교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인권교육을 받거나 인권교육을 받기에 적절한 장소로 학교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9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3> 참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성별, 연령, 남한 내 거주기간, 재북 학력, 탈북 연도, 강제 송환 경험여부, 가계 경제 소득수준,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 90%, 여성 94.7%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96.5%, 30-40대 94.6%, 50대 이상 90.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하는 의견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내 거주기간별로는 3년 미만 97.5%, 3-5년 96.1%, 5-10년 93.5%, 10년 이상 89%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재북 학력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인민학교 졸업자 89.1%, 고등중학교 졸업자 96.2%, 전문학교 졸업자 89.1%, 대학교 졸업자 84.4%로 나타나 고등중학교 졸업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탈북 시기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1999년 이전 93.5%, 1999-2004년 88.8%, 2005-2010년 95.3%, 2011년 이후 97.2%로 나타나 1999-2004년 사이에 탈북한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송환 경험여부별로는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 비율이 경험이 있는 경우(90%)보다 경험이 없는 경우(94.7%)에 더 높게 나타났다. 가계 경제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00만원 이하 94.9%, 100-200만원 미만 93.7%, 200만원 이상 87.5%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한에서 인권교육 경험여부별로는 경험이 있는 경우 90.9%, 경험이 없는 경우 95.6%가 ‘찬성한다’ (매우+다소)는 의견을 보여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구분		빈도 (명)	매우 찬성 (%)	다소 필요 (%)	다소 반대 (%)	매우 반대 (%)
전체		480	48.6	45.0	6.0	0.4
성별	남	120	38.3	51.7	10.0	0.0
	여	360	51.9	42.8	4.7	0.6
연령	20대 이하	84	28.6	67.9	2.4	1.2
	30-40대	238	53.8	40.8	5.5	0.0
	50대 이상	158	51.3	39.2	8.9	0.6
남한 내 거주기간	3년 미만	120	32.5	65.0	2.5	0.0
	3-5년	76	55.3	40.8	2.6	1.3
	5-10년	139	47.5	46.0	6.5	0.0
	10년 이상	145	59.3	29.7	10.3	0.7
재북 학력	인민학교	46	32.6	56.5	8.7	2.2
	고등중학교	319	48.6	47.6	3.8	0.0
	전문학교	83	57.8	31.3	9.6	1.2
	대학교	32	46.9	37.5	15.6	0.0
탈북 연도	1999 이전	61	49.2	44.3	6.6	0.0
	1999-2004	142	60.6	28.2	11.3	0.0
	2005-2010	171	45.6	49.7	3.5	1.2
	2011-	106	36.8	60.4	2.8	0.0
강제 송환	있다	120	58.3	31.7	10.0	0.0
	없다	360	45.3	49.4	4.7	0.6
가계 경제소득	100만원 미만	239	43.9	51.0	4.2	0.8
	100-200	177	52.5	41.2	6.2	0.0
	200만원 이상	64	54.7	32.8	12.5	0.0
남한 인권교육	있다	210	59.0	31.9	9.0	0.0
	없다	270	40.4	55.2	3.7	0.7

제 4 장 면접조사

I. 면접조사 개요

1.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노원구·서대문구·양천구, 인천시 남동구·부평구·연수구, 경기도 광명시·성남시·성남시·과주시·평택시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거주지를 한정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거주지 지원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 참여자의 선정 기준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초기형성, 탈북단계, 제3국 단계, 입국단계, 정착단계, 현재의 인권의식에 대해 심도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 연령, 거주지, 직업, 교육정도, 가족구성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고른 분포를 보이도록 하였다. 면접조사 참여자 섭외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눈덩이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조사에 가장 적절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게이트키퍼를 활용하여, 연구자와 면접 참여자를 연결, 안내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둘째, 설문조사를 마친 응답자 중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여 1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 명단을 토대로 전화 접촉을 통해 면접조사 동의 여부와 성, 연령, 거주지 등 대상군의 적절한 안배를 고려한 후 북한이탈주민 70명을 확보하였다. 이들 중 협조가 가능하다고 연구 동의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인적 사항인 성, 연령, 북한출생지, 남한 주요거주지, 탈북시기(도강) 및 입국시기, 강제송환 여부, 제3국에서의 거주기간, 남한에서의 직업, 가족구성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총 50명의 면접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면접조사는 2016년 8월 20일에서 11월 6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의 타당성과 체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3명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74>의 연번 1-3). 2차 조사는 2016년 9월 4일부터 3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하였다(<표 74>의 연번 4-33). 3차 조사는 17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²³⁾를 하였는데, FGI 조사는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각각 4-5명씩 4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표 74>의 연번 34-50).

23) 집단면접조사는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면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연구자가 좌담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진행하였다. 면접 참여자는 성, 연령, 직업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팀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사전에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확정된 후, 각각의 내용을 어떤 순서로 질문할 것인지 개요를 작성하여 면접참여자들의 반응에 따라 수시로 보완 및 수정하였다.

<표 74> 면접조사 참여자의 유형별 일반적 특성

연번	성별	연령	출신지	탈북 년도	입국 년도	북한 학력	북한 직업	남한 직업	탈북 횟수	강제 송환	제3국 경유
1	여	18	함북	2015	2015	중퇴	학생	고등 학생	1	-	-
2	여	43	함북	2014	2015	중졸	노동자	주부	3	1	중국
3	여	52	함북	2000	2000	대졸	교원	전문직	3	-	-
4	여	43	함북	2011	2011	중졸	장사	대학생	1	-	-
5	남	74	함북	2004	2008	전졸	노동자	무직	1	-	중국
6	남	51	함북	2000	2015	중졸	어부	무직	1	-	러시아
7	여	24	함북	2003	2008	소졸	학생	대학생	1	-	중국
8	여	58	양강	2009	2010	중졸	사무원	주부	1	-	-
9	여	66	함북	2003	2005	중졸	장사	주부	7	2	중국
10	여	67	함북	2013	2014	중졸	장사	주부	12	-	-
11	남	72	양강	2012	2013	중졸	노동자	무직	1	-	-
12	여	67	양강	2014	2015	중졸	관리직	주부	1	-	-
13	여	77	황해	2006	2006	소졸	농사	주부	1	-	-
14	남	77	함북	2006	2006	중졸	군인	무직	1	-	-
15	여	47	함북	2002	2004	중졸	노동자	사회 복지사	1	-	-
16	여	76	함북	2006	2006	중졸	농사	무직	2	-	-
17	여	43	함북	1999	2004	중졸	노동자	주부	1	-	중국
18	여	67	함북	2007	2007	중졸	철도원	요양 보호사	1	-	-
19	여	77	함북	2007	2007	중졸	교원	무직	1	-	-
20	여	45	함북	1999	2002	중졸	이미용	서비스 업	3	1	중국
21	남	59	함북	2004	2004	중졸	사업소	일용직	1	-	-
22	여	53	함남	1999	2002	전졸	아나 운서	시민 단체	1	-	중국
23	여	52	함북	2004	2006	중졸	노동자	일용직	3	2	중국
24	여	48	함북	2002	2008	중졸	노동자	요양 보호사	2	1	중국

25	여	44	함남	1997	2012	중졸	학생	공장 근로자	1	-	중국
26	여	61	함북	2000	2006	대졸	의사	일용직	3	2	중국
27	여	68	함북	1998	2004	중졸	사무직	일용직	3	-	중국
28	여	30	함북	2012	2015	중퇴	학생	간호사	2	-	중국
29	여	30	함북	2002	2006	무학	유아	대학생	2	-	중국
30	남	22	함북	2013	2014	중졸	학생	중장비 기사	1	-	-
31	여	25	함북	2010	2010	중퇴	학생	대학생	1	-	-
32	여	25	양강	2009	2011	중퇴	학생	대학생	2	1	중국
33	여	25	함북	2010	2010	중퇴	학생	대학생	1	-	-
34	여	31	함북	2006	2007	중졸	학생	대학생	1	-	-
35	여	46	함북	2004	2014	전졸	교원	대학생	2	1	중국
36	남	38	함북	2010	2011	중졸	노동자	대학생	3	1	-
37	여	34	자강	2011	2015	중졸	선전대	대학생	1	-	중국
38	남	51	함남	1998	2000	전졸	노동자	교수	1	-	중국
39	여	33	양강	2014	2015	대졸	가수	대학생	1	-	-
40	여	37	함북	2005	2006	전졸	선동대	대학생	2	-	-
41	여	44	함북	2004	2005	중졸	사무직	간호 조무사	3	-	-
42	여	38	함북	2007	2008	중졸	노동자	사무직	1	-	-
43	여	25	함북	2007	2014	중졸	학생	주부	1	-	중국
44	여	43	양강	2011	2012	중졸	주부	대학생	1	-	-
45	여	44	함북	2010	2011	중졸	농장원	제조업	1	-	중국
46	여	44	양강	2007	2007	중졸	철도원	서비스 업	1	-	-
47	남	40	함북	2007	2008	전퇴	노동자	자영업	2	1	중국
48	남	37	양강	2014	2015	중졸	군인	운수업	1	-	-
49	남	46	함북	2010	2011	중졸	농장원	제조업	1	-	중국
50	남	38	함북	2008	2013	중졸	운전직	기계기 사	10	-	중국

* 중퇴는 남한의 중졸, 중졸은 남한의 고졸 수준에 해당함

2.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면접조사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를 담기 위한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경로를 유형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와 그 결과로서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림 30] 탈북경로/과정에 따른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면접조사에서 질문할 문항은 총 4단계로 작성하였다. 단계별 순서는 1단계 연구하려는 큰 연구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2단계 큰 연구 문제들을 하위 범주인 작은 연구 문제들로 나눈 후, 3단계 작은 연구 문제들을 면접에서 사용 가능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든 다음, 4단계 면접을 위하여 질문 항목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치하였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 방향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 첫째,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형성’
- 둘째,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탈북동기’
- 셋째, ‘남한 입국 전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 넷째, ‘남한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방식’
- 다섯째,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 경험’

<표 75> 면접조사 유형별 질문지 내용

면접조사 질문 내용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형성	Q1. 북한에 있을 때 ‘인권’ 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계기 및 내용은 무엇인가? Q2.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권’ 에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Q3. 북한에 있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인권침해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탈북동기	Q1. 북한의 인권침해로 남한 또는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고자 하였는가? Q2. 북한을 탈북한 동기가 무엇인가? Q3. 강제송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을 당한 적이 있는가?
남한 입국 전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Q1. 제3국(탈북해서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체류했던 모든 국가)에 거주할 때 인권침해라고 생각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Q2. 제3국에서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남한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과 대처 방식	Q1. 남한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받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직장, 학교, 결혼, 언론, 표현의 자유 등) Q2.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러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Q3. 만약 이러한 경험을 다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이러한 행동 또는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인권보호 및 인권교육 경험	Q1. 남한에서 인권 개선 및 증진을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가? Q2. 본인이 활동하는 단체가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Q3. 북한이탈주민은 인권교육을 어디서, 무슨 내용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자료정리와 방법

면접조사는 면접조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로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조사는 미리 준비된 반구조화된 질문 방식으로 진행하되 면접 참여자가 가급적 자유롭게 체험을 구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진술하는 사건, 관심대상에 대한 경험이 연구자의 연구결과로 재현되도록 하였다.

면접 시작에 앞서 조사 및 연구의 취지, 연구 목적 이외의 면접 내용의 비공개 원칙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인터뷰에 대한 녹취의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 의사를 밝힌 참여자에

게는 인터뷰 동의 및 이용허가서에 서명을 받았다. 면접 종료 후 면접 조사자는 응답자에 대한 인상카드와 면접 일지를 작성하였다.

녹취된 인터뷰 내용은 각각 전담 연구원을 통해 각별한 보안 주의 속에서 녹취록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1, 2, 3차 면접 기간에서 면접의 투명성을 위해 녹취록 초고가 나오는 순서대로 연구진 전체가 회람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질문 내용의 적절성을 상호 검증하고,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 3차 면접 종료 이후 녹취 초고를 토대로 2회에 걸쳐 전체 연구진이 참여하는 녹취 텍스트 분석회의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로 수집한 면접자료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과정의 흐름에 따라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 당시 북한 인권의식 및 경험, 둘째, 탈북이후 제3국에서의 인권의식 및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 입국 후 남한사회에서의 인권의식 및 경험 등을 규명하기의 구성을 취하였다. 면접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5단계의 자료분석 절차를 준수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첫째, 인터뷰한 내용을 전사하고, 개개인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대략적인 생애 스토리를 작성하였다.

둘째,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는 코딩 항목을 설정한 후 코딩을 위해 다양한 해석방법을 분석노트에 기록하였다.

셋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나 패턴을 찾아내어 자료 내에서 서로 연관되는 것은 없는 지 탐색하고, 자료에서 강조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잠정적으로 발견한 내용과 주요 주제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유형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다섯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묘사하였다.

자료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제시된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연구진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있는지 교차검증을 하였다.

II. 면접조사 분석 결과

1. 북한에서 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형성

(1) 인권 용어 인지 정도

면접참여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권이라는 개념은 물론 용어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때에는 자신들에게 인권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고, 안다하여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과 [사례 7]과 같이 북한의 학력이 낮은 경우 또는 최근에 입국한 젊은 연령대의 경우 북한 학교 정규수업에서 인권을 전혀 다루지 않고, 외부에서도 인권 용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거주지역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74.4%였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예절에 대한 부분은 배운 적이 있지만 인권이라는 표현 자체는 한국에서 배웠지 북한에서 배운 적은 없어요. [사례 1]

인권존중이라는 게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인권에 대한 이런 건 안 배웠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사례 7]

[사례 4]을 비롯한 많은 참여자들이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북한에 인권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까’ 라며 북한이 인권보장이 거의 부재한 사회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출하였다. 인권의 직접적인 용어는 아닐지라도 세부적인 인권 용어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 개념에 대한 인지와 인권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판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란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우리 사회에서 그냥 남녀 간의 평등 없이 내님이다 잘 먹고 잘살고 우리 차별 없는 사회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뭐 남녀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우린 다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죠. [사례 4]

면접참여자들은 ‘우리식 인권²⁴⁾’에 대해 어원에 대한 생소함을 가지고 있다. 북한주민

24) 이무철(2011: 6)은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식 인권관’은 첫째,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형성된 인권관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단주의, 계급성, 그리고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나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셋째,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면접조사 참여자에게 이와 같은 ‘우리식 인권’의 개념을 첫째, 기본적인 인

들은 인권과 ‘우리식 인권’ 이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사용하는 ‘우리식 인권’ 개념을 막연하게 인권이라고 인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례 1]은 군 간부로 복무중인 아버지로부터 ‘우리식 인권’ 용어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우리식 인권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근데 우리식 인권이라고는 들어 봤어요.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고요.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뭐지? 다른데 군인이었는데 군인이니까 이런 걸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한 걸 들은 것 같아요. [사례 1]

북한에서 인권을 대하는 관점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²⁵⁾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받아들이는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사례 16] 역시 인권 개념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남한에 입국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권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겼고, 북한에서의 인권이 잘못되었다고 했다.

인권이라는 건 사실 뭔지 몰랐어요. 여기 와서(남한)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권이라는 그 자체를 몰랐어요. 사는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사례 16]

(2) 북한의 인권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 전파 수단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학교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인권의 의미가 개인적으로 축소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인권교육 경로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면접참여자 중 50-60대는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매우 생소하지만, 남한에서 얻은 정보와 그동안 축적된 정보를 조합하여 북한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였다. [사례 9]는 60대 여성으로 70년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를 다녔다. 그는 수업시간에 인권 또는 법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특히 노동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루는 사회권 영역을 수업시간에 배웠다.

그 인권, 인권교육은 조금 있어요, 노동체, 이런 거 다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동체 해 이런 걸 좀 교육은 좀 있어요, 있는데 지키지 않아 그러지 인권에 대해서 교육은 조금 있어요. 저기 그 무슨 시간에 배우는가 하면, 역사시간에 인류에 대해서 쪽 말하다가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말하다가 쪽 하다가 선생님이 노동체 이런 법이랑 많고 어쨌든 법은 많아요. 인권에 대해서 법은 있는데 우리가 어 학교나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간단 인권에 대해서 어쨌든 말해요 말은 하죠. [사례 9]

권으로서 북한 주민의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가 실현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25) 세계 인권 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식 인권은 ‘인민 대중들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그들을 침해하는 적대 계급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 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보장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인 자유권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을 더 강조한다. 특히 그들의 체제를 선전하는데 더 유리한 것이 사회권 영역이다. 북한의 사회권 보장의 특징을 보이는 인권보장은 북한 주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받은 경험이라고 진술한 사례도 있다. [사례 6]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접한 적은 없지만, 도덕·예절·공산주의의 내용을 배울 때 북한 주민의 평등권에 대해서 배웠다. 그는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권리가 제한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인 존중을 받았다고 이해하였다.

아프면 무상치료해주고 그게 다 인권에 들어가거든요.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배급해주고 직장도 갖게 해주고 그게 인권이죠. [사례 6]

[사례 47]은 정규학교 수업시간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특정 과목으로부터 배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북한의 교육을 통해서 인권 개념을 배웠다. 또한, 북한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뭐 인권은 원래 뭐 한 중학교 때 교육 그런 학교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지 않아요 이 글에 대한 문제. 물론 우리 북한사람에 대한 인권보다도. 가네는 자국 안에 우리 인권은 잘 보전 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 밖에 뭐, 적대국이잖아요 한 동족이면서도 우리 한국 같은 거는 그런 교육할 때 뭐 인권이 뭐 침해당하고 있다. 뭐 어찌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인권이라는 그 기본적인 중심은 기본 핵심은 같잖아요.[사례 47]

북한의 인권교육이 세계인권과 연계되던 시점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던 시기이다. 이 당시 북한은 국내적으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을 겪으며 북한당국의 정권 유지가 위협을 받는 시기였으며, 국외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전 세계로부터 압력을 받던 시기였다. [사례49]는 1997년을 북한의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변화의 계기로 기억한다. 당시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에 대하여 인권 용어 설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게 나온 게 언제냐면, 아마 그 민족과 운명이 이게 그 나올 전후시기를 해서 그 기본적인 말하자면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문제들이 이게 그 저기 되면서 그 수감자들 거기서 그게 그 때 이제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런 영화가 그 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인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도 그 수용소라던가 교도소라던가 이게 그 축소, 이런 문제들도 제기 되었고, 말하자면 교실이라고 하지? 교실에서 그 국제적인 인권문제가 막 이렇게 제기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이게 이제 축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인권문제를. [사례 49]

북한은 북한주민에게 북한의 인권보장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남한의 인권유린 상

황을 알리는 인권교육을 한다. 인권교육은 북한의 체제를 강조하는 선전도구로 삼은 것이다. [사례 8]과 [사례 13]은 북한인권은 남한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부각하여 북한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우리 북한에서는 흔히 말하는, 남한에서는 인권유린 당하고 뭐 우리 북한이 그렇다고 안 하고 남한이 그렇다고 그래요. 남한에는 실업자가 많고,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 북한에는 사회주의 제도니까 글썽 교육체계는 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 남한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고 밥을 빌어먹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잘사는 사람들은 애완용 개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옷도 입히고 그렇게 하고, 잘살지만, 못사는 사람들은 깡통 들고 빌어먹고 산다고.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계속 듣죠. 실업자가 많다고요. (중략)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위에선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남한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그리고 통일하면 가난한 남한사람들까지 다 포용해야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사례 8]

북한병원에서는 수술도하고 다 해주는데 자본주의에는 황색바람이 분다고 해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옳단 말이에요. [사례 13]

북한에서는 인권에 대한 어휘적 접근과 개념적 접근이 매우 상이하다. 어휘적 접근은 신문, 서적,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으나,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면접참여자 대부분이 인권이라는 어휘적 개념을 알고 있다 하여도 사회적으로 반영되는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사례 17]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는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이해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북한 당국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신문이랑 이런 데서 보면 (중략) 그러니까 아니 뭐 북 인권침해를 받아도 이거는 당연한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거기 무슨 이런 법 기관에서 막 집도 막 자기네가 막 문 막 두들기고 막 들어오고 그게 다 인권침해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근데 그게 인권 침해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으니까, 이런 인권이란 말이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거기는 밤에 숙박검계를 하러 다녀요. 경찰들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잖아요? 문 두들기고 맘대로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이 사람 누구냐고 무슨냐고 누구냐고 해서 만약에 증명서 같은 거 없으면 그냥 데리고 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왜 증명서가 없냐고 어디서 왔냐 이거 등록을 안했냐? 가자 가 끌고 가면 그냥 아 저게 당연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인권침해 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잘 못한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례 17]

북한이탈주민들은 직간접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인권에 대해 인식하

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인권 침해의 대상이 되면서, 그 결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좋고 나쁘다의 구분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10]과 [사례 9] 모두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이 주변인들이 받는 강력한 탄압과 강제적 처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공개처형을 목도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비윤리적이며 비인권적이라고 직감하였다. 비법에 대한 강력하고 위협적인 법집행은 인권침해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연민이 쌓이게 된 것뿐만 아니라, 향후 본인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인권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권이라는 게 우리 그저 이런 그 층을 보면 그 층에서 인권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사람을 막 총살하고 그런 걸 봐도 그 인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현행이 있었죠. 그 당시에 막 와서 붙잡아가고 조금만 말 잘못 해도 막 소리 없이 마대에다가 이어가고 그런 거는 우리가 흔히 봤어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죠. 격분하죠. 그런 걸 보면. 저 집은 무슨 어떻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저런다? 하여튼 법이 무섭다는 건 알았죠. [사례 10]

우리도 혹시 잡혀갔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 벌써 한집이 벌써 없으면 우리 학교 같이 땡기던 동무도 집이 홀러덩 밤사이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럼 저거 잡아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게 불안에 떨었지 정권에 대해서 격분하고 그때 시기는 사람들이 의식이 지금처럼 의식이 없진 않고 낮아서 격분하진 격분하는 정도 아니고 무서워서 떠는 정도. [사례 9]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기억

북한에서 인권은 민족의 자주권보다 중요하지 않다.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북한인권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서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지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강력한 체제결속을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국제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사형집행 방식이 가장 위협적인 인권침해였다. 면접참여자들도 북한의 사형집행에 대해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회상하였다. [사례 29]는 소학교 저학년일 때 부모를 따라 나서 중국에서 8년을 살았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상처로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어릴 적 거주지에서 또래아이들을 집합시켜 범죄인에 대한 총살현장을 보여준 기억을 떠올리며,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총살하는데 학생을 제일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꼬맹이들을 그것도 인권침해 아닌가요. 애들을 왜 그거를 보이는지 총살하는 거를 왜 애들에게 보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무서웠죠. 아 피 색깔 때문에 다 버리고 생일날에 딱 이밥에 김치에 돼지고기 엄마가 막 해줬는데 그거를 와서 먹으려고 언니랑 갔는데 그걸 보고 와서 그걸 다 못 먹었어요. 그

래서 그게 기억이 생생해요. 내 생일날에 저희 고향에서 최초로 총살했어요! 여자, 여성분, 근데 그게 저한테는 트라우마가 된 거 같아요.[사례 29]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근로에 대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특히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근로를 한다하여도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례 4]는 근로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자들이 근로를 한다하여도 월급도 배급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보다 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법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출근하고 월급도 배급도 월급이라도 넣어주면 여안에(북한에) 이렇게 아이들 다 순수하잖아요. 월급 주면 고스란히 출근하는데, 월급 안 주면 거기 직장 왜 출근해. 출근 안 한다고 애네들 감자 잡아다 폭폭 밟는데, 무직은 보통 한두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처녀 아이들 20대 아이들 세 명, 네 명이 후루룩 잡혀 왔어요. 잡혀 왔는데, 이 안에 뭐 알아요. [사례 4]

북한은 신분 및 계급차별을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삼았다. 특히 북한주민 중 한국전쟁 당시 남한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적대세력으로 분리하여 철저하게 차별을 하였다. 이러한 신분차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2세, 3세에게도 이어졌다. [사례 13]은 그의 아버지가 국군 치안대의 대장이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신분차별을 받았다. 이러한 신분차별은 결혼에서 강제이혼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가정파탄으로 귀결되었고, 그녀의 자녀 역시 본인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내가 두 번 시집갔어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 와서 ○○고개 우리 본영가면 ○○고개서 싸맷대요. 그러니까 토대가 좋지. 그래서 토대가 좋아 이 사람(전 남편)은 관영장으로 나왔단 말이야. 농장.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치안대 대장 딸이잖아. (중략) 그래서 당에서 너 이 여자랑 살면 여기서 관영장 못한다. 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거야. 저희 고향으로 고향에 가면 내가 우리 아버지 꼬리표가 안 딸려. 그냥 우리 그 딸을 내가 데리고 살았지. (중략) 우리 아들은 황해도에서 평양 의과대학 시험 쳤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떨어졌지. [사례 13]

(4) 인권침해 인식의 확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면접참여자들은 북한에서 인권침해의 영역을 개인과 신변의 위협으로만 국한하여 평가한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개인의 먹고사는 문제하고만 결부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 경험과 그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인권침해요소의 만연과 부족한 인권교육, 그리고 제한된 정보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지, 정서, 행동의 제약을 준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사례 22]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를 사회적 것으로 확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도 활발하다. 그는 최근 불거지는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관련하여 핵미사일을 제작하는 개발자의 탈북과정을 설명하며, 개인의 안전보다는 국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상황 역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 온 분인데 남편이 핵미사일 분야에 있었는데 머리도 다 빠진 걸 목격했다. 역시 그 사람도 피해를 당한 거다. 자기 목숨은 뒷전이고 정권을 위해 그 일을 종사하다보니 안하면 안 되잖아요. 학력, 성분들을 가지고 안하면 안되니까 한 거다. 다 피해를 당한 거다. 내 건강에 이상이 생겨 이직하고 싶지만 그건 자유지만 반론을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게 다 피해인거다. [사례 22]

2. 탈북단계에서의 나타나는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1) 출신성분 제약과 인권침해

북한은 출신성분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출신성분에 대한 계층화는 지금의 북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 [사례 12]는 출신(토대)이 매우 낮은 계층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을 할 수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성공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김일성 시대에는 출신이 미천해도 출세의 끈이 끊기지 않는었는데, 김정일·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출신의 제약이 더 강화되었다.

네 성분. 똑똑해도 토대가 없으면 가지도 못해요. 군대도 못가요. 토대가 좋아야만 군대를 가지. 모든 게 출신성분이 좋아야 갈 수 있지. 차별받는 거 다 알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기 부모를 원망하죠. 다른 당원 집 애들은 다 군대를 가고 나는 왜 못 가는가? 라고 원망하고. 부모들은 자기 토대 나쁜 거 자식들에게 가슴 아파도 이야기도 못하고. 부모가 광산(탄광)이면 자식도 광산, 부모가 농장이면 자식도 농장. 기업이라는 건 없고, 다 국가가 통제를 하니까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군대 나갔던 사람이 군대에서 제대하잖아요. 그럼 너 무슨 일을 하는가? 광산 있다하면 광산으로 보내요. 출신성분이 나빠도 못가고. 김일성 때는 그나마 인재를 썼어요. 그런데 김정일 때부터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썩죠. 불만이 많았지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이제 머리가 갠 사람들은 탈북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직 60% 지방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깨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와서 남한 와서 북한 사회가 이런 거 알고 김정일 어떻게 김일성 어떻게 여기 와서 알았지. 몰라요. [사례 12]

[사례 48]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했었다. 북에 남겨진 그는 아버지의 경력 때문에 북한 내에서 불평등한 삶을 살았다. 그의 말을 전하면, 그는 군에 입대하였고 능력과 주변의 평판이 매우 우수하였지만 아버지의 출신성분으로 장교 계급으로 진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군 제대 이후에도 신분에 대한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가족을 동반하고 탈북을 강행하여 남한에 입국하였다.

내가 당원이 됐지만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고 뭐든 있어도 그게 한계를 줬어요. 딱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지정되어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걸 간부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신원 조회라는 게 딱 있어요. 내가 참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자면 내가 실력이 되더라도 장교 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내가 제대 돼서 왔잖아요. 그럼 내가 군에서도 운전병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운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처럼 국정원 산하라던가 내가 당 선전 출판물 산하에서 근무하기는 했었는데 기본 이런 직속 당 뭐 당이 군당 아니라든가 그런 직속이라든가 국정원 보위부 산하라던가 그다음에 경찰 보안 산하라던가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 체계를 그렇게 줬으니까 너 출신 성분은 과장급이다, 너 출신 성분은 지도급이다. 너 출신 성분은 과장급이다. 이렇게 출신 체계가 그렇게 규정되어있었어요. 그게 있

어서 자기가 자유를 소원을 지망하는 그런 데에 구속된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에 맞게끔 지배해라. 내 뭐 출신 성분이 이러니까
그에 맞게끔 네가 갈 수 있는 그걸 해라. [사례 48]

(2) 생존권 위협과 인권의식의 성장

탈북을 기도하거나 실행에 옮긴이들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및 탄압을 벗어나고자 다
른 공간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1990년대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적 어려움
으로 단순히 먹을거리를 찾으러 가기 위한 생명권, 생존권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날에는 자유권, 사회권으로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사례 39]의 경우 북한에서 성악을 전공한 인재였으나, 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무시하는 당과 정부위주의 국가 운영에 불만을 품고 탈북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식량에 대한 배급중지, 경제활동에 대한 보상 제한 등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국가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불
만이 쌓게 되면서 인권에 대한 판단력, 감수성, 행동의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탈
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사람들 7.4화폐개혁 이후 아마 지금쯤이면 인권이란 말 다 알꺼예요. 자기들이 돈 있
으며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옷 입을거 옷 살 수 있었는데 화폐개혁 이후에 돈 많은 사
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희 엄마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사
례 39]

사례 49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체제를 이끌어 가는 이념도 붕괴되었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먹고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
자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인권의식의 생성으로 이
어진 계기라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 최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식
량이 좀 나오는 지역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그 90년대부터 탈북이, 그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가정이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애들
이 떠나고 엄마가 떠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야. 내가 이렇게 죽 보건대. 그렇게
되면서부터 95년도 96년도에 진짜 사람시체 막 가마니에 싸서 이렇게 관 짬 나무가 없
어서 진짜 시체가 역전에 있으면 가보면 밤새 쥐가 와서 눈깔 다 파먹어가고, 눈이 없는
시체야. 주인을 찾는데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런 시절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진
짜 있던 사람들도 배고픈 그런 고생을 하다보니까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지. 그 누
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라 일을 해도 월급도 없고 배급도 없어요. 오히려 내야 되
요. 일해서 내야 돼. 그러니까 바라고 살지를 얹아. (중략) 우리 애 자체도 내가 그런 상
황에서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 어떤 교육을 줬을까? 오직 나를 건들지, 인권이란 내건 내
가 지킨 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관이 와서 이 사람 인권을 지키는 거? [사례 49]

(3) 강제송환, 재탈북과 인권 유린

[사례 20]은 세 번의 탈북(도강)을 하여 중국을 넘나들면서 장사를 하던 여성이다. 부모 및 자매는 그보다 앞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북한에 들어가서 장사를 더 하기 위해 수중에 돈과 물건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체포된 그는 중국 내 집결소에서 대기 중 북한의 보위부로부터 인계받아 북한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면죄해주도록 김정일이 교시를 내렸던 시기였다. 이러한 면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교화소에서 형을 집행 받았다. 이 때 법 재판 절차를 무시한 당국의 처사로 인해 교화소 내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

중국 공안한테 잡혀서 집결소 갔죠. 교화소에 갔죠. 명단 올리고 용서라는 게 있어서 98년도에. 김정일 때니까 고향 주소만 정확하면 다시 보내줬어요. 나는 다 부모가 중국에 있으니까 주소를 말할 수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연락체계가 없어서. 나한테 기회가 되어서 살 수 있었죠. 1년 만에 나왔어요.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강원도라 데리러 안 오더라고. 데리러 안 오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강원도에서 데리러오니까. 일부러 거기 적었지. 내가 주소 밝히면 다 도망간 게 드러나니까. 먹을 거면 풍족하면 험악하죠. 감옥이지 감옥. 노동시키고 잘못하면 뭐라 하고. 때리고 구루마에 담아서 주는데 양이 적어요. 밥 3숟가락 꼭꼭 눌러서 콩밥 옛날에 중국에서 녹두를 수출해서 데려 갔나봐. 그 녹두밥을 해줬어요. 중국에서 잘 먹다가 들어간 친구들은 배고프죠. 그 자리에서 못 먹고 싸서 집에 들어가더라고. 호실에. 정 배고플 때 하나씩 주워 먹더라고. 정 배고프면 입었던 옷을 바꿔서 옷을. 짐승대접이지. 한 5개월 이따가 붙잡혀 나간 거니까. [사례 20]

[사례 35]는 2003년도에 먼저 탈북하여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중국 공안의 불시검문을 받고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그는 강제 송환되어 구속되었던 경험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2003년도에 한번 중국에 나왔다가 1년 8개월 만에 복송이 됐어요. 감옥에서 석 달 있다 보니까 1년 만에 복송이 되가지고 감옥 생활 좀 했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주 지옥이죠. 굴 안처럼 생겼는데 밖에 나가면 굴 안은 한국에는 다 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도 없고 굴 안으로 들어가서 양옆에 감옥이 있죠. 잘 때는 돌아누울 자리도 없어요. 구석에는 변소가 있고. 조사를 한사람씩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데 때리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저는 돌아서 앉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출입구가 큰 출입문이 아니고 다 철 찰상으로 되어 있고 개구멍 같은 데로 들어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지키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와서 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말을 하다가 와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분이 오셨나 매번 다른 분이 오시니까 그래서 돌아서 봤더니 너 오라고 나를 오라고 하셔가지고 개구멍에 손을 넣고 벽에 막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 얼빠시라고 했는데 얼빠시가 좀 유명한 일본에 악독한 사람이예요. 고문 세계 하는 사람인데. 북한에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알아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여자를 아주 개보다 못하게 벽에 쥘어서 죽으면 죽고. [사례 35]

[사례 36]은 남성으로 남한행을 결심하고 탈북한 경우였다. 동생과 함께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 북한은 2010년 이후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 특히 남성의 경우는 잠재적인 남한행을 하려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 시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남성들에게 행한 폭행의 강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야구방망이, 파이프 같은 걸로 때리고요. 2010년에 잡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불법 체류하는 것은 무조건 한국행을 하려는 사람이다. 네 처음부터 한국행하려고. 저는 단련대라는 교도소 같은 곳에서 2년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냥 의식도 매를 많이 맞고 일단 매를 많이 맞으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죽 걸 쳐도 소화도 안 되고 앉아있기조차도 힘드니까. (중략) 중국 그러니까 강을 넘는 자를 무조건 다리를 꺾어야 된다. 죽어도 괜찮다. 맞아서 죽어도 우리는 살인죄가 아니다. 죽어도 괜찮다 다리 꺾어라 건지 못하게.[사례 36]

[사례 24]는 북한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북한의 식량난 이후 더 이상 배급체제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없자, 많은 여성들이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또는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을 파는 일을 하였다. 또는 중국의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도움을 청하려 중국으로 도강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 역시 북한 내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자, 하던 일을 접고 중국으로 이주하여 먹거리를 조달하며 가정을 일구어 갔다. 그런 와중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고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소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받았지만, 북한체제를 배신하거나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가해졌다고 전했다.

처음 만나자마자 이거 때리더라고요, 한 대만 때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혼한테 저는 좀 많이 안 맞았어요. 조금 한 번만 맞았어요. 다른 사람 맞는 거는 못 봤는데, 이렇게 그렇다고 이렇게 내려갔다 점프시키는 거, 우린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보위부에서. 200번씩. ○○보위부에서 시켰어요. 봉사할 때. 여자들은 여자가 시키고 남자들은 남자가 시키는데 5명씩 데려와서 다섯 여섯 명씩 들여와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200번 시켰거든요. 그건 ○○보위부. 거기서 그렇게 시켰더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우리 아줌마들은 조금씩 시키는데 아가씨들은 있잖아요? 아가씨들은 더 시켜요. 막 그제 아가씨들은 막 아줌마들은 살기 위해서 중국을 갔다지만 재네 아들은 진짜 응? 그렇게 아버지 엄마 밑에서 먹고사는 애들이 중국을 갔으니까 게네들은 막 홀라당 벗겨놓고 때리더라고 우리 아줌마들은 안 때리더라고요. [사례 24]

3.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의식 변화

(1)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북한의 여성은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국경선을 넘는다. 국경선을 넘기 전·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브로커이다. 돈은 그들을 안전하게 중국행 또는 남한행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브로커는 전반적인 길 안내는 물론 예기치 못한 공안과의 교섭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은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중국에 혼자 사는 남성을 위해 노동력은 물론 성적인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례 17]은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각오하고, 중국 남성을 보호자로 선택하였다. 남한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이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남성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비롯된 관계는 북한이탈여성을 성매매로 몰아넣거나 노동착취와 같은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만들기 쉽다.

강을 건너니깐 나 말고 몇 명이 더 있었어요. 저쪽에 공안이 나타나니 모두 도망갔죠. 저는 멀리 도망가진 않았는데 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공안이 사라지고 나서 브로커가 나오라고 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 한 명. 다른 여자랑 이렇게 둘이 브로커한테 갔는데 우리보고 왜 멀리 도망가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조금 지났을까 어느 남자가 절 어느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 그때야 내가 인신매매 당했다는 걸 알았죠. 집에 갔더니 남자가 있는데 손가락이 여섯 개였어요. 깜짝 놀랐죠. 뭐 집에 가서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공안에 잡히면 복송된다고. [사례 17]

[사례 43]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다. 그러나 이 시기 직장을 다니다하여도 임금 또는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와 함께 탈북을 시도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앞에 낯선 남자가 있었고, 그 길로 그는 생면부지의 중국 남성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는 동거를 선택한 적도 원한 적도 없었다. 그는 같이 탈북하였던 친구의 배신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만, 친구를 원망하진 않았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친구 따라 중국을 간 거였는데 아마 친구가 저를 팔았겠죠? 중국에 오면 결혼을 해야 사니까 그 남편에게 시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일은 안 시키고 애만 보면 됐어요. (중략) 근데 중국에는 남자들이 장가간다는 것이 돈은 있어야 간다 해요. 돈도 있고, 집도 사줘야 장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장가를 늦게 가니까 그런 거겠죠. 불만은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 결혼을 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인신매매하니까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사례 43]

(2) 제3국에서의 생존과 인권침해

[사례 49]는 중국으로 탈북 할 때 모든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중국에서 가족단위 생활을 하였다. 이들 가족의 생활방식은 중국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력은 중국 현지인에게 생활조건을 지원받는 방식이었다. 그는 탈북 이후 은신처를 찾지 못해 노숙을 하는 등 고초가 심했다. 은신처가 생긴다하여도 합법적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공안의 단속대상이 되었으며 언제나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처음엔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정말 길거리에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 맞으면서 어디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전 장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도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느낀 게 뭐냐 국적이 없는 서러움. 보호해줄 나라가 없는 사람.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 있잖아요. 나라 잃은, 그러니까 결국 왜 나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외세 침입 받아서 내가 나라 잃은 것도 아니고 제 땅에 살면서 왜 이 더러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벌어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데 애들의 앞날이 진짜 그냥 목숨이나 유지하고 살려면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애들도 다 그렇게 되고 말았겠죠. [사례 49]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 별목공으로 매년 북한노동자를 보낸다. 그러나 궁핍한 별목공 생활의 어려움과 적은 급여 등으로 이하여 별목공 현장을 탈출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사례 6]은 러시아 별목 현장에서 탈출하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가 북한 정부의 과도한 처벌을 눈감아주려는 러시아 정부의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오는 것보다 불안한 신분을 가지고 러시아에 사는 것을 택하였다. 그러나 별목공으로 노동하면서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대사관을 찾게 되었고, 한국대사관의 보호를 받아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별목하러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갔어요. 나무 베러. 북한에서 돈을 못 버니까 러시아로 보내줬는데 그때 확실하게 나온 거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잘 못됐구나! 생각한 거지. 북한 사람은 순 인력 쓰고 러시아는 기계를 절대로 안 써요. 러시아에서 병나면 나가고 죽으면 화장해요. 그래서 내가 탈출했어. 돈 떼먹는다는 건 한정 없죠. 고향에 보낼 돈도 없는데. 월급은 제대로 줬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잘 못 하니까 땅이 폭 빠지니까 추운 겨울 40도 50도 되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그때는 성애가 달려가 지고 그렇게 일하니까 힘든 거지. (중략) 야쿠족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회사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알래스카 반도 우리가 갔을 때 68도 정도 됐어요. [사례 6]

북한이탈여성은 남성보다 농촌일은 물론, 서비스업을 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중국 현지 남성과 혼인을 통해 은신처가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43]는 중국 남성과 강제 혼인한 상태였다. 현지 남성과 혼인한 상태라 하여도 가정에서의 이탈을 막기 위한 감시나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단속위협 등으로 북한이탈여성은 긴장과 고통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중국에 살면서 선입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 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중국말을 할 때도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주변사람이나 마을사람들이 저를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악하게 한다거나 싸우면 (공안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 살았죠. 불법으로 결혼을 하긴 했는데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니 (남편이) 항상 믿지 못하고 살죠.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사례 43]

[사례 50]은 오랫동안 중국을 오가며 북한에서 장사를 하였다. 북한에서 당국의 감시로 장사가 여의치 않자, 중국으로 완전히 탈북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신변안전을 위해 사망한 중국인의 신분증을 불법으로 구입하였다. 불법인데다가 중국에서 신변노출로 인해 북한으로 북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 4년 만에 중국에 국적을 땀어요. 죽은 사람 것을 가지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비슷하게. ○○○이라고 아들이 죽음으로써 제가 그 아들로 중국 사람으로. [사례 50]

(3) 입국대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북한이탈주민이 제3국에서 정주하지 않고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된다. 대부분 중국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난민수용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남한 행을 돕는 이들의 안전가옥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오랜 시간 입국대기를 하면서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례 9]는 북한에서 장사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7차례에 걸쳐서 도장을 하였고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북한에 판매를 하는 중이었다. 북한에서 중국에 가려면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는 마지막 도장, 즉 중국에 나간 날 브로커와 다른 북한인들이 공안에 잡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는 과거 두 차례의 강제송환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잡히면 또다시 강제송환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과감히 중국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자 6개월 동안 어디로 가야할지 결심을 못하다가 가장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남한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가 남한행을 결심하였지만, 남한까지 입국 하는데 오랜 여정이 필요했고 신변안전이라는 압박 속에서 신분을 속이고, 오랜 시간 안가에 숨어있는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한국 오게 되는 길을 알게 돼서 그 과정이 힘들었죠. 여기 오기까지 기회가 세 번인가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바로 올 수도 있었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가다가 잡히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한번 그래도 시도는 해보자 가다가 뭐 중간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정이 이제 지금 뭐 기억도 안나요.

난징이라는 곳에 가서도 오랫동안 또 있다가... 캄보디아에서는 교회에 있었죠. 6개월이라는 게 이제 기차 타고도 가고, 차 타고도 가고 막 그러면서? 완전 불안했어요. 저는 가다가 이게 진짜 도로 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례 9]

[사례 47]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며 자본가로 성장하던 중이었다. 시장경제를 허용하지 않은 북한 당국에게 뇌물을 주며, 사업을 번창시켰다. 그러나 정치적·지역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뇌물을 준다하여도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되자,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북하였다. 그는 태국의 난민수용소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태국 탈북경로는 브로커에 의해서 안정성이 보장된 곳이다. 그러나 ‘UN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²⁶⁾’에 가입하지 않은 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입국자로 간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주한 태국대사관으로 가거나, 태국 경찰에 잡히면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는 까닭이다. 이들은 재판을 받은 뒤 벌금을 내야 한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토로하며 자본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남한정부가 금전적으로 보전해주길 요청하였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도 아닌 게 아까처럼 수용소 그거는 뭐 대사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 내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뭐 난민 수용소에 가면 재판을 받더라구요? 그거를 우리가 대사관에서부터 일단 그거를 받잖아요.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것도 의사를 밝혔고, 대사관에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해냈고 그 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도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지. 내가 한국 돈으로 알기에는 한 30만원 정도를 떼. 그거는 좀 아니다. 한국이 물론 좋죠.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피하지 못해 마지못해, 국제적 여론 때문에 안 받아 줄 수도 없고 그런 거 같더라고. [사례 47]

이와 더불어 [사례 48]도 자신에게 벌금을 내어줄 돈이 더 있었다면 돈이 없어 태국의 구치소에서 구류에 처해진 북한이탈주민들을 도와줬을 것이라고 말한다.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건너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은 중국에서 몸 팔던지 해가지고 가져오겠지마는 오면 돈 없는데 그냥 감옥 가서 이렇게 돼 그냥. 내가 본 것만 몇 명이 되는지. 나도 뭐 돈이 많으면 그 뭐 같이 뽑아주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돌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사례 48]

26) 난민의 비호국에서 각종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를 정함과 동시에 일련의 행정조치로서 본국을 대신하여 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등의 교부, 이동의 자유, 재산의 이전의 자유 등을 규정한다. 특히 체약국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불법 입국한 난민일지라도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여 그 이유를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입국·체재를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31조), 추방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하지는 않고(32조),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농르폴르망 원칙 33조). 그러나 북한주민이 탈북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이 협약을 맺고 있지 않은 태국정부는 북한주민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4. 남한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1)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사례 43]은 오랜 중국생활을 하고 남한에 입국해서 중학교 과정부터 대학까지 마친 여성이다. 남한에 입국해서 남한인 친구를 사귀었고,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으로 감추고 살고 있었다. 남한사회에 체감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차별이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례43은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친정엄마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을 당시, 한국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였다.

저희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술 먹고 우리집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쿵쿵 이렇게 그것도 아주 늦은 밤에. 그때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애 데리고 애는 울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나고 했더니 저 몇 호 집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자고 했더니 엄마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더라고요.[사례 43]

그는 한국인의 부당한 대우와 함께 친정엄마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일상적인 차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 9]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인 ○○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들의 대상지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공간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공동임대아파트이기도 하여서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보장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과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한인들 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남한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스스로를 역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남한인들과 가급적 교류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따로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기초생활수급 주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아니라 거리에서 앞에 북한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한국 여자들 한국 아줌마들이 북한에서 왔다 해서 국가에서 저런 사람들 국가에서 돈 많이 줄 거다. 조금 있어 하더라고요 나 딱 한번 들었어요. 벨이 낫죠. 벨이 나서 싸움할까 하다가 관뒀어요. 난 그런 거 좀 싸움 잘해서. 어쨌든 북에서 오니까 북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화가 나요. 그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살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나는 부자 되겠어요. 우리같이 알몸뚱이로 와서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로 일할 자리가 있어요? 나이 먹어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거 의견 부리는 거 그거 무리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9]

[사례 26]은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이러한 행사의 주체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경찰서나 구청이 지역 북한이탈주민을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강한 불신을 담고 있었다. 통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사에서 플래카드 등 대대적인 홍보물로 인하여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낙인효과가 문제가 발생했고, 선의의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기관과 지방기관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주민과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차별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죠. 탈북민 7명을 앉혀두고, 한국사람 35명-40명 태워서 관광차에다가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경찰에서 관광 간대 놓고 탈북민 7명 앉혀놓고 경찰들 아내 태워서 그래서 관광 갔더라고요.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어디를 갈 때 보면요. 자기네 집 식구들이 더 많아요. 우리 식구들은 한 15명씩 앉혀놓고 나머지들은 다 자기들 식구들 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탈북자들은 이게 뭐야 싶어요. 탈북자들 위해서 라면서 플래카드 만들어 놓고 탈북민인지 한국 사람인지 얼굴에 쓰여 있지 않으니깐 매년 그렇게 가요. 45인승이라 하면 탈북민이 35명은 타고 인솔자가 10명 탄다고 해도 말을 안 하겠는데 탈북민이 반도 안돼요. 그래서 경찰서에 데리고 갈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왜 하필 그걸 써놓는지 모르겠습니다.

(2) 직장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사례 15]는 2000년대 초반 남한에 입국하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다.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남한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 당시 사회복지사는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취업문은 좁았고, 보수 또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았다.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공여지책으로 계약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본인의 능력부족에 원인을 돌리며 태도를 보였다.

아무래도 계약직은 좀 불안하죠. 계약이 끝나면 또 그만뒀야 되고 부당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계약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있었어요. 계약직으로 알고 들어갔으니까. [사례 15]

[사례 28]은 남한 입국 후 대안학교를 다니며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하였다. 대입 검정고시와 대입준비를 병행하면서 재능 기부하는 남한 대학생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준비기간에는 매일 학습을 하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서울권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였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이다. 남한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직장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드러나는 경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병원에 입사할 때부터 전 탈북민이라고 다들 알고 계셨죠.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소문이 나서 간호사들 말고 환자들도 절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다른 간호사들한테는 별일 아닌 일도 저한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소리를 많이 지른다던가. 대놓고 북한에서 어땠나? 한국에서는 어땠나? 이런 식으로 묻으면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사례 28]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직장 동료들이 북한이탈주민인 자신을 냉소적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차별을 하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편견을 담은 시선을 견디기 어렵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도도 높다.

좀 기분 나빴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탈북민이라고 밝히고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어떤 저희 이제 그 부서에 수간호사 선생님이 휴가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저희가 뭐 환자 컴플레인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거나 뭐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성향을 조금씩 인계를 해요. 그래서 뭐 진료 보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미리미리 언질을 주시는데, 그 때 이제 거기에 탈북민 환자분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분이 거기서 좀 이제 저희 쪽이 약간 억양도 좀 세고, 또 약간 좀 강해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봐요. 여기 분들이 이제 보셨을 때. 근데 그 분이 오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제가 이제 스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사람이 지금 엄청 진상 짓 한다. 근데 봤더니 탈북자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터민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어쨌거나 탈북민이라는 걸 알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미 편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세터민을 대표하는 어떤 행동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전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사례 28]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남한에 입국한 남성은 전체 인원 중 29%이다. 저숙련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36]은 남한에 입국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보통 일용직으로 주유소, 세차장,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현장에서 남한인들이 북한에 대해 냉소적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마다 한국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직접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켜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무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일하면서도 조금씩도 느낀 것도 많죠 이제. 제가 탈북자란 얘기를 안 할 때에는 그걸 모르고 대놓고 탈북자 얘기 뭐 ○○방송에서 나오고 하면 비웃으면서 나라 버리

고 오고 울고불고 자기 부모 자식 버리고 와서 왜 울고 불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용직하면서 일할 때. 점심시간에 식사도 하고 앉아서 TV 보는데 이제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나오고 우는 게 궁상스럽다. 그래서 내가 탈북자라는 걸 항상 밝혀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고향은 어디세요? 하고나서 함경북도입니다 이렇게. 그때 그게 줌.. 아 이게 탈북자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네 오히려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내가 탈북잔데.[사례 36]

[사례 30]은 북한의 고등학교 재학과정을 인정받아 남한의 고등학교에 편입하였다. 그는 남한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을 하였으나, 대학에 뜻이 없었기에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매우 위험하고 고숙련노동이 요구되는 크레인 설치 및 해체 기술자가 되어 고연봉군을 형성하는 일자리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입사 때부터 발생한 출신에 대한 차별과 임금에 대한 차별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오로지 그에게만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고용주와 동료들 태도에 불신과 원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주와 동료들로부터 받은 차별대우를 통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 강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남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변에 봤을 때 날 다른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데 가면 오백만 원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일당으로 오십 정도 한 삼, 사십 거기도 일당이 오십만 원 짜리 있고 삼십만 원 짜리 있어요. 보면 일이 어떤, 어떤 일에 관계선 삼십만 원 짜리 있고 오십만 원 짜리 있거든요. 적게 받는 이유는 경력도 지금 일 년 되니까 뭐 경력도 작은 건 작지만 여기 사람들도 경력 6개월도 안 되는 사람이 삼백오십만 원 받고 그것도 싫다고 다른 데 가는데 나는 왜 보면 삼백만 원 받고 그냥 진짜 삼백만 원 받고 보너스라는 것도 없고 뭐 이 어떻다 할까요? 일요일에 일해도 보너스가 없어요. 저는 그게 의견이 좀 많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와서 또 가겠다, 다른 회사 옮기겠다고 한 적도 있고. 또 일 하면서 그 사람 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뛰어다니는데 진짜 월급 아무리 월급제, 일당제 하고 월급제 틀리긴 틀리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토요일 같은 때는 뭐 쉬잖아요. 근데 우리 타워 크레인 일 할 때는 토요일 쉬지 않아요. 일요일만 쉬는데 일요일 동안 쉬는 것도 뭐 어떤 하튼 다른 사람들 쉴 때는 내가 일하러 나갈 때가 많아요.(중략) 북한에 계속 북한에 대해서 말하고 할 때는 북한에서 뭐 어떻다할까요? 진짜 북한 사람들을 너무 헐뜯는 게 많고, 그러니까 내로서 듣기도 안 좋고 회사 다니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없어요. 이번에 내 아는 동생이 들어왔다가 나갔거든요. 아 못 있겠다고. 그냥. 한 칠 일도 버티지 못하고 나갔어요. 모든 게 보니까 개도 다 아무리 북한 사람이라도 나는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낫지 이렇게 하진 못하겠다고 이래 해서 나갔어요. [사례 30]

[사례 18]은 남한에서 청소 노동을 하며 경제생활을 유지하였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한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매우 만족하며 열심히 일하였다. 계약서의 내용

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회사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부당한 일 당한 거는 딱 퇴직금 그때 1년 짜리 인 거 알았다면 사람들이 만 열 달이면 그때가 내가 퇴직금 못 탄 게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그런 거 알았으면 내가 한 2달이나 더 다닐 수 있단 말이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못 타고 나니까 한국 실정 모르고 나니까 그리고 내가 이북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업체에서도 자른 것 같다는 말이지.[사례 18]

[사례 49]와 [사례 48]은 북한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가족이 함께 탈북한 경우이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원 퇴소이후 바로 취업을 하였다. 사례 49는 한국에 정착한지 6년째가 되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아버지로서 경제적 활동을 왕성하게 해왔다. 그러나 지금 다니는 직장의 임금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4인 가족이 특히 학업수행중인 자녀가 있는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숙련도의 차이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고용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차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차별이라기에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일하면서 급여에 대한 거를 조금 외국인처럼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처음에는 우리가 경력도 없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사례 49]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있잖아요. 중국 교포들도 있고.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긴 있다고 하죠.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마는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우린 갈 데가 없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해서 거기 가면은 집도 사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급여 문제를 보게 되면 진짜 뭐 외국인보다 조금 낫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최저시급이라는 게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다 이제 법이 다 틀리는데 회사의 그 이제 말하자면 생산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욕심은 안 부려요. 욕심은 안 부리고 아무튼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도 뭐 부족하니까 경쟁력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부족하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선 그 크게 뭐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어요. [사례 48]

(3) 자녀의 학교생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체류, 남한 입국을 하면서 가족 해체, 가족 이산, 가족 재결합이라는 가족 특성을 드러낸다.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남한 입국 이후에는 북한의 가족 또는 중국의 가족과 재결합하는 경우,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등 복합적인

가족구성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각기 다른 이주배경을 지닌 자녀의 학교 적응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학부모로서 그들의 자녀가 학교 정규과정으로 편입해야 하는 경우, 남한의 학교적응 및 학업결손에서 파생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입학하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꼬리표로부터 드러나는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20]은 2002년 남한 입국 후 강원도에 주택을 지원받아 정착하였다. 중국에 있던 남편을 남한으로 초청하여 가정을 꾸리고 자녀 둘을 키웠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 보육 및 교육에 신경 쓰거나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서울의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 이주한 그는 자녀들이 다니게 될 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차별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그 결과 자녀들이 자녀들의 신분을 숨기기로 하였다. 자연스럽게 잊혔던 출신의 벽이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노출되었고 그 결과 학교 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임교사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구했다. 따돌림을 가해하던 학생을 제재하고 나니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온전히 자녀를 돌 볼 수 없었던 그는 자녀를 위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을 직접 돌보기 시작하였고,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중국인보다 탈북자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옛날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공연도 있고 TV에도 북한 사람 많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많이 봐줘요. 그리고 북한여자들은 남편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것도 알려지고 너무 꼭 집어서 남 아 프게 하면 안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엄포를 냈지만 내 아이를 거기 맡긴 내 잘못이 더 크지. 욕심은 좀 부리고 집에서 돌보면서 학교 가는 시간에 일하고 나머지는 같이 놀아줬더라면 그런 애들한테 우리애가 상처를 받았겠느냐. 내 잘못인 것 같아. 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감정싸움이 있으면 감정 합의를 봐야 하는 거고. 좋게 갔으면 해. 너 편 누구한테 말을 해라. 너 편은 엄마 아빠가 최고 아니겠니. 괴롭힘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말해라. 그 때는 내가 칭찬을 해줘요. [사례 20]

[사례 42]는 가족 3명(남편, 아내, 딸) 동반 탈북하여 남한으로 직행한 경우이다. 그의 자녀는 탈북당시 5살이었는데, 남한에 정착하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녀가 예기치 않게 학교 내에서 신분이 노출되면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친구관계까지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학교로 자녀를 전학 보내고, 신분을 감춘 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도 포기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르고 처음에는 오픈을 했어요. 처음부터. 1학년에 입학한 학교에다가. 저희 아파트는 어차피 탈북 주민이 많이 사니까 지정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이 애가 얘기하는 게 사투리 쓰고 하니까 선생

님이 아 어머니도 그쪽에서 오신 분이냐고 그 학교에는 워낙 많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희가 저희 탈북민이 사는 아파트는 2단지고요. 이쪽에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이쪽 엄마들이 사는 건 1단지인데 1단지 엄마들이 2단지 산다는 것만으로 놀지 말라고. 자기 자녀들한테. 저기 2단지에 사는 재량 놀지 마.(중략) 근데 엄마 왜 1단지 애들이 2단지 나랑 놀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애가 막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니 1학년 애한테 네가 고향이 북한이라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편견이 있고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아니구나. 오픈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모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북한 애들이 없는 학교로 그냥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픈을 안 해요. 지금까지 저는 엄마들한테 뭐 선생님은 아시겠죠. 당연히 선생님께 상담을 갔을 때도, 절대로 교육청에서 탈북자 애들 뭐 무료 그런 프로그램 이런 서류 같은 거 절대로 보내지 마라. 저는 그 돈 안 받아도 됩니다. 애들이 일단 서류 개 하나만 주면 재는 왜 저 서류? 저게 뭔데? 의문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일체 그런 서류 저는 탈북민 애라 그래서 지원이 되는 모든 걸 다 포기한다. 저는 안 받아요. 그런 지원을. 저는 제가 뻘 뻘지게 벌어서라도 제가 다른 애들처럼 학원을 보내면 보냈지. 뭐 탈북자 애들... [사례 42]

[사례 41]은 자녀교육에 대해 관심도 많고 자녀의 학교 참여행사도 많이 다닌다. 그러나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해 주지 못할 때 발생하는 차별을 항상 걱정한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회적 지원을 받을 경우 자녀에게 또 다른 편견과 차별을 걱정하고 있었다.

솔직히 그런 지원을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엄마들이 애들을 많이 서포트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북한 부모들은? 여기서 어떻게 뉘를 돌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를 진짜 치킨너깃을 하나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런 외래어를 막 해서 부모들한테 터치하고 뭐 이거 뭐 챙겨오라 그러는데 이거를 못 따라 가줘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해주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로 하는데 그런 차별된 두려움 때문에 못 받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사례 41]

5.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인권의식의 재구성 및 확장

(1) 인권의식의 발달과 재구성

[사례 22]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이 향후 인권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갖추길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권의식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를 갖추었을 때 성장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생명권이 곧 인권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인권을 보편적인 권리로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기 어렵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무시와 경멸, 차별이 곧 인권침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이라고 하면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굉장히 인권이라고 말하면 보육원에서 맞았고, 감옥에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보면 상을 받은 사람 같아요. 뿌듯해하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무사히 탈출한 사람은 죄인 같은 느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만 부류가 틀릴 뿐이다. 어떤 분야에서 종사했던 간에 분명 인권탄압이 있다. 이걸 각자가 생각하게 오픈해야 해요. 북한이탈지역주민도 좋고 인권 시민연합도 있고 인권에 관해 주장하는 단체들이다. 기구들이 많으므로 이런 설문조사 할 때도 북한에서 왔다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어떤 분야까지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당신이 당한 탄압이 종사했던 직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끄집어 내줘야 해요. 잘 모르잖아요. 똑같이 인권을 생각하면 전 안 올 거예요.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이요? 북한에서 잡혀간 적 없습니다. 그게 인권전부인 줄 알아요. 다른 분야다. 어떤 과제가 떨어졌는데 못했거나 비판받거나 그러면 수령의 지시다, 당의 방침이다, 이러는데 당신에게 결과가 없다. 계속 압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게 모두 다 피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사상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반동분자라고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인권피해가 아닌 거로 인식을 해요. 근데 이걸 열정이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인권이라고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인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모르죠. [사례 22]

인권의 실현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기준으로 삶의 조건과 가치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인권의식의 형성 및 재구성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사례 23]과 [사례 24]는 인권의식의 초기형성으로부터 탈북과정, 제3국에서의 생활, 남한에서의 정착 등을 통해 남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의식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사람 중에 인권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아픔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너무 사회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 같아요. [사례 23]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받아야하죠. 우리는 자기 인권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타고난 운명처럼 알고 살았으니까. 교육을 하면 많이 바뀌겠죠.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하는데 내가 한 말이 이게 남한테 상처주고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할 때도 많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는 하지만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사례 24]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사례 25]은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취업을 앞둔 여성이다. 대학시절 북한이탈대학생 경인지역 연합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었으며, 통일부·인권시민단체에서 통일과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인권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이런 적극성을 갖게 된 경위는 대학생 시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북한이탈대학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하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은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어린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어렵게 대학에 갔는데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탈북청소년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 다 있는 데에서 무시와 경멸의 말을 할 때 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참고 견뎠는데 2년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차별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뜻 맞는 탈북대학생들과 함께 인권관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사례 25]

면접조사 참여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고 남한사람들로부터 인권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출신에 대한 차별인 강하고, 배타적인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사례 38]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단체를 운영하는 협회장으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사람들의 다름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을 다름에 대한 대상자로 인식하여 인권침해를 한다고 생각하였다.

같은 지역이지만 권력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또 하늘과 땅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회의 세상에 저런 나라 없잖아. 수많은 자기 백성이 국가를 탈출해서 나간다는 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시리아나 큰 전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없는 평화 시기에는 없는 사회거든. 그만큼 저 북한 사회는 인권이라는 존재 자체는 아예 말살됐다고 봐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러한 상황을 이 남한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도 좋은 건 있어. 좋은 건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이 자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저거 어디서 거지같은 나라에 와서. 야! 뭘 볼게 있냐. 너 그래 행복하지? [사례 38]

(3)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사례 6]은 한국에 입국해서 받았던 인권침해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를 막고, 침해된 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인권 지식을 가르치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이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고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성을 인식시키고, 인권침해 사안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행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정부로 상대하는 건 이기기 힘들다고 일했는데 사장이 돈 안 주거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정부를 상대로 하면 기간도 길고 심사숙고해야 하고 그냥 결국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형사들도 그렇고 내가 억울해서 소송 걸고 한번 해보자 말했는데 정당하게 소송 내서 이기기 힘들다고 주변들이. 내가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포기했지. (중략) 인권교육 당연히 필요하죠. 사람 생활하는 게 다 인권이니까 법률 상담 같은 것도 내가 잘못했는데 손해 배상 받는 거라든지 그런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지는 거예요. [사례 6]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포용해 주는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는 향후 통일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느끼지 못했던 인권 개념을 잡아주고, 각 연령별 및 성별 상황에 맞는 인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사례 29]와 [사례 28]은 법 또는 제도를 통해서 먼저 온 통일의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세워 향후 통일주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솔직히 여기 와서 도움 줘도 되고 나의 고향가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싶은 애들한테도 할 수도 있고 중국어 가르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내가 받았던 만큼 2배로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닦고 정부에서도 우리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투자하지 왜 투자를 하겠어요? 통일했을 때 이질적인 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안 갈 거 아니에요. 기업가는 가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막 탈북자 무서워서 안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라 하면 갈 거예요. 가서 헌신하고 내가 받은 거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돌려주는 게 한국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 후배들 우리 내 고향 가서

이바지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거는 기꺼이 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10살 때부터 해 왔던 거 같아요. 내가 제 탈북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겪었기 때문에 예 대게 저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29]

의료인이 많이 필요할거 같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 꼭 북한도 그럴 수 있고요. [사례 28]

제 5 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대상으로 과거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인권의식에 대해 인지, 정서, 가치·태도를 중심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의식의 형성 배경과 과정,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에 있어 북한지역에서 경험과 중국 등 경유지에서의 경험, 남한 입국 이후의 경험 등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인권 용어에 대한 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호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인식을 나타냈다. 인권침해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과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권침해 현상에 대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북한에서 형성된 인권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남한 거주 기간이 길수록 다양한 구제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인권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는 남한 입국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현안에 대해서는 남한 지역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 향후 통일국가에서 인권정책에 참조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매우 높다고 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에 대한 인권이 증진됨으로써 인권관련 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북한 내에서, 탈북 단계에서, 제3국에서, 그리고 남한 입국 이후 정착단계에서 각각 겪는 인권 실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우리식 인권’이라는 체제선전을 제외하고는 인권교육이 전무한 상태이고, 탈북단계에서는 성분(토대)으로 인한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강제송환과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제3국 체류시에는 불법체류자인만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와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중된다. 남한에 입국해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사회는 물론 직장과 학교에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침해는 이들의 인격과 정서는 물론 사회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인권보호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드러내주는 중대한 영역이자, 미래의 통일을 오늘 준비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 단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는 가운데 인권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는 일도 이들의 정착과 인권신장에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비록 체제선전용이지만 평등의식을 교육받았고, 공개처형, 월급 미지급과 시장 경험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싹틔었다. 또 김일성 정권기와 김정일 정권기를 비교하며

체제 비판 및 비교 관념을 획득하기도 한다. 탈북 단계에서는 집결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으며, 또는 북한정부의 화폐개혁으로 저축한 돈의 가치 하락으로 체제비판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득한 인권의식을 종합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주인의식을 함양해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인권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한 이상의 시사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통일 국가에 대비한 통일인권교육 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남한 입국단계에서부터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서는 그들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을 때 다른 교육과 함께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원 및 하나둘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등에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의무화하면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센터, 직업훈련기관, 취업교육 등에서 인권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참여 이수가 수월한 곳에서 인권교육이 우선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들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우선 하나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신설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31회(회마다 2시간) 진행됐으며, 총 293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인권교육을 받았으나, 현재 폐지된 상황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이해증진 영역(150시간) 중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등 다른 과목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원 인권교육의 강화는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남북하나재단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에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방안 개발에는 사회적 공간별(가정, 직장, 학교, 관공서, 일반 인간관계 등), 그리고 집단별(세대, 성, 직업 등)로 실용적인 인권증진 내용을 담도록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교육 방법(사례 중심, Q & A, 직무별, 정착 단계별 등등), 교수법 등을 개발하여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북한, 체류국, 남한에서의 경험을 사례로 이용해 이해도를 높인다. 헌법을 비롯해 인권법 교육을 실시하되 생활에서 흔히 겪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연관지어 인권법을 인권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화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각종 인권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가정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및 방임 등 관련 내

용 근거를 토대로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자료 및 매뉴얼 제작, 배포가 필요하고,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 시정이 가능하도록 직장에서의 인권교육 자료 및 매뉴얼의 제작과 배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교육 교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교육부와 연계하여 개발하고, 교육대상의 입국시기, 거주기간, 남한 학력, 현재 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토대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교수법을 적용한다.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형태는 온·오프라인 교육 시행하며, 오프라인 교육시 거주지를 거점으로 실시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권 관련 경험이 긍정적인이어야 건전한 인권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으나, 인권의식 증진에서 긍정적인 인권 보호 또는 인권침해 구제 경험이 인권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국 이후 인권의식의 본격적인 형성과정에서 인권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인 인권 관련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현실을 고려하여 우선 증진 대상이 되는 인권 증진 중점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들을 살펴보면,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인권 보호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자료를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격차 문제도 정보인권의 내용에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최저계층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자칫 정치적 세력으로 이용당하거나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하여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면접조사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정부 당국이 인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최저계층화를 예방함으로써, 인권교육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공직자들과 모든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반편견 교육으로서 통일인권교육이 지속가능한 체계가 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접촉단계에서부터 인권의식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조사 및 하나원 종사자, 신변보호관, 심리상담사 등 북한이탈주민 접촉 대상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또는 인권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나아가 모든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인권교육 위해 민간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통일인권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남북통일에도 기여하고 통일 이후에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들의 통일 이후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교육청의 협조를 바탕으로 탈북민의 사회정착과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공교육에서 통일인권교육을 필수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관련 경험 및 인권의식 조사를 다양화해야 한다. 입국 직후 받는 합동신문조사 단계에 인권변호사 혹은 국가인권위의 참여로 조사시 기본권 보호와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인권 관련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인권 현실에 대한 파악 이외에도 인권의식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의식의 조사 정례화가 필수적이다. 5년 주기 국민인권의식 조사와 병행하여 일반국민과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방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인권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홉째,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과 인권의식 또는 인권현실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서 사회적응교육,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교육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적응교육에 인권교육이 추가되거나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나 일반적인 교육에 더불어 인권상담이나 인권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교차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 시기 기준 3년 혹은 5년 내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일정 시간(예컨대 12시간 또는 24시간) 수료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

이상에서 이 연구에서 분석된 시사점과 현행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현황을 검토하여 제기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비교검토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하지만, 모든 학생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통일인권교육도 향후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유환·강성윤·김용현 외(2005),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 김수암(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북한학보』 27.
- 김영진(2016),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과 포괄적 해법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나(2016),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과정, 국정원 및 하나원 교육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법과인권교육연구』 9(2).
- 김윤태(2012),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의 생애경험이 인권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대한법률구조공단(2010), 『다문화 가족 및 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법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한법률구조공단.
- 도경옥·김수암 외(2016), 『2016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박순성·고유환·소라미 외(2009),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박호성·이규영·김영수·진희관·Manfred Wilke(2005), 『국내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인권정보센터(2013),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북한인권정보센터.
- 서보혁(2014), 『북한인권: 이론 실제 정책』 개정판, 한울아카데미.
- 송기춘·권혜령·박준석 외(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자유권)』, 국가인권위원회.
- 윤덕경·황정임·김동식 외(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국가인권위원회.
- 이금순·전현준(2010),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 통일연구원.
- 이무철(2011),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의 인권관-인권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현대북한연구』 14(1).
- 이우영·서보혁·김갑식·이무철(2008),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상우·이국운·신옥주 외(2011),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 송기춘·권혜령·박준석 외(201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정진성·유성상·정병은 외(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최 현(2009), 『인권』, 책세상.
- 최영신·손행선·채경희·김윤나(2010),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통일부(2016), 『2016 통일백서』, 통일부.

북한문헌

김정일(1997),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엮음(2002),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1957),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1992),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인권연구협회(2014),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신문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1995년 6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2006년 5월 31일.

인권보고서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C.12/1Add.95, 12 December 200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CPR/CO/72/PRK, 27 August 2001.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1990/6/Add.35, 15 May 200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31/70, 19 January 2016.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C/PRK/2000/2, 4 May 2002.

웹사이트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2016년 8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부록: 설문지]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정보는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라도 응답이 빠져 있게 되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선생님의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구기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주관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 자 :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서보혁(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청소년복지전공), 최정호(인하대학교)

조사연구담당자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최정호 박사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의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 요령

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안에 √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5
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숫자를 응답 칸 안에 직접 써넣어 주십시오. 예) 세

1) 성명	
2) 생년월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3) 성별	<input type="checkbox"/> 01) 남자 <input type="checkbox"/> 02) 여자
4) 남한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4) 인천 <input type="checkbox"/> 05) 광주 <input type="checkbox"/> 06) 대전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08) 세종 <input type="checkbox"/> 09) 경기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5) 북한 탈북년도 (마지막 도강하던 해)	<input type="text"/> 년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5) 남한 입국년도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I 북한에서 인권경험과 인권의식의 형성

※ 귀하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험한 바를 여쭙보겠습니다. 현재의 인식이 아니라 북한에 생활하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1. 귀하는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2. 귀하는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 교육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2-1. 귀하가 북한에서 받았던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다? (※ 해당사항 모두 선택)

- 1)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설명 2) 자본주의 인권논리에 대한 비판
 3) 남한의 열악한 인권실상 비판 4) 북한인권 우월성에 대한 선전

문3. 귀하는 북한에서 생활할 때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4. 귀하에게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학교 교육 2) 직장, 인민반 등에서의 강연 및 학습
 3) 북한 TV나 라디오, 노동신문, 서적 등 4) 한국방송 등 외부정보
 5) 기타 주변 사람들

문5. 귀하는 북한에서 있을 당시 남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6.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7. 귀하는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8.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문9.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10.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11.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에 있을 당시 비공식, 불법적 출판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12.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13.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범법자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 1) 안다 2) 모른다

문14.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공개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문15.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문16.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의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1) 만족하고 있었다 2) 만족하지 못했다
- 문17. 귀하가 북한에 있을 당시 '인민반 제도' 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1) 운영되고 있었다 2) 운영되지 않았다.
- 문18.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출신성분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19.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0.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월남자 가족이나 해외교포 가족 등의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1.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남녀평등' 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2.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아동의 영양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1) 좋은 편이다 2) 좋지 않은 편이다
- 문23.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소학교(인민학교)에 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대부분이 소학교에 갔다 2) 대부분이 소학교에 가지 못했다
- 문24. 귀하는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5.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사회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26. 귀하는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의 군사연습이 평화로운 생활, 윤택한 생활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I 남한사회 인권 현실에 대한 인식

※ 귀하가 평소에 남한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보겠습니다. 여기서 인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 문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인권" 이라는 표현을 들으십니까?
 1) 거의 매일 듣는다 2) 비교적 자주 듣는다 3) 가끔씩 듣는다 4) 거의 듣지 못한다
- 문2. 귀하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주로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01) TV(뉴스, 시사프로그램 등) | <input type="checkbox"/> (02) 신문, 잡지, 서적 | <input type="checkbox"/> (03)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
| <input type="checkbox"/> (04) 정규교육(학교수업 등) | <input type="checkbox"/> (05) 강연, 연수 | <input type="checkbox"/> (06) 주변인과의 대화, 일상생활 |
| <input type="checkbox"/> (07) 기타(:) | | |

- 문3. 귀하는 현재 남한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 문4. 귀하는 현재 남한사회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존중된다 2) 다소 존중된다 3)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4)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

문5. 귀하는 다른 나라 혹은 국제 인권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 다음은 남한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실태와 관련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여기서 인권 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6. 귀하는 남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 대상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다소 존중	매우 존중
	1	2	3	4	5
(01)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02) 비정규직 노동자	<input type="checkbox"/>				
(03) 외국인 노동자	<input type="checkbox"/>				
(04) 결혼이주여성(한국남성에게 시집온 외국인여성)	<input type="checkbox"/>				
(05) 다문화가정 자녀(국제결혼자녀, 이주민가정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06) 난민(전쟁, 재난, 박해를 피해 입국한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07) 여성	<input type="checkbox"/>				
(08)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09)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10) 노인	<input type="checkbox"/>				
(11)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12)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저소득층,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13)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	<input type="checkbox"/>				

문7. 귀하는 남한사회에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 분야	전혀 존중 안됨	별로 존중 안됨	보통	다소 존중	매우 존중
	1	2	3	4	5
(01) 신체의 자유(고문, 불법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0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03) 의견 진술과 표현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04) 집회·결사(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의 자유	<input type="checkbox"/>				
(05) 개인정보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06) 주거권(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07) 사회보장권(빈곤퇴치, 소득보장)	<input type="checkbox"/>				
(08) 노동권(일할 권리, 공정한 노동조건 보장)	<input type="checkbox"/>				
(09) 건강권(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10) 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	<input type="checkbox"/>				
(11) 환경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input type="checkbox"/>				
(12) 평화권(전쟁 위험 없이 평화롭게 살 권리)	<input type="checkbox"/>				

문8. 귀하는 남한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인권을 누가 가장 침해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01) 교사	(02) 군대 상급자	(03) 교도관
(04) 공무원	(05) 경찰	(06) 검찰
(07) 요양시설 종사자	(08) 종교인	(09) 기업인(직장상사, 회사임원)
(10) 언론인(신문기자 방송인 등)	(11) 일반시민	(12) 기타(누구: <input type="text"/>)

문9. 귀하는 남한사회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의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01) 성별(임신, 출산 포함)	(02) 종교	(03) 장애
(04) 나이	(05) 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06) 학력·학벌
(07) 출신지역	(08) 인종·피부색·출신국가·민족	(09) 용모(외모, 키, 몸무게 등)
(10) 혼인상태(기혼, 이혼, 미혼 등)	(11) 가족상황(한부모, 미혼모 등)	(12)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3) 전과	(14) 성적 지향(동성애 등)	(15) 병력(HIV/AIDS, Hansen병, B형간염 등)
(16) 기타(<input type="text"/>)		

Ⅲ 인권 침해와 차별 경험

※ 다음은 남한사회에서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경험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여기서 인권 침해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1. 남한에 입국한 이후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인권 침해	(※ 해당사항 모두 선택)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혹은 가족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1	2	3
(01)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연행, 구금, 심문을 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언론이나 인터넷, 서적 등을 통한 개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공공기관에 의해 제한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공개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자신의 신념·양심·종교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제한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집회·시위에 참여할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6) 단체 결성 또는 단체 가입의 자유를 제한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7) 기본적 생존을 위한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8)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 경제적인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2. 남한에 입국한 이후 귀하나 귀하의 가족은 다음과 같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인권 차별	(※ 해당사항 모두 선택)		
	내가 경험하였다	배우자 혹은 가족이 경험하였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다
	1	2	3
(01)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6)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7)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8)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키, 몸무게,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인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3. 한 번이라도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귀하나 귀하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집단은 누구였습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01) 교사, 교수	(02) 공무원	(03) 경찰
(04) 검찰	(05)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등)	(06) 의료인(의사 등)
(07) 직장 동료	(08) 직장 상사	(09) 언론인(신문기자, 방송인 등)
(10) 하나원 직원	(11) 하나센터 직원	(12) 법률전문가(변호사 등)
(13) 일반시민	(14) 기타(<input type="text"/>)	

문4.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
(※ 해당사항 모두 선택)

<input type="checkbox"/> 1)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2)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였다
<input type="checkbox"/> 3)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였다	<input type="checkbox"/> 4)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input type="checkbox"/> 5)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input type="checkbox"/> 6)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하였다	<input type="checkbox"/> 8)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input type="checkbox"/> 9) 기타(<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10)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문5. 앞으로 인권침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순위) (2순위)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01)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	(02)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진정하겠다
(03)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진정하겠다	(04)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
(05)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	(06)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겠다
(07)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에 제보하겠다	(08)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
(09) 기타(<input type="text"/>)	(10)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IV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현안과 정책

※ 다음의 질문은 최근 남한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귀하는 어느 쪽 의견에, 어느 정도 가까운지 말씀해 주세요.

문1. 사형제도는

무고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인간의 존엄, 가치, 생명권 침해를 막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2. 중범죄자의 호송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찬성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 ① ② ③ ④ →	

문3. 정무기관(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스마트폰에서 개인들의 대화내용과 통신기록을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은

인터넷 증거는 알아보기 어렵고, 테러와 범죄 방지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범죄와 관련 없는 일상적인 활동까지 조사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
	← ① ② ③ ④ →	

문4.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 상황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아직은 유지해야 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5.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상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남북분단과 국가안보를 고려할 때 허용하면 안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강도 높은 사회봉사를 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 ① ② ③ ④ →	

문6. 시위나 집회의 자유는

교통 혼잡이나 소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7.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한다면

정규직이 아니며, 조직에 대한 헌신이 낮으므로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8.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너무 많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너무 적다
	← ① ② ③ ④ →	

문9.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는

막대한 복지비용이 발생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사회양극화를 줄이고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10. 우리사회에 이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과 풍습을 적극 받아들여 유도해야 한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 ① ② ③ ④ →	

문11. 여성 전용 주차장,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 등을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므로 반대한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있는 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	---------	---------	---------	---------	--------------------------------

문12. 최대 4년 10개월까지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더 길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
-----------------------------	---------	---------	---------	---------	----------------------

문13. 최근 전쟁과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테러위험을 높이므로 반대한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	---------	---------	---------	---------	---------------------------------

문14. 성소수자(동성애자 등)는

자연스럽지 않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개인의 성적 지향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	---------	---------	---------	---------	-----------------------

문15.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면 허용될 수 있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비인격적이며, 교육적 효과가 없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	---------	---------	---------	---------	-------------------------------

문16. 평화권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평화권에 위반되므로 긴장완화에 힘써야 한다	매우 ①	다소 ②	다소 ③	매우 ④	분단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대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참고 견뎌야 한다
---	---------	---------	---------	---------	--

V 인권증진 방안

※ 다음은 인권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문1. 귀하는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각각 숫자로 기록해주세요)

- | |
|---|
| <p>(01)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각 개인이 노력한다</p> <p>(02) 인권침해 및 차별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제도를 고친다</p> <p>(03) 차별금지법 등 인권보호 및 신장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한다</p> <p>(04) 인권침해 진정이나 고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권고 등)</p> <p>(05)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화한다</p> <p>(06) 인권침해에 대하여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비판과 압박을 가한다</p> <p>(07) 언론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기사화한다</p> <p>(08) 인권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p> <p>(09) 기타 (무엇: <input type="text"/>)</p> |
|---|

3. 귀하는 북한에서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 1) 당 및 내각일군 2) 행정사무직 3) 노동자 4) 농민
 5) 교육직 6) 전문직 7) 학생 8) 군인
 9) 전업주부 10) 기타()

4. 귀하는 북한에서 어떤 조직에서 활동하였습니까?

- 1) 조선노동당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3) 조선직업총동맹
 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5) 조선민주여성동맹 6) 기타()

5. 귀하는 탈북(도강)을 몇 차례 하였습니까?

탈북 횟수: 회

6. 귀하는 탈북(도강) 이후 강제송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7. 귀하는 탈북 이후 남한에 오기까지 제3국에 얼마나 머무르셨습니까?

- 1)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3) 2년 이상 5년 미만
 4) 5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8. 귀하는 남한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재학, 중퇴 포함)

- 1)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학(2.3년제) 6) 대학교(4년제)
 7) 대학원 이상

9. 귀하는 남한에서 혼인상태는 무엇입니까?

- 1) 기혼(유배우자) 2) 사별 3) 이혼
 4) 별거 5) 동거 6) 미혼(결혼한적 없음)

10. 남한에서 귀하의 가구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분의 가족이 함께 살고 계십니까? 취업, 취학, 임대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1) 1인 2) 2-3인
 3) 4-5인 4) 6인 이상

11. 귀하는 남한에서 직업이 무엇입니까?

- 1) 사무직 2) 관리/경영직 3) 기술/생산 4) 전문직
 5) 자영업 6) 농림어업 7) 판매/서비스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 11) 기타()

12. 귀하의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을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100만원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899만원 10) 900-999만원 11) 1,000만원 이상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조사는 기초실태파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심층면접조사에도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께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름 :

연락처 :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연구

| 인쇄일 | 2016년 11월 11일
| 발행일 | 2016년 11월 11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정책과 02)2125-9840
| F A X | 02)2125-0918
| E-mail | dogani@nhrc.go.kr
| 제작 | 인쇄나라, 02)875-1871

ISBN : 978-89-6114-518-3 93340

비매품